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44호

2025. 2. 20.(목)

서울특별시

목 차

◈ 고 시

제2025-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 4
제2025-8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작성 고시 ····· 12
제2025-84호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17
제2025-85호 용산구 서계동 100-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 43
제2025-8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46
제2025-87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 53
제2025-88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고시 ····· 54
제2025-89호 마포구 염리동 85-2 외 1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 58
제2025-9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 72
제2025-91호 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5
제2025-92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103
제2025-93호 도시관리계획(서초구 강남대로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06
제2025-94호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중계 지구단위계획(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130

◈ 공 고

제2025-123호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민간전문가) 선발」 공고 ····· 143
제2025-463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150
제2025-472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151
제2025-475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 152
제2025-476호 과학관 신규등록 공고(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 153
제2025-487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154
제2025-48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157
제2025-491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 158
제2025-49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159

제2025-51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160
제2025-51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161
제2025-526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162
제2025-530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163
제2025-537호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설계 열람 공고 ····· 165
제2025-539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167
제2025-542호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 181
제2025-543호 성북구 보문동5가 14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열람공고 ····· 201

◈ 서울특별시의회

[예 규]

제172호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 202
제173호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 206

◈ 구 고 시

제2025-21호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종로구) ····· 210
제2025-14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용산구) ····· 217
제2025-15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용산구) ····· 220
제2025-26호 도시계획시설(독립문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 고시(서대문구) ····· 223
제2025-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취소 고시(서대문구) ····· 232
제2025-29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동작구) ····· 233
제2025-97호 도시관리계획(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 234
제2025-19호 도시계획시설(지하보행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강동구) ····· 238

◈ 구 공 고

제2025-24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공사완료 공고(성동구) ····· 240
제2025-281호 도시계획시설(2020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완료 공고(성북구) ····· 242
제2025-269호 도시계획시설(학교:태강삼육초등학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노원구) ····· 243
제2025-347호 등마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강서구) ····· 245
제2025-285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구로구) ····· 246

제2025-3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구로구) ····· 263
제2025-347호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관악구) ····· 265

◈ 사업소고시

제2025-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69
제2025-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69
제2025-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70

◈ 사업소공고

제2025-6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공고(강남소방서) ····· 271

◈ 기 타

제2025-58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272
제2025-5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273
제2025-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274

◈ 정 정

제2025-10호 도시관리계획(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강서구) ····· 275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1. 건설부고시 제78호(1972.3.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건설부고시 제6호(1972.5.22.)로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65호(2020.6.26.)로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20호(2021.3.11.)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26호(2021. 8. 5.)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18호(2022.05.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35호(2022.12.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555호(2023.06.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헌릉로 확장” 사업에 대해 토지 및 물건조서를 변경(보완)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이해관계자 등에게 열람공고 완료 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헌릉로 확장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곡IC ~ 강남구 세곡동 헌릉IC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도로확장 폭 6~8 → 8~10차로, 연장 1.46k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변경)
○ 사업기간
- 당초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 변경사유 : 미분할 필지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지번부여 및 면적 조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주소 - 토지세목조서(붙임)

7) 위치도(변경없음)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8) 지형도면(변경없음)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9) 사업계획서(변경없음)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10)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8078),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서울 중구 청계천로 8, ☏ 02-6438-216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내곡동	1-1699	전	102.0	17.0	1-3259	전	102.0	10.0	-7.0	이계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66번길 29, 3층(인계동)	수원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	근저당권/지상권	면적변경
2	내곡동	1-3199	답	245.0	245.0	1-3199	답	245.0	245.0		박순흥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103 (문원동)				변경없음
3	내곡동	1-3233	답	188.0	188.0	1-3233	답	188.0	188.0		석근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안길 13(염곡동)	영동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6길 3	근저당권	변경없음
4	내곡동	1-3200	답	523.0	523.0	1-3200	답	523.0	523.0		이창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503동 303호(자곡동, 엘에이치강남힐스테이트)	영동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6길 3	근저당권	변경없음
5	내곡동	1-3201	전	437.0	437.0	1-3201	전	437.0	437.0		이창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503동 303호(자곡동, 엘에이치강남힐스테이트)	영동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6길 3	근저당권	변경없음
6	내곡동	1-3205	전	1,568.0	1568.0	1-3205	전	1,568.0	1568.0		박종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4길 12, 101동 403호 (반포동,반포에스케이뷰아파트)				변경없음
											박종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10-34 청구빌라				
7	내곡동	산12-784	임	165.0	165.0	산12-784	임	165.0	165.0		박종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18-11				변경없음
8	내곡동	산12-783	임	690.0	690.0	산12-783	임	690.0	690.0		정옥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6-13 방배서리풀 이-편한세상 107-204				변경없음
9	내곡동	1-3203	대	270.0	270.0	1-3203	대	270.0	270.0		심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676				변경없음

일련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0	내곡동	1-680	전	408.0	392.0	1-680	전	408.0	408.0	16㎡	심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676				면적변경
11	내곡동	산12-781	임	2,798.0	2798.0	산12-781	임	2,798.0	2798.0		박순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18-11				변경없음
											김금숙	서울 강남구 반포동 산8-2				
											박순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삼성아파트 103-302				
											박진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18-11				
											정옥임	서울 강남구 반포동 산8-2				
12	내곡동	1-3214	전	33.0	33.0	1-3214	전	33.0	33.0		대림원예종묘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360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변경없음
13	내곡동	1-3198	전	298.0	298.0	1-3198	전	298.0	298.0		박경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106동 1402호 (방배동, 래미안방배아트힐)				변경없음
14	내곡동	1-3215	전	8.0	8.0	1-3215	전	8.0	8.0		대림원예종묘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360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변경없음
15	내곡동	1-670	전	4.0	4.0	1-670	전	4.0	4.0		대림원예종묘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360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변경없음
16	내곡동	1-3202	답	6.0	6.0	1-3202	답	6.0	6.0		대림원예종묘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360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변경없음
17	내곡동	산12-782	임	7.0	7.0	산12-782	임	7.0	7.0		박종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18-11				변경없음

일련번호	위치	답 초				변경				증감(㎡)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8	내곡동	1-3220	전	53.0	53.0	1-3220	전	53.0	53.0		김두봉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418-15	영농 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6길 3	근저당권	변경없음
19	내곡동	산12-785	임	90.0	90.0	산12-785	임	90.0	90.0		박종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18-11				변경없음
20	내곡동	1-3212	답	3.0	3.0	1-3212	답	3.0	3.0		임경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 112동 1201호(한라아파트)				변경없음
21	내곡동	산12-780	임	18.0	18.0	산12-780	임	18.0	18.0		박종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18-11				변경없음
											김금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18-11				
22	내곡동	산12-779	임	2,860.0	2,860.0	산12-779	임	2,860.0	2,860.0		김병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5길 2, 13동 802호(방배동,삼호아파트)				변경없음
											박병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17, 104동 802호 (대치동,포스코더샵아파트)				
											박병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17, 104동 802호 (대치동,포스코더샵아파트)				
											셜반테즈 미영	미합중국 미니소타주 알버트리시 젠스로 1101				
											이강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 효자촌 108-202				
											이미영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8-40, 108동 1702호 (다산동,힐스테이트 황금산)				
											이병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50, 204동 1501호 (구미동,무지개마을)				
											이성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동로2길 29, 2층 (일도이동)				

일련번호	위치	답초					변경				증감(㎡)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이상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26동 1302호 (서현동,우성아파트)				
												이상익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 신반포14차아파트 217-714				
												이상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4-904				
												이숙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56, 105동 2001호 (다산동,한화꿈에그린아파트)				
												이영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56, 105동 2001호 (다산동,한화꿈에그린아파트)				
												이정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201번길 17, 108동 202호(서현동, 효자촌)				
												이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길 8, 409호(역삼동,강남역두산위브 센티움)				
												이현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201, 402동 801호(분당동, 샛별마을)				
												이희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아파트 1-305				
												주식회사 에버시버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30, 502호(서초동,서초성우빌딩)				
												주식회사 코렐핑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30, 102호(서초동,서초성우빌딩)				
												변재석 제이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117동 1102호 (반포동,래미안퍼스티지)				

일련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변희조 헤일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117동 1102호 (반포동,래미안퍼스티지)				
											홍영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14-5(내곡동)				
23	내곡동	1-1709	도	20.0	20.0	1-1709	도	20.0	20.0		김명수	서울 강남구 내곡동 1-1448				변경없음
24	내곡동	1-1715	답	1.0	1.0	1-1715	답	1.0	1.0		백승헌	경기도 과천시 부림4길 64, 지층 2호 (부림동)				변경없음
											백봉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131, 205동 401호 (양산물금부영사랑으로2단지)				
25	내곡동	1-64	답	557.0	557.0	1-64	답	557.0	557.0		백승헌	경기도 과천시 부림4길 64, 지층 2호 (부림동)				변경없음
											백봉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131, 205동 401호 (양산물금부영사랑으로2단지)				
26	내곡동	산12-788	도	487.0	487.0	산12-788	도	487.0	487.0		홍기득	서울특별시 서초동 산90 우성아파트 5동 601				변경없음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27	내곡동	1-1730	도	30.0	30.0	1-1730	도	30.0	30.0		최세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녹번동 17-25				변경없음
28	내곡동	산12-443	도	397.0	397.0	산12-443	도	397.0	397.0		홍기득	서울특별시 서초동 산90 우성아파트 5동 601				변경없음
29	세곡동	산52-55	임	1,978.0	1,978.0	산52-55	임	1,978.0	1,978.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변경없음
30	세곡동	산52-56	임	224.0	224.0	산52-56	임	224.0	224.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변경없음

일련번호	위치	답초				변경				증감(㎡)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1	세곡동	산52-58	임	266.0	266.0	산52-58	임	266.0	266.0		농업법인 ㈜부흥마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9-2,3층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38(2021. 7. 8.)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변경없음)

-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동부간선도로의 창동교~상계교 구간에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의정부 방향 주간선도로의 쾌적한 기능을 도모하는 한편, 단절된 창동·상계 지역의 통합 및 진·출입 동선확보로 지역 간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결정 조서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	2	86	21~35	주간선 도로	19,645 (1,700)	성수1가동 (용비교)	상계동 1200-4 (서울시계)	자동차 전용도로	중랑 천변	서고235 (89.5.18)	-일부구간 폭원변경 -철도,하천,전기공급설비 중복 결정

( )안은 금회 시행 구간임

나) 도로(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2-86	대로2-86	- 일부구간 폭원 변경 · 21~30m → 21~35m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인한 일부구간 폭원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2) 지형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변경없음)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39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면적 : 69,173㎡ ※ 금회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부지 포함
· 규모 : 본선 1,700m(지하차도 1,356m), 폭 21.0~35.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기정 : 실시계획 작성고시일로부터 2025년 2월 27일
· 변경 : 실시계획 작성고시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조서]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조서] (변경없음)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 주소 – [붙임조서] (변경없음)

4. 열람 장소(변경없음)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2133-8280)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3708-2580, 2591)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N
양주시
고양시
100
마 들 길
중
랑
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퇴계원
지하철 7 호선
노 원 구
상 계 동
도봉구청
區
동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확장
상계교
자운고교
과 업 구 간
L=1.70km
창동교
도봉경찰서
노원구청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경제기반형)
노곡중교
지하철 4 호선
도 봉 구
창 동
지하철 1 호선
하 계 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덕대학교
상계IC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1	상계동	769-4	도	41,524.5	3,114.0	서울특별시	
2	상계동	739-3	제	9,128.9	286.0	국토교통부	
3	상계동	744	도	28,241.4	8,116.0	서울특별시	
4	상계동	739	도	32,456.8	16,505.0	서울특별시	
5	상계동	790-1	제	665.0	286.0	노원구	
6	상계동	813-6	제	787.0	60.0	노원구	
7	상계동	813-2	천	26,021.0	158.0	서울특별시	
8	상계동	739-4	도	11,261.0	990.0	서울특별시	
9	상계동	699	도	57,730.5	32,752.0	서울특별시	
10	상계동	699-2	제	382.4	191.0	국토교통부	
11	상계동	791-1	천	24,575.0	1,568.0	서울특별시	
12	상계동	855-73	천	36.0	36.0	국토교통부 외 2인	
13	상계동	813-1	제	665.0	12.0	노원구	
14	상계동	809-1	구	115.0	19.0	서울특별시	
15	상계동	814-9	답	132.0	83.0	기획재정부	
16	상계동	817-19	구	79.0	34.0	서울특별시	
17	상계동	817-16	제	376.0	87.0	서울특별시	
18	상계동	817-3	천	19,110.0	200.0	서울특별시	
19	상계동	817-15	제	37.0	36.0	서울특별시	
20	상계동	699-1	제	143.7	143.7	국토교통부	
21	상계동	817-2	제	2,035.0	8.0	노원구	
22	상계동	853-7	답	505.0	214.0	국토교통부	
23	상계동	853-4	답	17.0	17.0	국토교통부	
24	상계동	849-2	도	19.0	19.0	서울특별시	
25	상계동	852-3	천	508.0	508.0	서울특별시	
26	상계동	854-4	구	534.0	118.0	서울특별시	
27	상계동	854	전	3,017.0	37.0	기획재정부	
28	상계동	660-2	구	177.0	177.0	국토교통부	
29	상계동	820	철	41,216.0	2,419.0	서울교통공사	
30	상계동	817-13	대	321.0	42.0	서울특별시	
31	상계동	660-1	제	9,384.4	937.0	국토교통부	
계				311,200.6	69,172.7		

지 장 물 조 서

*소유자는 토지대장상의 토지소유자임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1	상계동	820	창고	샌드위치판넬/스레트	19㎡	서울교통공사	
			창고	컨테이너	30㎡		
			창고	철골스레트	322㎡		
			관정		1식		
2	상계동	820	관상수		10주	서울교통공사	
			소나무		10주		
			회양목		600주		
			기념간판		1식		
			환기구	철재	1식		
			관정		1식		
3	상계동	820	창고	벽돌스레트	292㎡	서울교통공사	
			창고	벽돌슬라브	113㎡		
			폐수처리장	벽돌슬라브	85㎡		
			울타리	블록	H=1.8m L=755m		
			폐수처리장	벽돌슬라브	17㎡		
			폐수처리장	철골스레트	102㎡		2층
			폐수처리장	벽돌슬라브	56㎡		
			폐수처리장	철골스레트	140㎡		2층
			소나무		2주		
			관상수		5주		
			폐수처리시설		5식		
4	노원구 상계동	660-1	화장실	목재합석	6㎡	국토교통부	
			CCTV		1식		
			관정		1식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4호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 -255호(2005.03.03.)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5호(2006.06.29.)로 지구 변경(확장) 지정고시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5호(2008.12.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0호(2010.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호(2014.0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4호(2016.0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3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5호(2017.07.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86호(2020.05.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0호(2020.0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3호(2020.10.2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호(2023.01.0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2.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	계	주거지형	강북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	937,886.1	-	937,886.1	
	기존지구			578,607.7	-	578,607.7	
	확장지구			359,278.4	-	359,278.4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359,278.4	-	359,278.4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179,566.0	-	179,566.0	-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57,553.4	-	57,553.4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28,517.0	감) 20.0	28,497.0	-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18,475.0	-	18,475.0	-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존치관리구역	75,167.0	증) 20.0	75,187.0	-

※ 변경사유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토지분할 측량성과를 반영한 단순 면적 정정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미아4구역)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미아4 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	28,517	감) 20	28,497	토지분할 측량성과를 반영한 단순 면적 정정

나. 토지 등 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추정 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40.0% ⇒ (4,948억 - 3,286억) / 1,187억 X 100% = 140.0%
- 총 수입 추정 : 4,948억
- 총 지출 추정 : 3,286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187억</td></tr>
<tr><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td><td>• 감정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 `23.12 기준)
•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가액 (토지, 건물 일괄평가액)
• 단독주택, 상가 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td></tr>
<tr><td>공동주택 개별분담금 추산(예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개별 종전자상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52㎡(21평)</td><td>5.77억</td><td rowspan="8">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40.0%)</td><td rowspan="8">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td>59㎡A(24평)</td><td>6.47억</td></tr>
<tr><td>59㎡T(24평)</td><td>5.62억</td></tr>
<tr><td>74㎡T(30평)</td><td>6.76억</td></tr>
<tr><td>74㎡A(30평))</td><td>7.69억</td></tr>
<tr><td>84㎡A-1, 2(34평)</td><td>8.21억</td></tr>
<tr><td>84㎡B-1, 2(34평)</td><td>7.82억</td></tr>
<tr><td>84㎡PH(35평)</td><td>9.92억</td></tr>
</table></td></tr>
<tr><td>근린생활시설 개별분담금</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개별 종전자상 추정액 X 추정비례율)</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추산(예시)</td><td>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1,526.52㎡</td><td>85.26억</td><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40.0%)</td><td>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able>
※ 향후 상가 M/D(업종별 배치계획) 구성에 따라 상가분양 최소면적 및 분양예정가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상가는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분이 남아 있을 경우 일반분양하고 일반분양가는 향후 주변시세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td></tr>
</table>

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미아4구역)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8,517	감) 20	28,497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7,544	감) 20	7,524	26.4	환산 부지면적(1,804.7㎡) 포함시 (9,348.7㎡ → 9,328.7㎡)
	도 로	6,135	감) 20	6,115	21.5	-
	공공청사	1,409	-	1,409	4.9	도시재생지원센터(연면적 1,280㎡), 육아종합지원센터(연면적 750㎡) 건축비용 별도기부채납 보행연결교 복합설치
택 지 (획 지)	소 계	20,973	-	20,973	73.6	-
	4-1	18,540	-	18,540	65.1	공동주택
	4-2	1,598	-	1,598	5.6	종교시설
	4-3	835	-	835	2.9	

※ 변경사유 : 토지분할 측량성과를 반영한 단순 면적 정정

2) 인구 · 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미아4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493	-	493	1,302	-	1,302	임대 10세대
	60㎡이하	204	-	204				
	60㎡초과~85㎡이하	289	-	289				
	85㎡초과	-	-	-				

3)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8,517	감) 20	28,497	100.0	-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66	-	66	0.2	-
	3종일반주거지역	28,451	감) 20	28,431	99.8	-

※ 변경사유 : 토지분할 측량성과를 반영한 단순 면적 정정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미아4 재정비 촉진구역내	4,120.41	증) 139.56	4,259.97	-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221.23	감) 172.71	48.52	-
	주민공동시설		2,402.81	증) 6.42	2,409.23	-
	문 고		192.01	감) 192.01	-	-
	도서관		-	증) 427.24	427.24	
	보육시설		265.17	증) 26.35	291.52	-
	어린이놀이터		690.00	증) 5.00	695.00	-
	노인정		175.19	증) 25.47	200.66	-
	주민운동시설		144.00	-	144.00	-
	경비실		30.00	증) 13.80	43.80	-

※ 사업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미아4구역 세부 건축설계 변경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미아4재정비 촉진구역	28,517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	243	-	-	243	-	-
변경	미아4재정비 촉진구역	28,497 (감 20)							

※ 변경사유 : 토지분할 측량성과를 반영한 단순 면적 정정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높이	
	명칭	면 적 (㎡)	명칭	면 적 (㎡)					기준	허용	상한	법적 상한	평균	최고
기정	미아4 재정비 촉진 구역	28,517	4-1	18,540	미아동 1261 번지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10	212.02	252.96	265.55	23.5층	28층이하 (90m)
			4-2	1,598	미아동 1261 번지일대	-	종교시설	관련법규에 따름						
			4-3	835	미아동 1261 번지일대	-	종교시설	관련법규에 따름						
변경	미아4 재정비 촉진 구역	28,497 (감 20)	4-1	18,540	미아동 1261 번지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10	212.02	252.96	265.55	23.5층	28층이하 (90m)
			4-2	1,598	미아동 1261 번지일대	-	종교시설	관련법규에 따름						
			4-3	835	미아동 1261 번지일대	-	종교시설	관련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493세대(임대 10세대 포함)

구 분		합계	분양	임대
총 세대수		493 (100%)	483 (98.0%)	10 (2.0%)
60㎡	40㎡ 이하	-	-	-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상한	법적상한	평균	최고
	구 분			합계		분양		임대						
	미만	40~50㎡		–		–		–						
		50~60㎡		204		194		10						
		소계		204 (41.4%)		194		10						
	60~85㎡			289 (58.6%)		289		–						
	85㎡ 초과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미아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주) 세대수 항목의 (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
※ 변경사유 : 토지분할 측량성과를 반영한 단순 면적 정정

다) 용적률 계획(순부담 등)

○ 용적률(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28,517㎡	20,973㎡	9,348.7㎡	2,924㎡	3,05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9,348.7㎡ – 2,924㎡– 3,057㎡ = 3,367.7㎡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공공청사[도시재생지원센터(연면적 1,280㎡,) 육아종합지원센터(연면적 750㎡)] 환산부지면적(1,386㎡) 및 미아4구역내 보행연결교(폭6m×연장50m 중 210m) 부지환산면적(418.7㎡) 포함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 210% + 2.02% = 212.02% * 인센티브 = 2.02% (단독주택세입자대책 반영을 위한 인센티브 2.02%주1))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2014.8)」 적용 [건축물 기부채납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현금기부채납 총량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19.01.) 미적용]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대상지 – 허용용적률 212.02% – α = 0.148535 (※ : 기정 촉진계획 α적용) ▸ 상한용적률 (완화가능용적률) = 212.02% × (1+1.3×1×0.148535) = 252.96% (적용 252.96%)			α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법적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65.55%(계획 기준) 이하			• 증가용적률 12.59%	

○ 용적률(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28,497㎡	20,973㎡	9,328.7㎡	2,904㎡	3,05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9,328.7㎡ - 2,904㎡ - 3,057㎡ = 3,367.7㎡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공공청사[도시재생지원센터(연면적 1,280㎡,) 육아종합지원센터(연면적 750㎡)] 환산부지면적(1,386㎡) 및 미아4구역내 보행연결교(폭6m×연장50m 중 210m) 부지환산면적(418.7㎡) 포함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 210% + 2.02% = 212.02% * 인센티브 = 2.02% (단독주택세입자대책 반영을 위한 인센티브 2.02%주1))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2014.8)」 적용 [건축물 기부채납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 현금기부채납 총량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19.01.) 미적용]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대상지 - 허용용적률 212.02% - α = 0.148535 (※ : 기정 촉진계획 α적용) ► 상한용적률 (완화가능용적률) = 212.02% × (1+1.3×1×0.148535) = 252.96% (적용 252.96%)			α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법적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65.55%(계획 기준) 이하			• 증가용적률 12.59%	

주)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주거사업과-4568. `19.4.25.) 반영. 향후 세입자손실보상 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인가단계에서 정산 또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계획 등을 재조정

※ 변경사유 : 토지분할 측량성과를 반영한 단순 면적 정정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2조(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서울시에 매각(처분)

계획기준	• 임대주택건설 : 증가되는 용적률의 30% 이상			
산출근거	• 증가되는 용적률의 30% = (265.55% - 252.96%) × 30% = 3.777% - 임대주택 확보기준면적 = 3.777% × 18,540㎡(대지면적) = 700.26㎡ 이상 • (기정) 임대주택 건설계획 : 10세대(724.00) - 10세대 × 72.40㎡(공급면적) = 724.00㎡ ∴ 724.00㎡ 〉 700.26㎡ (변경) 임대주택 건설계획 : 10세대(724.01㎡) - 10세대 × 72.401㎡(공급면적) = 724.01㎡ ∴ 724.01㎡ 〉 700.26㎡			
세대규모 (전용)	세대수			비고 (규모별 비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40㎡이하	-	-	-	-
40㎡초과~50㎡이하	-	-	-	-
50㎡초과~60㎡이하	10	-	10	100%
전체	10	-	10	100%

※ 변경사유 : 미아4구역 세부 건축설계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면적의 변경

8)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환경 검토결과

구 분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검토 항목	계획에 반영 사항
1. 생태면적율	생태면적률 30% 이상	• 생태면적률 30.23%(당초 32.55%)	• 기준 30%이상 초과 확보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내·외부 녹지네트워크 개선	• 사업지구내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여 녹지변화로 인한 영향 최소화
3.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사업 특성상 대규모 절성토 발생은 없음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 공법 실시
4. 비오톱	3등급	• 단지내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에 따라 비오톱 변화	• 자연환경을 고려한 단지내 식생 계획 수립
5.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일조간섭이 예상되는 북측·서측 인접(200m)지역에 학교시설 없음	• 건축물간 녹지조성 및 건축배치를 고려하여 충분한 일조를 확보토록 계획함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WNW(서북서풍)	• 녹지공간확보 • 건축물의 방향은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계획하여 바람 차단 최소화
7.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실시설계시, 에너지절약시스템 및 에너지절약설비 반영토록 계획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작성
	신재생에너지 사용	• 사업지구 내 사용 에너지는 청정연료로 계획	•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으로 연료 사용량 최소화
8. 경관	Skyline 보전	• 지나치게 장대한 규모를 지양하고 인접사업지역 및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주변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을 확보한 건물높이계획 • 건축물의 차폐·위압감 완화
	조망권 확보	• 보도 및 차도에서의 가로녹지율이 30% 이상이 요구되나 현재 조경식재계획의 미수립으로 분석이 불가함	• 추후 실시계획시 부지 경계변의 조경녹지 계획으로 가로녹지율 향상되도록 반영할 계획
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 공간 최대확보	• 당해 사업부지 내 조성 필요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및 다양한 공동이용시설 계획
10.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사업대상지 주변과의 연계성 강화 및 보행연결을 위하여 단지내 광장신설	• 외부공원 및 주출입구 등을 고려한 보행로 조성
11. 물순환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방지	•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 예상	• 침사지 설치로 토사유출 방지 • 절·성토사면 비닐덮개 등 포설
12. 소음·진동	소음 65dB(A) 진동 65dB(V)	• 주변으로 소음의 영향 예상됨	• 가설방음판넬(높이 : 4.0 ~ 5.0m, 연장 : 774m) 설치,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등 저감방안 수립·시행
13. 폐기물	폐기물 발생 최소화	• 공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75kg/일, 분뇨 발생량 26.5ℓ/일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1,121.0kg/일, 분뇨 발생량 1,100.3ℓ/일	• 발생 폐기물을 성상별 구분하여 분리배출 및 강북구 조례 및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할 계획
14. 수질	필요용수량 급수	• 일급수량 : 312㎥/일	• 기존 시 상수관로에서 공급
	오·우수 적정처리	• 일오수량 : 208㎥/일	• 기존 시 우수관로에 연계해 처리

9)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 본 사업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자연성이 매우 낮고 식물상이 매우 빈약하나, 양호한 수목은 사업시 이식후 재식토록 함

10)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현 황	계 획	증 감	
재건축사업	2011년 (2단계)	주택재건축조합	396호	493호	증) 97호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북측 송천초등학교	•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소음·진도저감대책 및 통학로 안전시설설치 등의 교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 계획서에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겠음	거리 200m 이내 일부포함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조합 설립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노후주택 밀집지역	• 펜스 설치 및 유지 · 관리 • 1일 오전 · 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무인택배함 동당 1개소 설치 • 내부가 보이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설치 •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자연감시 고려)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	28,517	감) 20	28,497	토지분할 측량성과를 반영한 단순 면적 정정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8,517	감) 20	28,497	100.0	-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66	-	66	0.2	-
	3종일반주거지역	28,451	감) 20	28,431	99.8	-

※ 변경사유 : 토지분할 측량성과를 반영한 단순 면적 정정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47	20~30 (30)	보조 간선	5,055 (164)	미아동	수유동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738호 (63.12.24)	-
기정	중로	1	503	20	보조 간선	724 (226)	미아동 560-30	미아동 126-337	일반 도로	-	서고387 (78.08.03)	-
기정	중로	2	484	18	집산 도로	174 (104)	미아동 1261-280 중로1-503	미아동 1261-72	일반 도로	-	서고3 (69.01.18)	-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10	미아동 637-440 중로1-47	미아동 1261-634 중로2-484	일반 도로	-	서고105 (83.02.24)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0	미아동 1261-423 소로2-4	미아동 1261-431	일반 도로	-	서고18 (19.01.10)	-
기정	소로	3	(2)	6	특수 도로	50 (35)	미아동 1261-531	미아동 813-6	보행자 전용 도로 (고가)	-	서고18 (19.01.10)	공공청사②(28.6㎡), 삼양로(199.3㎡), 폭포소공원(72.1㎡) 과 중복결정

※ ( )는 미아4구역 내 폭원 및 연장이며, 도로번호는 임시 번호임

2)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공 청사	미아동 1261-548일대	1,409	-	1,409	서고18 (19.01.10)	건축물 기부채납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030㎡ - 환산 부지면적 : 1,386㎡ • 도시재생지원센터(876.6㎡) : 서울시 • 육아종합지원센터(509.4㎡) : 강북구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면적 및 지분 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

○ 건축범위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 이(층)
2	공공청사	50% 이하	관계법규에 따름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에 따라 용적률 완화 가능)	관련법규에 따름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획 지	소계	20,973	-	20,973	100.0	-
	4-1	18,540	-	18,540	88.4	공동주택
	4-2	1,598	-	1,598	7.6	종교시설
	4-3	835	-	835	4.0	종교시설

2)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4-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허용용도외의 용도는 불허
기정	허용용도	4-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허용용도외의 용도는 불허
기정	허용용도	4-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허용용도외의 용도는 불허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건폐율 계획

구 분		지역	건 폐 율	비 고
기정	4-1 (공동주택)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기정	종교	제3종일반주거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4-1 (공동주택)	210	212.02	252.96 이하	265.55 이하	-
기정	종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기정	4-1 (공동주택)	2.02%(단독주택세입자 대책반영)	-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기정	4-1 (공동주택)	40.94	12.59	총 53.53%

○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 이 기 준	비 고
기정	4-1 (공동주택)	제3종일반주거지역	평균 23.5층이하 / 최고 28층이하 / 최고높이 90m이하	-
기정	종교	제3종일반주거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3)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 보행공간, 휴식공간, 가로형 공원 등 조성 - 건축한계선 : 5m	• 서측 삼양로변 • 남측 숭인로변
	이면도로변	• 보행공간, 휴식공간, 가로형 공원 등 조성 - 건축한계선 : 3m	• 동측 18m도로변 • 북측 8m도로변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로서 보행공간확보, 보행로변 휴식공간, 선형의 녹지축 및 가로형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공공에 항시 개방토록 조성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부지내	• 공공보행통로(폭5.5m)는 “삼각산 가는 길” 계획을 고려하여 상시보행이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

나) 환경관리계획

구 분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검토 항목	계획에 반영 사항
1. 생태면적율	생태면적률 30% 이상	• 생태면적률 30.23%(당초 32.55%)	• 기준 30%이상 초과 확보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내·외부 녹지네트워크 개선	• 사업지구내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여 녹지변화로 인한 영향 최소화
3.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사업 특성상 대규모 절성토 발생은 없음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 공법 실시
4. 비오톱	3등급	• 단지내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에 따라 비오톱 변화	• 자연환경을 고려한 단지내 식생 계획 수립
5.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일조간섭이 예상되는 북측·서측 인접(200m)지역에 학교시설 없음	• 건축물간 녹지조성 및 건축배치를 고려하여 충분한 일조를 확보토록 계획함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WNW(서북서풍)	• 녹지공간확보 • 건축물의 방향은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계획하여 바람 차단 최소화
7.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실시설계시, 에너지절약시스템 및 에너지절약설비 반영토록 계획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작성
	신재생에너지 사용	• 사업지구 내 사용 에너지는 청정연료로 계획	•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으로 연료 사용량 최소화
8. 경관	Skyline 보전	• 지나치게 장대한 규모를 지양하고 인접사업지역 및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주변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을 확보한 건물높이계획 • 건축물의 차폐·위압감 완화
	조망권 확보	• 보도 및 차도에서의 가로녹지율이 30% 이상이 요구되나 현재 조경식재계획의 미수립으로 분석이 불가함	• 추후 실시계획시 부지 경계변의 조경녹지 계획으로 가로녹지율 향상되도록 반영할 계획
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 공간 최대확보	• 당해 사업부지 내 조성 필요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및 다양한 공동이용시설 계획

구 분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검토 항목	계획에 반영 사항
10.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사업대상지 주변과의 연계성 강화 및 보행연결을 위하여 단지내 광장신설	• 외부공원 및 주출입구 등을 고려한 보행로 조성
11. 물순환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방지	•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 예상	• 침사지 설치로 토사유출 방지 • 절·성토사면 비닐덮개 등 포설
12. 소음 · 진동	소음 65dB(A) 진동 65dB(V)	• 주변으로 소음의 영향 예상됨	• 가설방음판넬(높이 : 4.0 ~ 5.0m, 연장 : 774m) 설치,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등 저감방안 수립·시행
13. 폐기물	폐기물 발생 최소화	• 공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75kg/일, 분뇨 발생량 26.5ℓ/일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1,121.0kg/일, 분뇨 발생량 1,100.3ℓ/일	• 발생 폐기물을 성상별 구분하여 분리배출 및 강북구 조례 및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할 계획
14. 수질	필요용수량 급수	• 일급수량 : 312㎥/일	• 기존 시 상수관로에서 공급
	오·우수 적정처리	• 일오수량 : 208㎥/일	• 기존 시 우수관로에 연계해 처리

다)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에 매각(처분)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 중 소형주택
합 계	493	100.0	10	10	-	2.0	100.0	-
40㎡이하	-	-	-	-	-	-	-	-
40㎡초과~50㎡이하	-	-	-	-	-	-	-	-
50㎡초과~60㎡이하	204	41.4	10	10	-	2.0	100.0	-
60㎡초과~85㎡이하	289	58.6	-	-	-	-	-	-
85㎡초과	-	-	-	-	-	-	-	-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 등은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와 강북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 02-2133-7214) 및 강북구 주거정비과(☎ 02-901-256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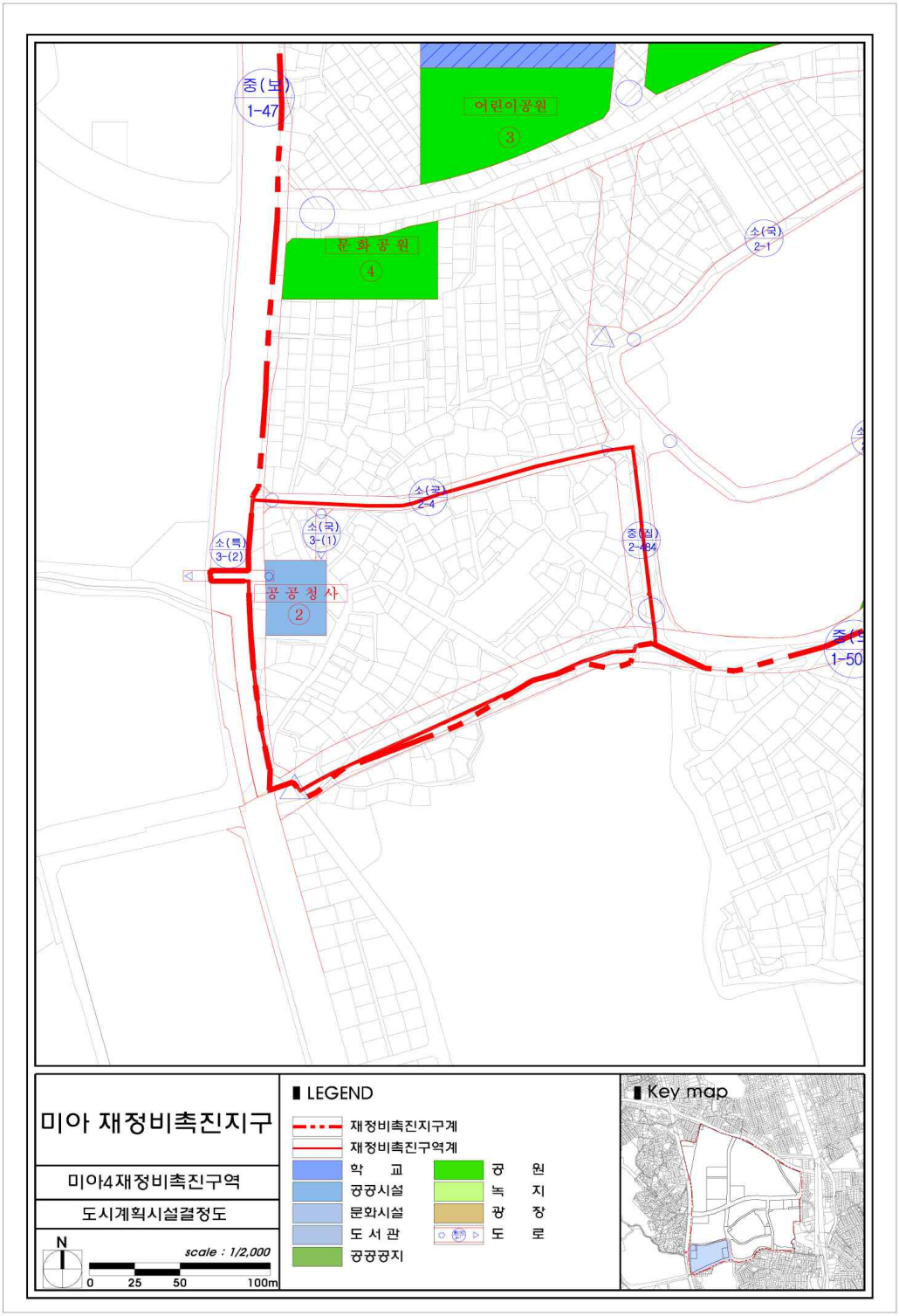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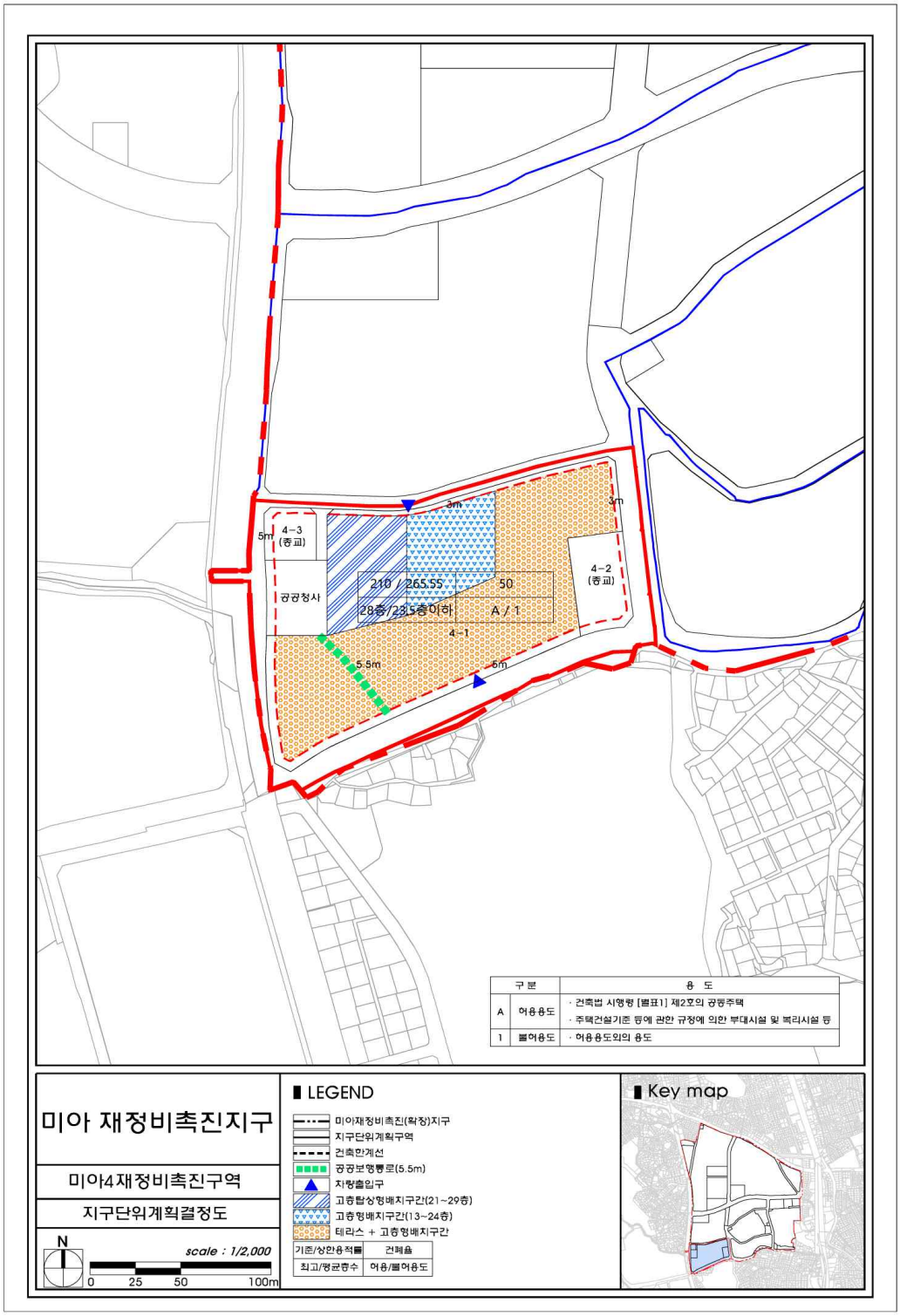

붙임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총괄)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	계	주거지형	강북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	937,886.1	-	937,886.1	-
	기존지구			578,607.7	-	578,607.7	-
	확장지구			359,278.4	-	359,278.4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년도 : (기정) 2027년 → (변경) 2030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59,278.4	-	359,278.4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36,856.0	-	236,856.0	65.9	-
	주거용지	236,856.0	-	236,856.0	65.9	-
	주거복합	-	-	-	-	-
기반 시설 용지	소계	115,317.4	-	115,317.4	32.1	-
	공공시설	1,409.0	-	1,409.0	0.4	도시재생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청사①	2,500.0	-	2,500.0	0.7	송천동 주민센터
	공공청사②	1,561.0	-	1,561.0	0.4	공공청사②(공공급식센터)
	문화시설	-	-	-	-	-
	학교	38,007.0	-	38,007.0	10.6	-
	유치원	5,340.0	-	5,340.0	1.5	-
	도서관	-	-	-	-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1,500.0	-	1,500.0	0.4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공원	14,642.0	-	14,642.0	4.1	-
	녹지	1,167.0	-	1,167.0	0.3	-
	공공공지	-	-	-	-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광 장	491.0	-	491.0	0.1	-
	도 로	48,700.4	-	48,700.4	13.6	-
근린생활시설		1,900.0	-	1,900.0	0.5	-
종교용지		5,205.0	-	5,205.0	1.5	-

2) 인구 · 주택수용계획: 17,030인 / 6,451세대(변경없음)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 계		6,451	17,030	2.64인/가구
촉진구역	소계	5,425	14,322	
	60㎡이하	3450	9,108	
	60~85㎡이하	1764	4,657	
	85㎡초과	211	557	
존치지역		1,026	2,708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소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	50,317	-	50,317	-
교육 · 문화시설	교육시설	3	43,347	-	43,347	유치원, 송천초교, 영훈학교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1	1,500	-	1,500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 공공청사③ : 문화복합시설
	공공청사①	1	2,500	-	2,500	송천동 주민센터
	공공청사②	1	1,561	-	1,561	공공청사②(공공급식센터)
	공공청사	1	1,409	-	1,409	도시재생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소	면적(㎡)			특 성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809	-	15,809	전체구역면적의 5.7% 세대당 3.5㎡

구 분	개소	면적(㎡)			특 성
		기 정	변 경	변 경 후	
②	1개소	5,444	-	5,444	청소년교육문화공원
③	1개소	5,186	-	5,186	어린이공원
④	1개소	3,156	-	3,156	송천문화공원
⑥	1개소	856	-	856	소공원
녹지	1개소	1,167	-	1,167	경관녹지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없음)

◯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 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기준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 정	미아4	C	미아동	1261-376	2.8	210	50	-	2	공동	면적 감) 20㎡
변 경	미아4	C	미아동	1261-376	2.8	210	50	-	2	공동	

※ 추진단계는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단계적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름
※ 변경사유 : 미아4구역 측량성과를 반영한 단순 면적 정정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사업의종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재정비촉진지구			359,278.4	-	359,278.4	
촉진구역	소 계		284,111.4	-	284,111.4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403-44	179,566.0	-	179,566.0	주택재개발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636-32	57,553.4	-	57,553.4	주택재개발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1261-376	28,517.0	감) 20	28,497	주택재건축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476	18,475.0	-	18,475.0	사업완료
존치관리구역			75,167.0	증) 20	75,187.0	

※ 변경사유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토지분할 측량성과를 반영한 단순 면적 정정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

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다.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8,517	감) 20	28,497	100.0	-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66	-	66	0.2	-
	3종일반주거지역	28,451	감) 20	28,431	99.8	-

※ 변경사유 : 미아4구역 토지분할 측량성과를 반영한 단순 면적 정정

라. 미아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구분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최고/평균층수	최고높이
미아2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60.9	25%이하	35층/19.9층	105m
미아3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주1) 244.4	60%이하	29층/17.5층	90m
미아4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주1) 265.55	50%이하	28층/23.5층	90m
미아5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30.0	60%이하	15층/14.0층	48m

※ 최고높이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의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임
주1) 미아3구역 및 미아4구역 상한용적률은 법적상한용적률임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역 명		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계	기 정	284,111.4	69,020.1	15,320.4	14,955.0	-	38,744.7
	변 경	284,091.4	69,000.1	15,300.4	14,955.0	-	38,744.7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179,566.0	41,291.0	6,924.0	8,494.0	-	25,873.0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57,553.4	주1)16,086.4	5,089.4	3,095.0	-	7,902.0
미아4재정비 촉진구역	기 정	28,517.0	주2)9,348.7	2,924.0	3,057.0	-	3,367.7
	변 경	28,497.0	주2)9,328.7	2,904.0	3,057.0	-	3,367.7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18,475.0	2,294.0	383.0	309.0	-	1,602.0

※ 주1)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의 건립비용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1,497㎡ 포함
※ 주2) 공공시설 [도시재생지원센터(연면적 1,280㎡), 육아종합지원센터(연면적 750㎡)] 건립비용에 대한 환산부지 면적 1,386㎡ 및 보행연결교 [폭6m x 길이50m 중 210㎡] 설치비용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418.7㎡ 포함
※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완료
※ 변경사유 : 미아4구역 토지분할 측량성과를 반영한 단순 면적 정정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구 분	전체세대수	임대주택(호)			
		소 계	40㎡이하	40~50㎡이하	50㎡초과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3,519	604	238	178	188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1,037	179	68	77	34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493	10	-	-	10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376	70	70	-	-
계	5,425	863	376	255	232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단 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기정	사업완료	2006	이주 완료	2010.9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완료
기정	1단계	2010	2023.3 이후	2027.12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
기정	2단계	2011	2013.9 이후	2021.6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
기정	2단계	2011	2020.9 이후	2024.6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
변경	2단계	2011	2024.5 이후	2028.12		이주

※ 변경사유 :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14) 기타 계획(변경 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 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없음)
나.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없음)
다.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변경) : 생략(본문 내용과 같음)
라. 미아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없음)
마.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촉진구역별 건축계획)(변경 없음)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관련도면>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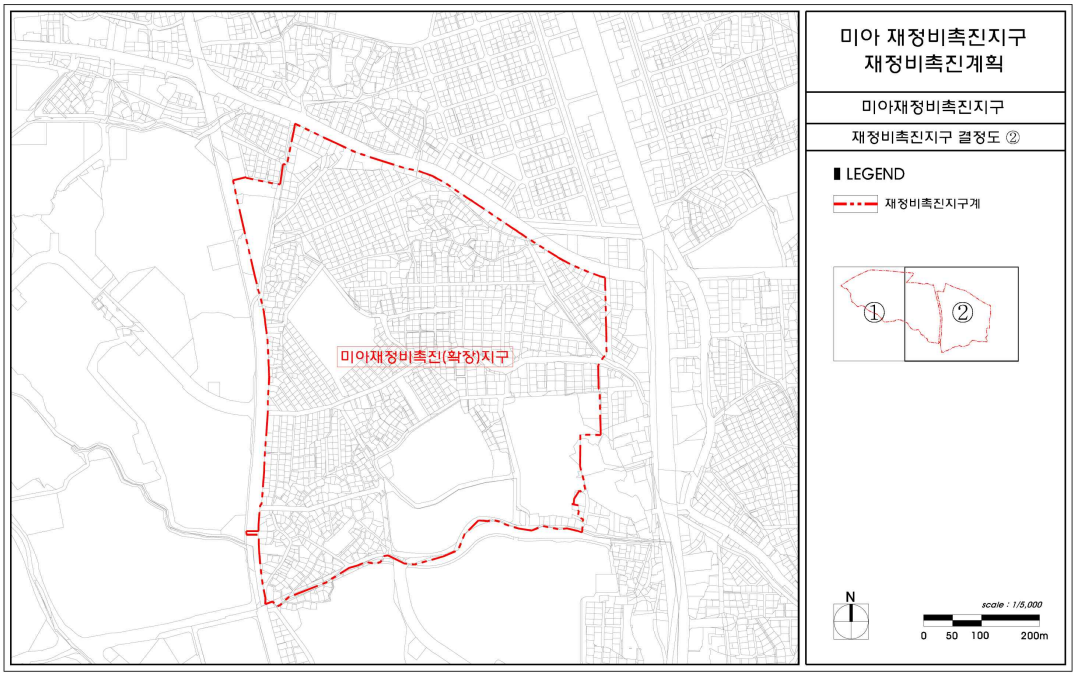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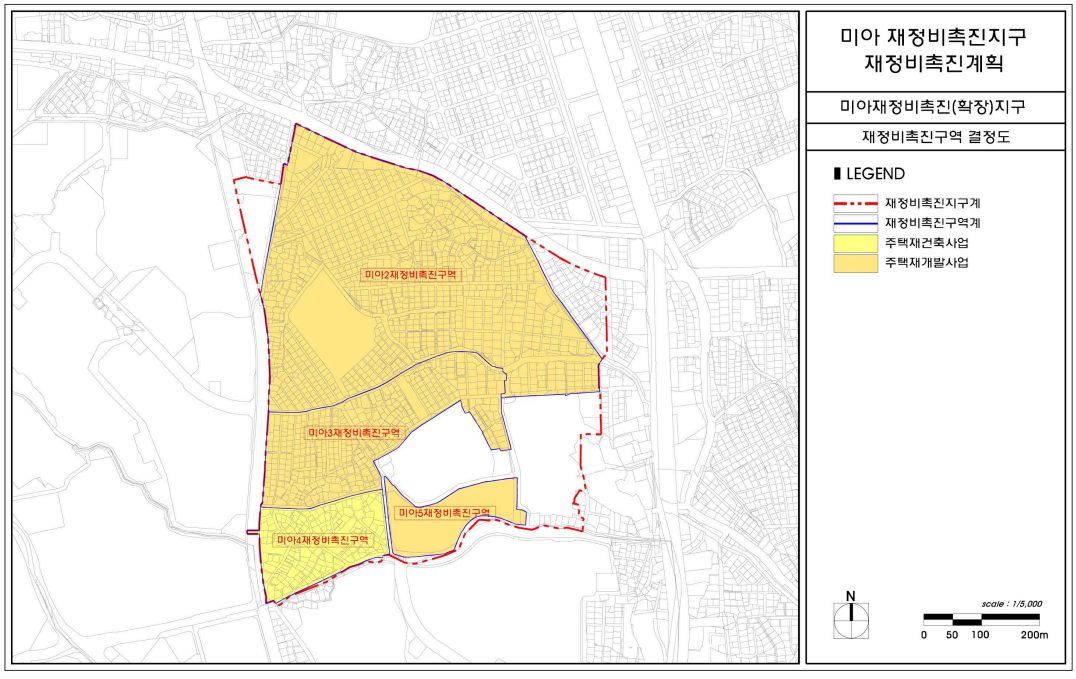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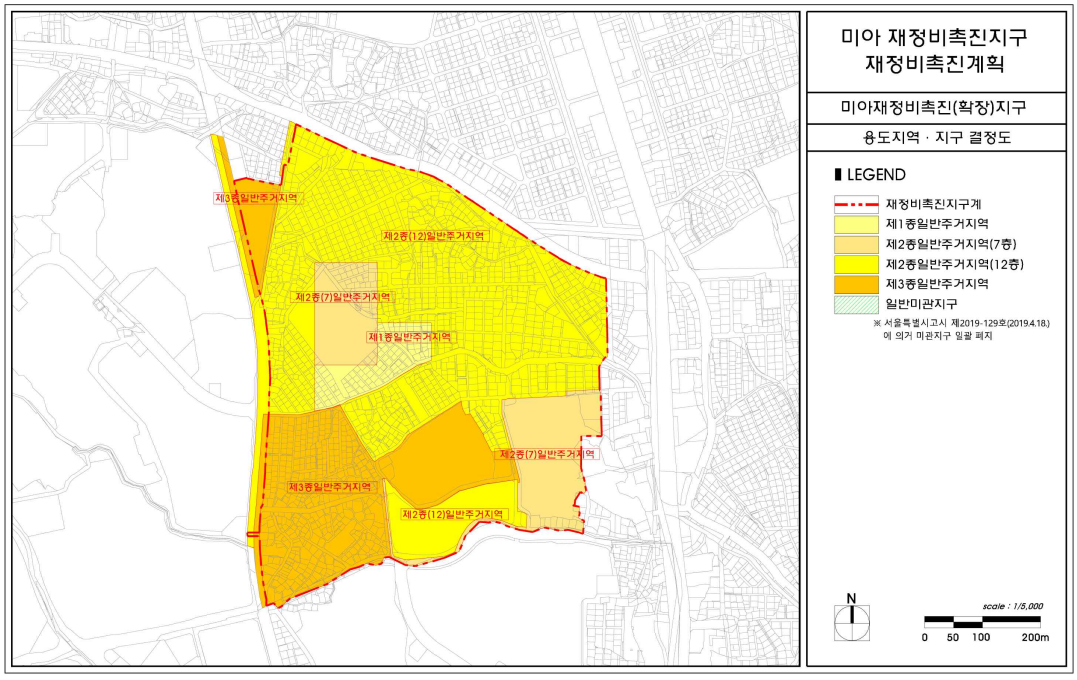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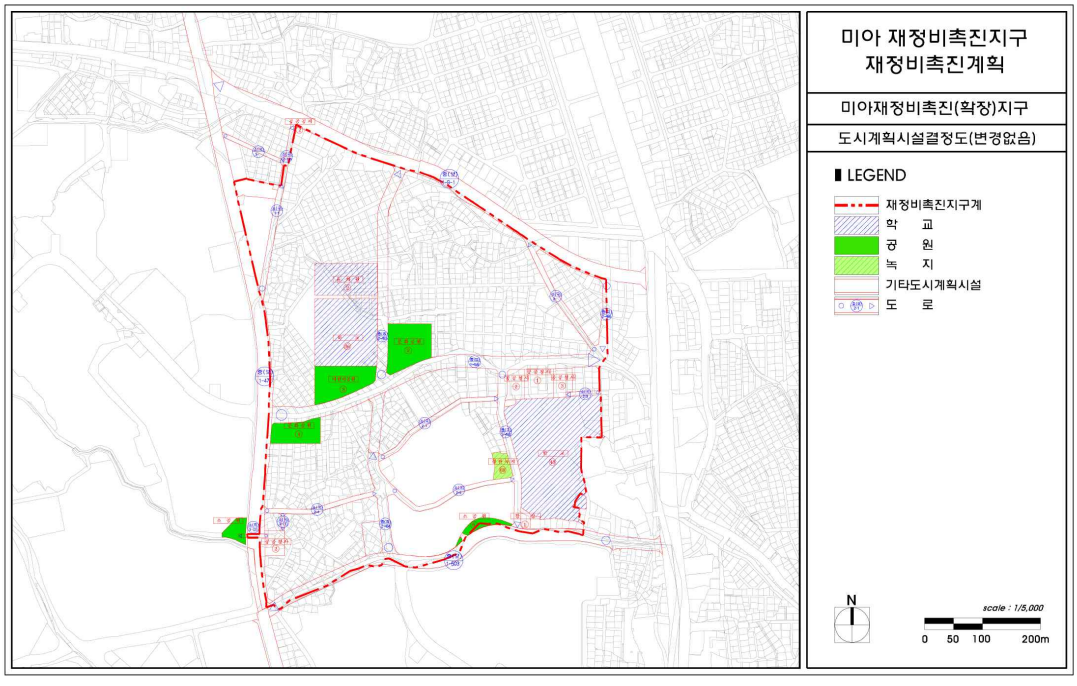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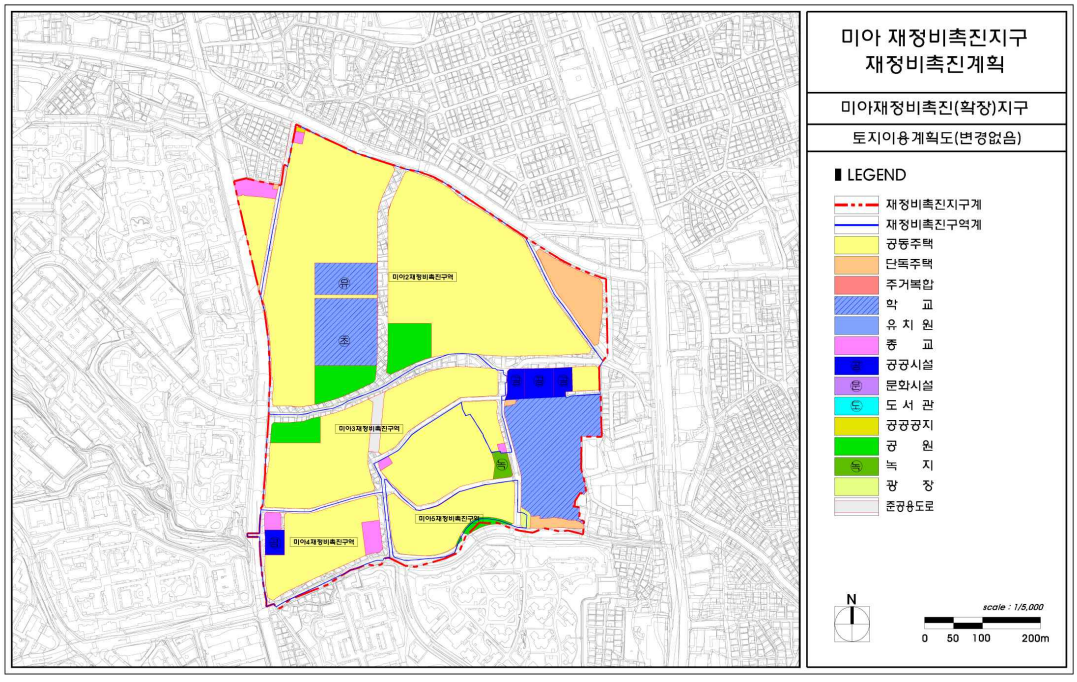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5호

용산구 서계동 100-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43호(2021. 8. 12.)로서 용산구 서계동 100-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변경)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용산구 서계동 100-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촉진지구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기정]

공동사업시행자				
시행자 명칭	㈜에버그린플라자		㈜가든시티	
대표자 성명	곽성현	곽성희	곽성현	곽성희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3길 36-3, 1층(서계동)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0, 1006호(서소문동, 대양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 - 4483155		110111 - 4270247	

[변경]

공동사업시행자		
시행자 명칭	㈜에버그린플라자	㈜가든시티
대표자 성명	곽성희	곽성희

공동사업시행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0, 503호(서소문동, 대양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0, 1106-2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 - 4483155	110111 - 4270247

■변경사유: 사업시행자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변경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기정]

공동사업시행자				
시행자 명칭	㈜서계동백다시일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에버그린플라자	
대표자 성명	곽성현	곽성희	곽성현	곽성희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0, 1006호(서소문동, 대양빌딩)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3길 36-3, 1층(서계동)	
법인등록번호	110111 - 4270247		110111 - 4483155	

[변경]

공동사업시행자		
시행자 명칭	㈜에버그린플라자	㈜가든시티
대표자 성명	곽성희	곽성희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0, 503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0, 1106-2호 (서소문동, 대양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 - 4483155	110111 - 4270247

■변경사유: 사업시행자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변경없음)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변경없음)
3. 방재계획(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 대상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

연번	자치구	역세권	위치	면적(㎡)	비고
1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A	대방동 393-66 일대	21,398	
2	동작구	남성역A	사당동 252-15 일대	20,005.8	
3	동작구	남성역B	사당동 318-99 일대	10,667.7	
4	동작구	대람삼거리역	신대방동 588-7 일대	14,637.7	
5	서초구	내방역	방배동 872-11 일대	5,076.4	
6	관악구	봉천역A	봉천동 944-1 일대	7,552.5	
7	관악구	봉천역B	봉천동 923-1 일대	5,760.8	
8	서대문구	홍제역	홍제동 298-9 일대	42,515	
9	양천구	오목교역	신정동 86-45 일대	4,506	

나. 권리산정기준일: 2025. 2. 14.

다.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임

라.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마.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02-2133-4655) 및 해당 자치

구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열람부서	전화번호	주소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 도시계획과	02)820-1983,1987,9325 02)820-9630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서초구	도시계획과	02)2155-6783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관악구	도시계획과	02)879-6441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서대문구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02)330-4316	서대문구 연희로 248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12	양천구 목동동로 105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관계도면

1.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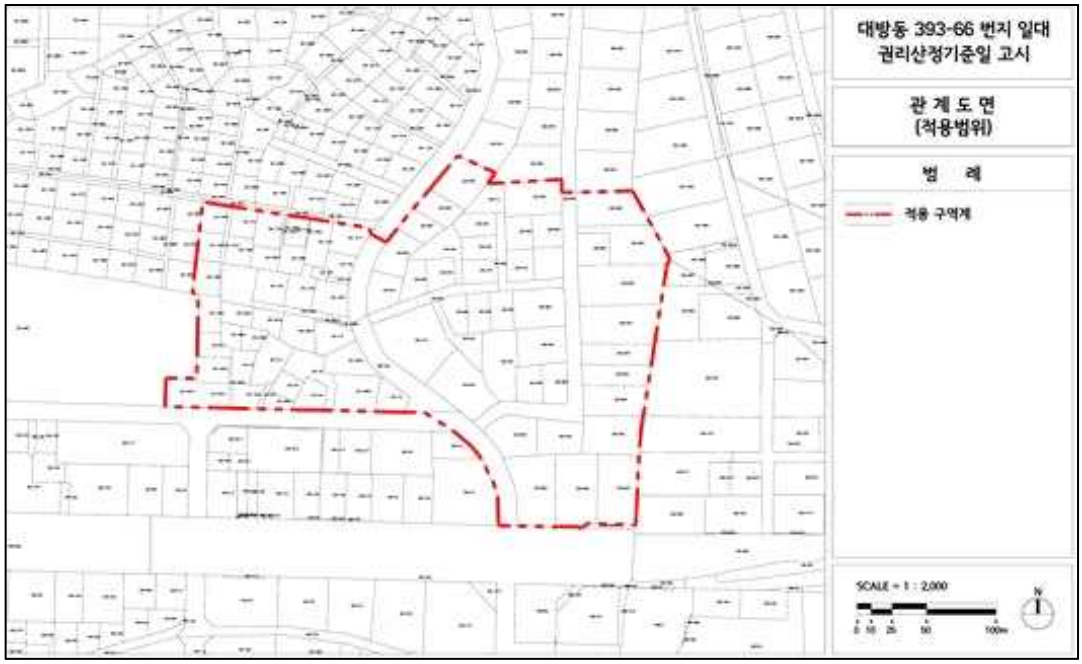

2. 동작구 남성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

3. 동작구 남성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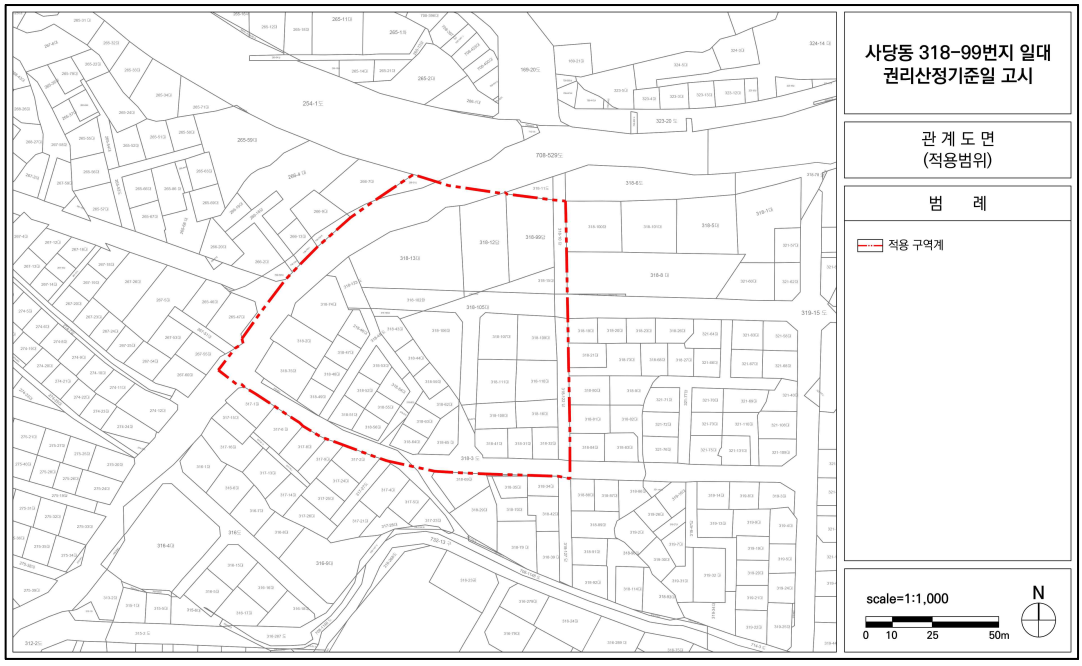

4. 동작구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5. 서초구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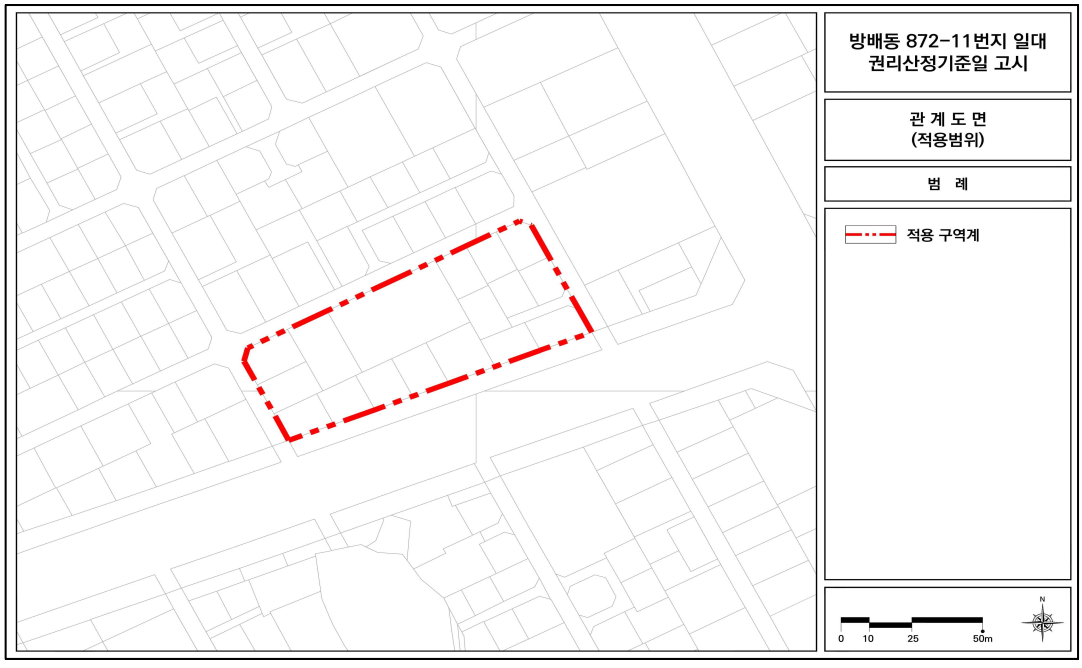

6. 관악구 봉천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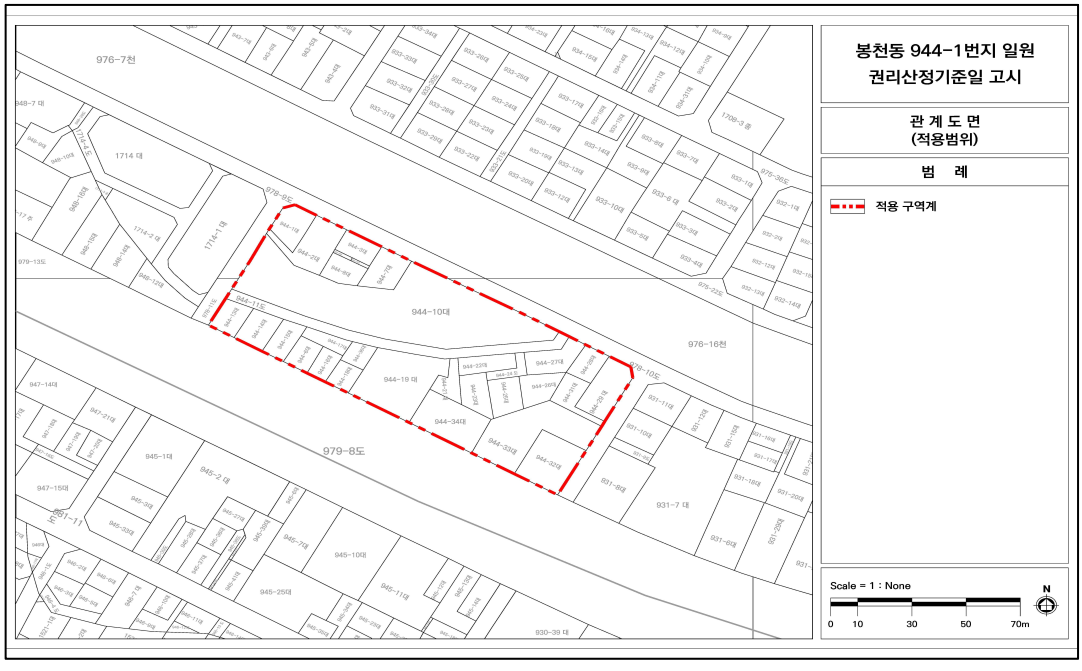

7. 관악구 봉천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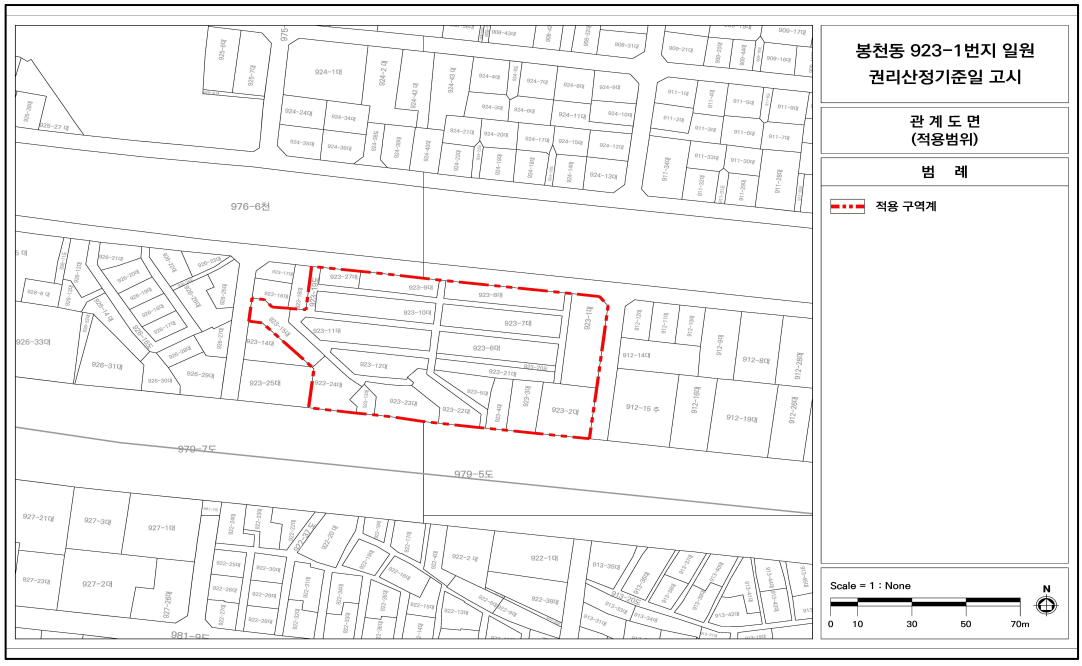

8. 서대문구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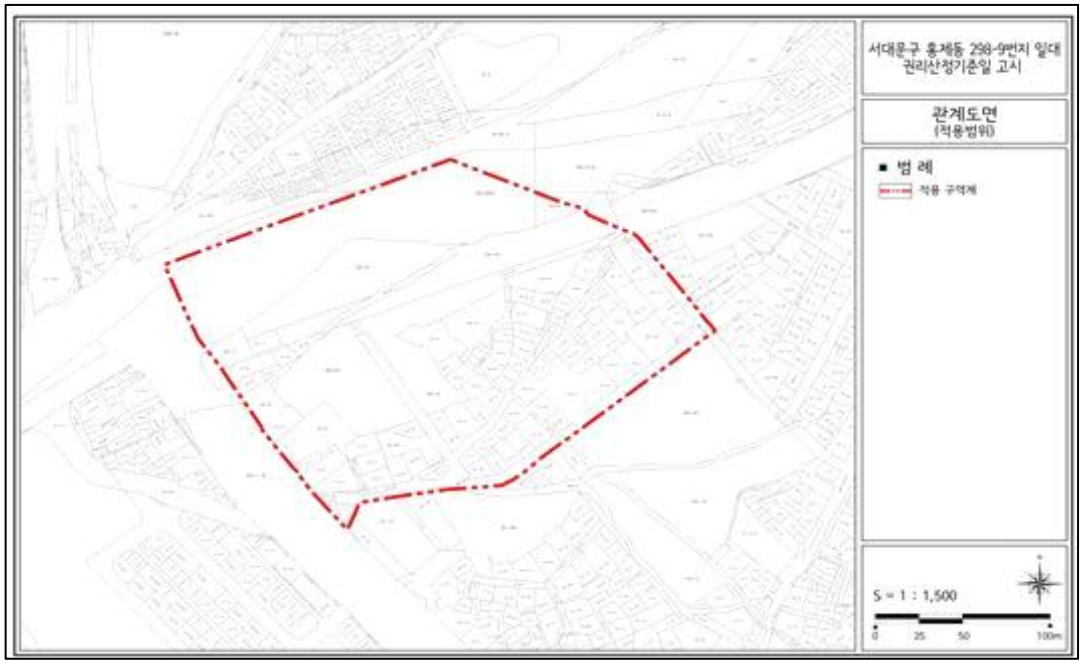

9. 양천구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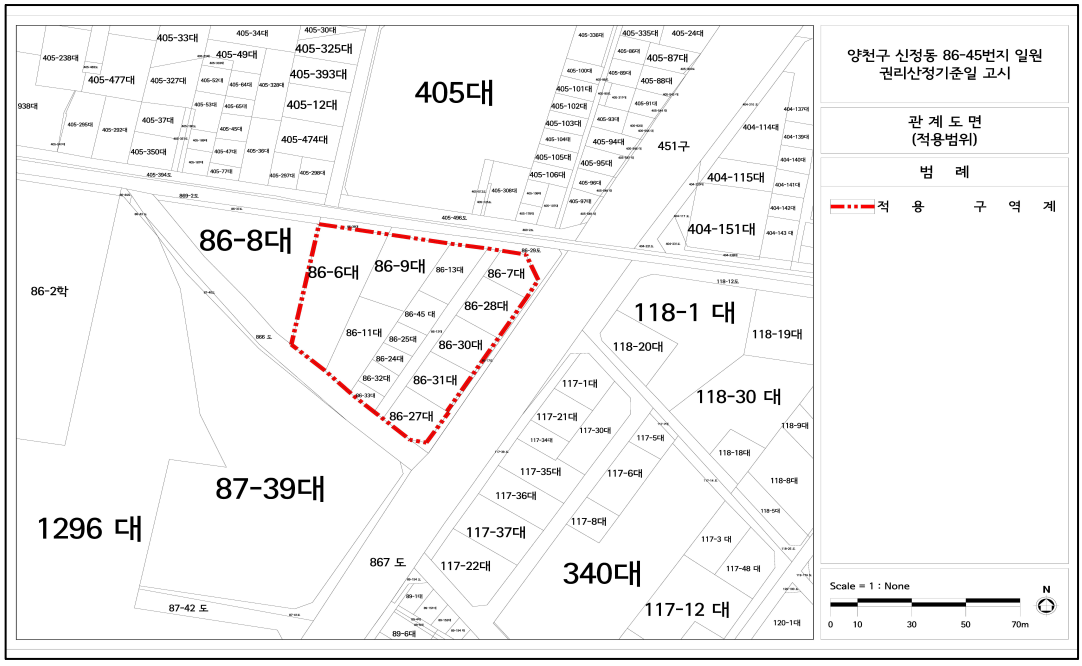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02-2133-4655) 및 동작구 도시계획과(☎02-820-9630) 및 핵심전략추진단(☎02-820-1983,1987,9325),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3),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441), 서대문구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02-330-4316), 양천구 도시계획과(☎02-2620-351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7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관악구	신원로3길	5.8~6.0	130

2. 위치도(축척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8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조성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강서구	곰달래로49길	8~9	360

2. 조성계획 :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강서구 곰달래로49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1부

[붙임 1]

곰달래로49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위치 : 곰달래로49길 (연장360m,폭 8~9m)

– 기점:곰달래로225, 종점:곰달래로49길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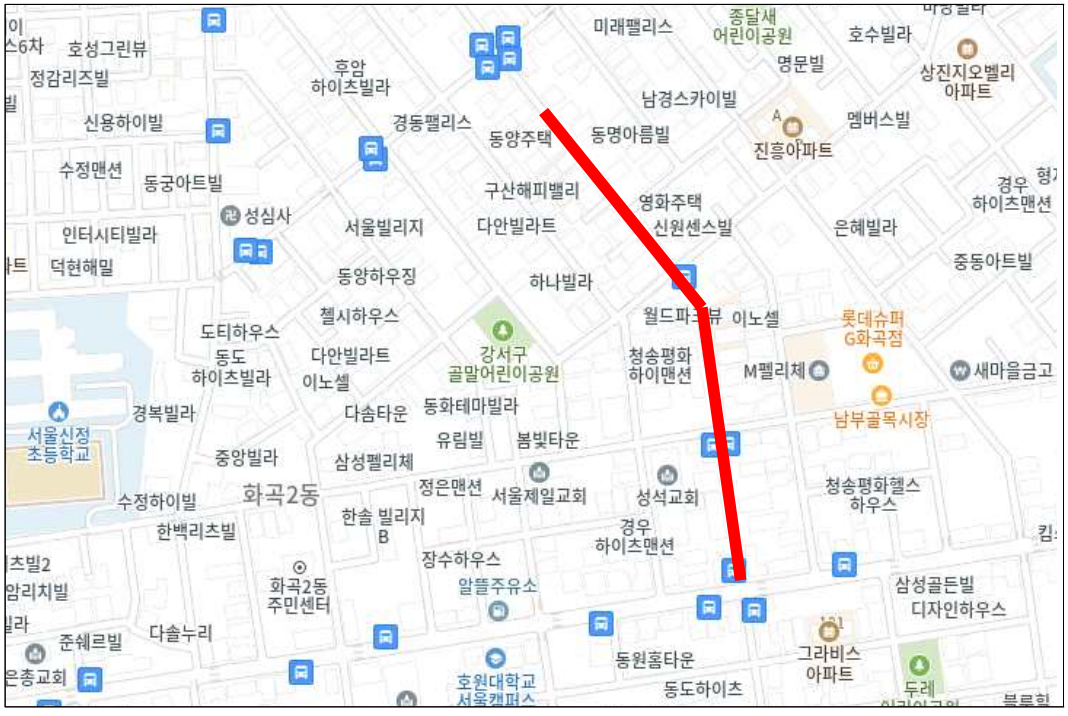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25.3.~2025.06.(4개월)

○ 사업내용

– 스텐실 포장 28a

– 지시표지 및 노면표시

○ 사 업 비 : 98백만원

○ 사업지 현황

– 폭 8~9m의 양방통행 도로이며 마을버스 및 차량통행 빈번함

– 주거지역 및 근린생활시설,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 통행 많음

□ 개선목표 및 범위

○ (만족도)안전성/편리성/쾌적성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

○ (안전성 측면)차량 감속, 보행자 우선의 도로환경으로 보행안전 확보

○ (쾌적성 측면)가로미관 향상

□ 설계안

○ 설계내용

– 보행자우선도로 교통표지판 2개소 및 노면표시 2개소 설치

– 스텐실 포장 28a 설치

○ 설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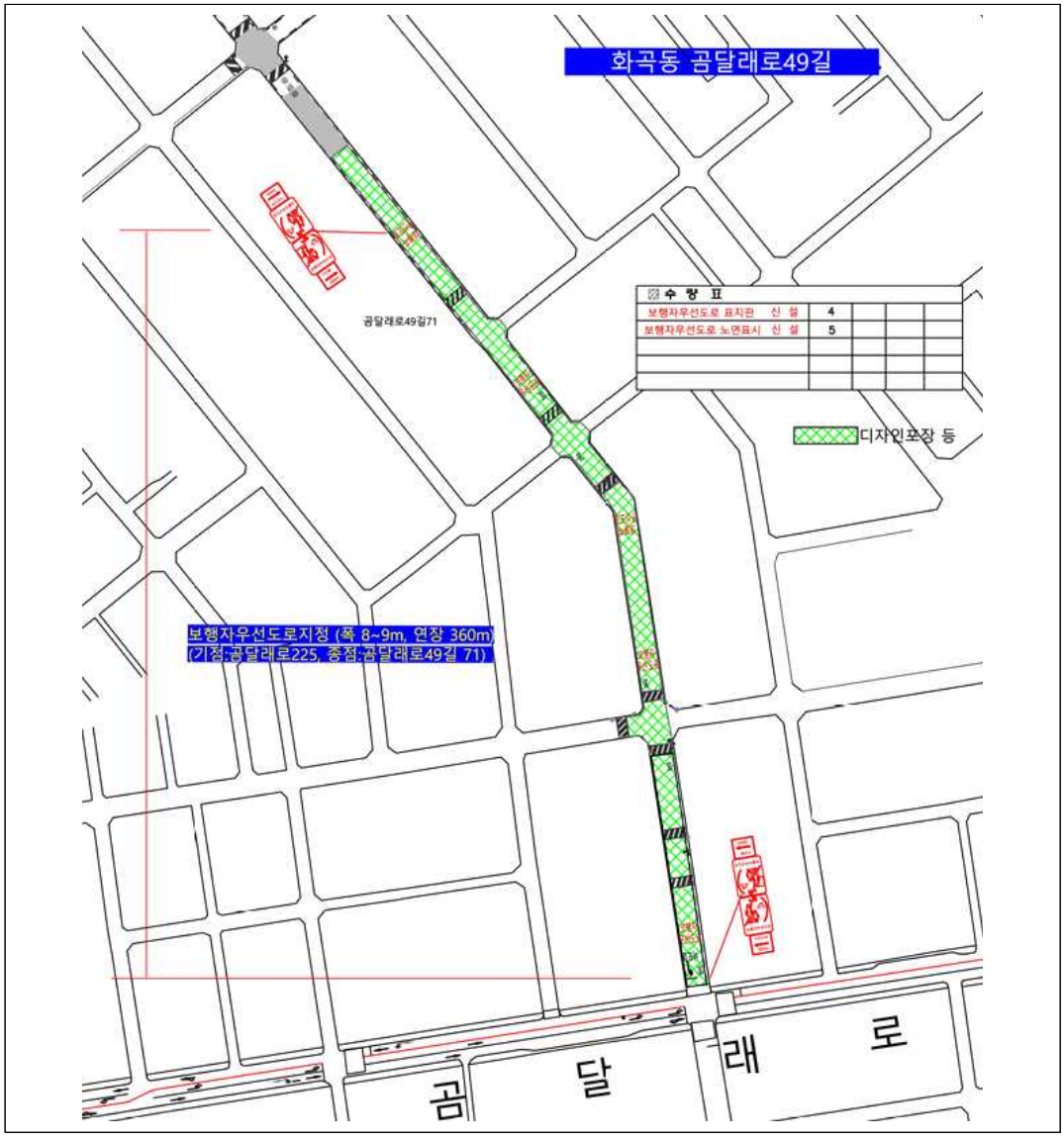

□ 시설협의 및 조치사항
○ 강서경찰서
– 협의내용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관련
– 조치사항 : 교통규제 심의 예정

□ 소요예산 및 일정
○ 소요예산 : 98백만원
– 스텐실 포장 : 97백만원
–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 1백만원
○ 일정계획
– ’25. 1.~2. : 조성계획 고시
– ’25. 3. : 착공
– ’25. 6. : 공사완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9호

마포구 염리동 85-2 외 1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마포구 염리동 85-2 외 1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 염리동 85-2 외 1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염리동 85-2 외 1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5-2외 1필지
○ 면 적 : 5,586.00㎡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22년 4월 21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칭 :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대표자 성명 : 박영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20층
(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서초사옥)
○ 법인등록번호 : 110111-8065735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가.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마포구염리동	85-1	도로	145.00	145.00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65,에이동 20층	100.0%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	수탁자
2		85-2	대	5,441.00	5,441.00						
계				5,586.00	5,586.00	-					

나.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면적(㎡)	지하(층)	지상(층)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마포구염리동	85-2	대	전신전화국 중앙전산소 (전산국사)	철근콘크리트조	1989.12.28	14,613.89	2	7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	수탁자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염리동 85-2외 1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염리동 85-2외 1필지	-	증)5,586.00	5,586.00	-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	염리동 85-2 외 1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5,586.00	•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신설)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5,586.00	-	5,586.00	10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586.00	감)5,586.00	-	-	
	준주거지역	-	증)5,586.00	5,586.00	100.0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사유
		기 정	변 경		
-	마포구 염리동 85-2 외 1필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586.00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종세분 변경

7. 관계서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9)와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02-3153-16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염리동 85-2 외 1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5-2외 1필지

○ 면 적 : 5,586.0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지하철 6호선 대흥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명칭 :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대표자 성명 : 박영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20층
(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서초사옥)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5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주택건설용지	5,586.00	100.0	임대주택
합계	5,586.00	100.0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수용계획

가. 수용인구 : 753명

나. 주택건설계획 : 499세대

구 분		세대수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SH선매입	30형	10	2.00	10	1.33	청년안심주택 건설・공급
	소계	10	2.00	10	1.33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여)	30형	44	8.82	44	5.84	
	53형	20	4.01	53	7.04	
	소계	64	12.83	97	12.8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0형	277	55.51	277	36.79	
	40형	14	2.81	14	1.86	
	53형	134	26.85	355	47.14	
	소계	425	85.17	646	85.79	
합계		499	100.00	753	10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1)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계획구역 내 생태적 연계를 위하여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을 조성하고, 다양한 조경수목 식재 및 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대상지 내 녹지네트워크 구축

2) 일조영향 검토

- 모든 예측지점에서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관련법규에 준하여 일조장해 영향 범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

3)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나. 보전대상지 설정 및 보전계획

- 조경녹지 및 옥상녹화, 녹지체계 구축 등 환경 보전계획을 통해 도심지 내 생태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계획

다. 탄소저감계획

- 저탄소 친환경 건축계획 및 주변과 조화로운 녹지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공간구성 계획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염리동 85-2 외 1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염리동 85-2외 1필지	-	증)5,586.00	5,586.00	-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	염리동 85-2 외 1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5,586.00	•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신설)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586.00	-	5,586.00	10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586.00	감)5,586.00	-	-	
	준주거지역	-	증)5,586.00	5,586.00	100.0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마포구 염리동 85-2외 1필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586.00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 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종세분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결정사유
				위치	면적(㎡)	
신설	-	-	5,586.00	마포구 염리동 85-2외 1필지	5,586.00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획지 계획을 결정(신설)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신설)

구분		용도	비고
신설	지정용도(A)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지정용도계획 수립
	불허용도(1)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 조서(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건폐율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용적률	·기본용적률 : 40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 이하[주2]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용적률의 변경
	높이	·60m 이하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20.5.26.)」을 준용하여 높이계획

※주2) 청년안심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용적률 기준 적용

(기존)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필수사항	기준	계획		비고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부지면적 558.60㎡ 이상)	① 기본공공기여 : 559.01㎡ (10.01%) -공공임대주택 : 78.53㎡ (1.41%)7세대 -공공시설(기부채납) : 480.48㎡ (8.60%) 대지지분 264.83㎡ + 환산부지 215.65㎡	③ 총 499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64세대 공	모든 항목을 충족 할 경우 기본용적률

필수사항		기준	계획		비고
		• 완화용적률(98.73%)의 50%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 5,586.00㎡×93.32%×50% = 2,606.34㎡ 이상 (46.66%)	② 추가공공기여 : 48.90%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2,731.73㎡(48.90%) : 57세대	공기여	400% 상한용적률법 정이하 부여
주거·비주거비율		•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85% 이상	• 주거 : 비주거 (90.56% : 9.44%)		
주택 건설 기준	주택규모	• 전용면적 : 18㎡~60㎡ 내외 • 세대유형별 세대수 비율 : 1인세대 규모(셰어형 포함, 18㎡ 이상)와 2인이상 규모(36㎡이상) 설치비율 7:3으로 계획	• 공공임대주택 : 총 64세대 -30형(44세대), 53형(20세대) • SH공사 선매입 : 총 10세대 -30형(10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총 425세대 -30형(277세대), 40형(14세대), 53형(134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 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 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커뮤니티 시설		• 「청년주택 운영기준」 3-3-8 4) 364호 이상 : (전체 건립호-299호) × 2.5 × 1.25	• 법적기준 : 625.00㎡ • 계획면적 : 1,608.42㎡ -계절창고, 무인택배보관소, 멀티룸, 코인세탁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입주민 회의실, 다목적공간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변경)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필수사항		기준	계획		비고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부지면적 558.60㎡ 이상)	① 기본공공기여 : 586.92㎡ (10.51%) -공공임대주택 : 78.87㎡ (1.41%)7세대 -공공시설(기부채납) : 508.05㎡ (9.10%) 대지지분 281.84㎡ + 환산부지 226.21㎡	③ 총 499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64세대 공공기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할 경우 기본용적률 400% 상한용적률법 정이하 부여
		• 완화용적률(92.24%)의 50%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 5,586.00㎡×92.24%×50% = 2,576.26㎡ 이상 (46.12%)	② 추가공공기여 : 48.90%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2,731.73㎡(48.90%) : 57세대		
주거·비주거비율		•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85% 이상	• 주거 : 비주거 (90.98% : 9.02%)		
주택 건설 기준	주택규모	• 전용면적 : 18㎡~60㎡ 내외 • 세대유형별 세대수 비율 : 1인세대 규모(셰어형 포함, 18㎡ 이상)와 2인이상 규모(36㎡이상) 설치비율 7:3으로 계획	• 공공임대주택 : 총 64세대 -30형(44세대), 53형(20세대) • SH공사 선매입 : 총 10세대 -30형(10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총 425세대 -30형(277세대), 40형(14세대), 53형(134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 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 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필수사항	기준	계획	비고
커뮤니티 시설	• 「청년주택 운영기준」 3-3-8 4) 364호 이상 : (전체 건립호-299호) X 2.5 X 1.25	• 법적기준 : 625.00㎡ • 계획면적 : 1,686.48㎡ -계절창고, 무인택배보관소, 멀티룸, 코인세탁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입주민 회의실, 다목적공간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3) 건축물의 배치등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적용구역	결정사유
신설	건축한계선	• 승문길 : 3m • 백범로21길 : 3m • 승문5길변 : 1.5m 이상	보행자의 개방감과 보행편의를 위하여 인접가로의 폭, 특성과 관련하여 건폐율·용적률·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고자 함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승문길, 백범로21길 : 건축한계선 3m • 승문5길변 : 건축한계선 1.5m 이상	차도부속형(보행용)

(기존)(2)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기부채납 면적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기본용적률(부지면적)	400% 이하	• 부지면적 기준 10% 이상 (부지면적 558.60㎡ 이상)	• 기본공공기여 : 559.01㎡ (10.01%) -공공임대주택 : 78.53㎡ (1.41%) : 7세대 -공공시설(기부채납) : 480.48㎡ (8.60%) 대지지분 264.83㎡ + 환산부지 215.65㎡	총 499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64세대 계획
	상한용적률(지상층 연면적)	법정 이하	• 기본용적률에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 (5,586.00㎡×93.32%×50%) (지상층 연면적 2,606.34㎡ 이상)	•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 2,731.73㎡(57세대)	
공공시설		-	• 지상2층 염리동 주민센터 조성 후 기부채납	• 연면적 1,482.37㎡	-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 상기 계획사항은 관련 지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변경)(2)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기부채납 면적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기본용적률(부지면적)	400% 이하	• 부지면적 기준 10% 이상 (부지면적 558.60㎡ 이상)	• 기본공공기여 : 586.92㎡ (10.51%) -공공임대주택 : 78.87㎡ (1.41%)	총 499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구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기부채납 면적	세대수
				: 7세대 -공공시설(기부채납) : 508.05㎡ (9.10%) 대지지분 281.84㎡ + 환산부지 226.21㎡	64세대 계획
	상한용적률 (지상층 연면적)	법정 이하	• 기본용적률에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 (5,586.00㎡×92.24%×50%) (지상층 연면적 2,576.26㎡ 이상)	•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 2,731.73㎡(57세대)	
공공시설		-	• 지상2층 염리동 주민센터 조성 후 기부채납	• 연면적 1,575.46㎡	-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 상기 계획사항은 관련 지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방재계획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참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 해당없음

가.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마포구염리동	85-1	도로	145.00	145.00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65,에이동 20층	100.0%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	수탁자
2		85-2	대	5,441.00	5,441.00						
계				5,586.00	5,586.00	-					

나.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마포구염리동	85-2	대	전신전화국 중앙전산소 (전산국사)	철근 콘크리트조	1989.12.28	14,613.89	2	7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	수탁자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기존)가.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면적(㎡)	비고
공공시설	염리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지상2층	1,482.37㎡	마포구에 기부채납

※ 공공시설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자치구(마포구)에 기부채납
- 공공시설 세부계획(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시설은 감정평가 후 편적확정

(변경)가.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면적(㎡)	비고
공공시설	염리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지상1,2층	1,575.46㎡	마포구에 기부채납

※ 공공시설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자치구(마포구)에 기부채납
- 공공시설 세부계획(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시설은 감정평가 후 편적확정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공급면적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면적(㎡)	구성비(%)			
합 계	5,586.00	100.00	-	-	-
주택건설용지	5,586.00	100.00	자체사용	승인 후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	-	-	-	-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 : 도서참조

Ⅲ. 관계도면 : [붙임]

[붙임] : 관계도면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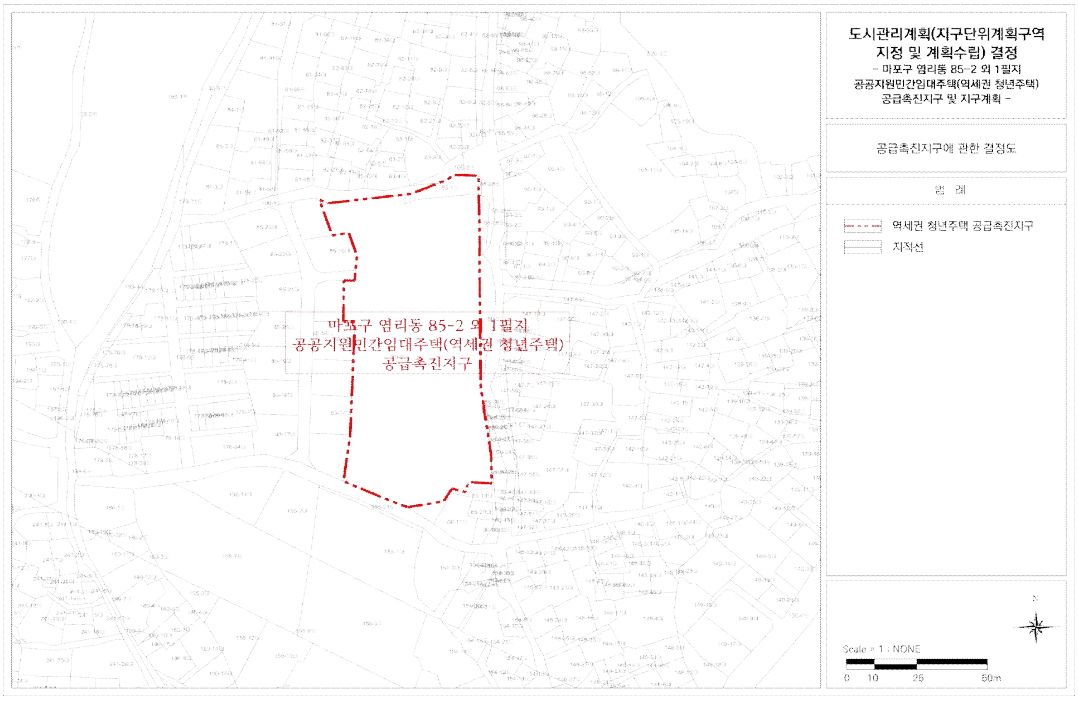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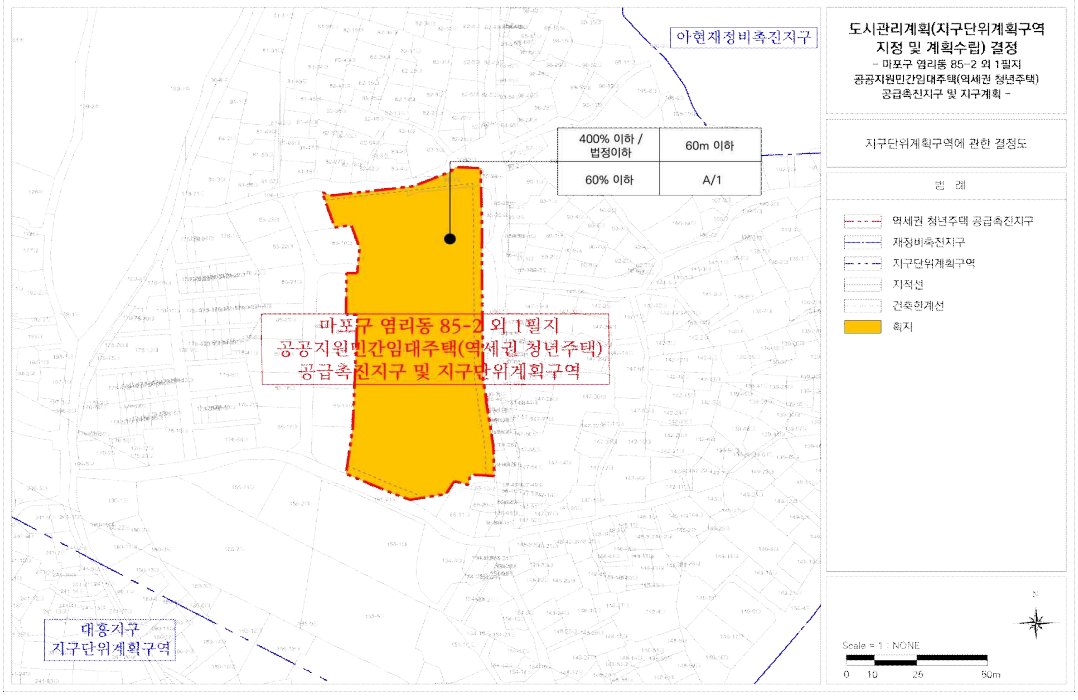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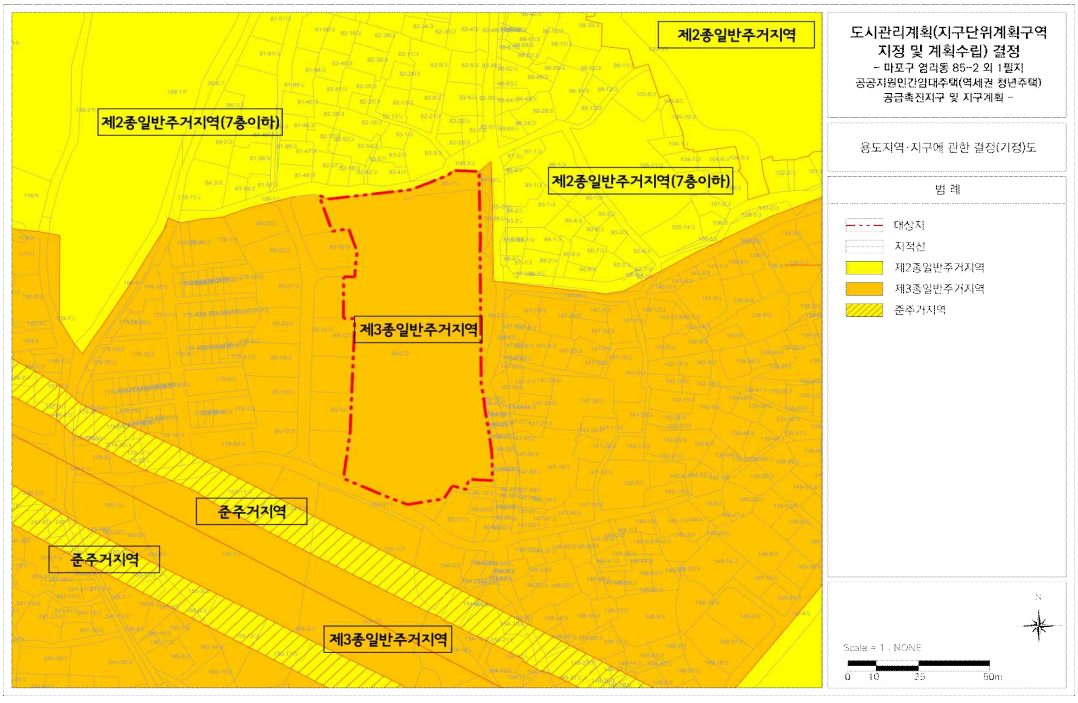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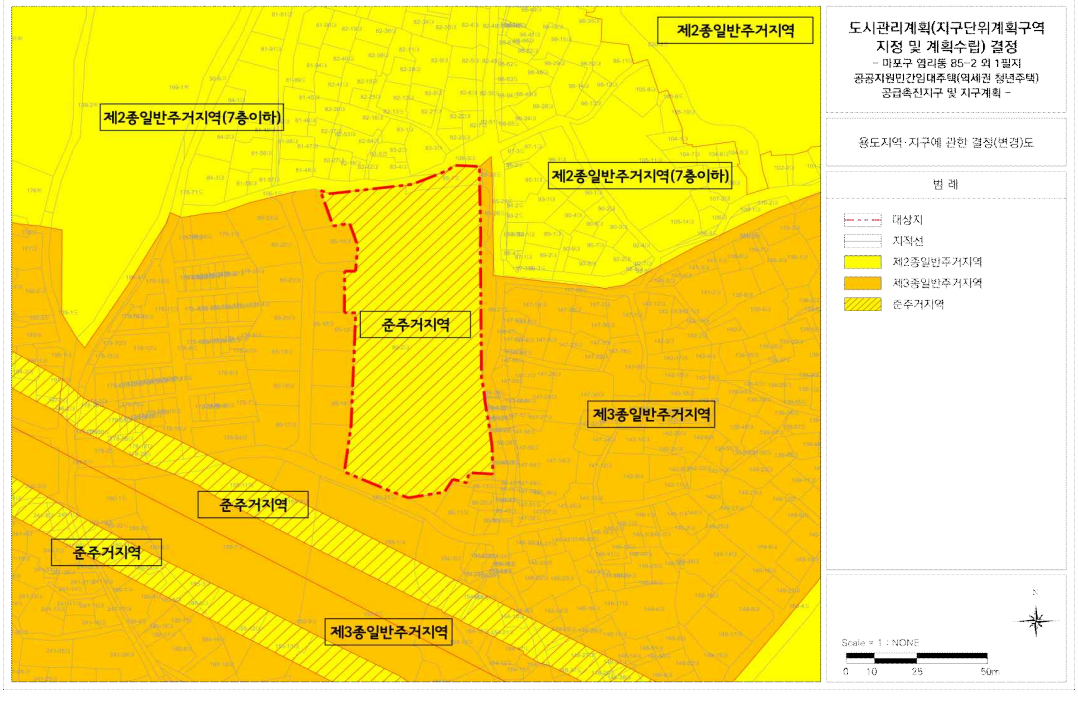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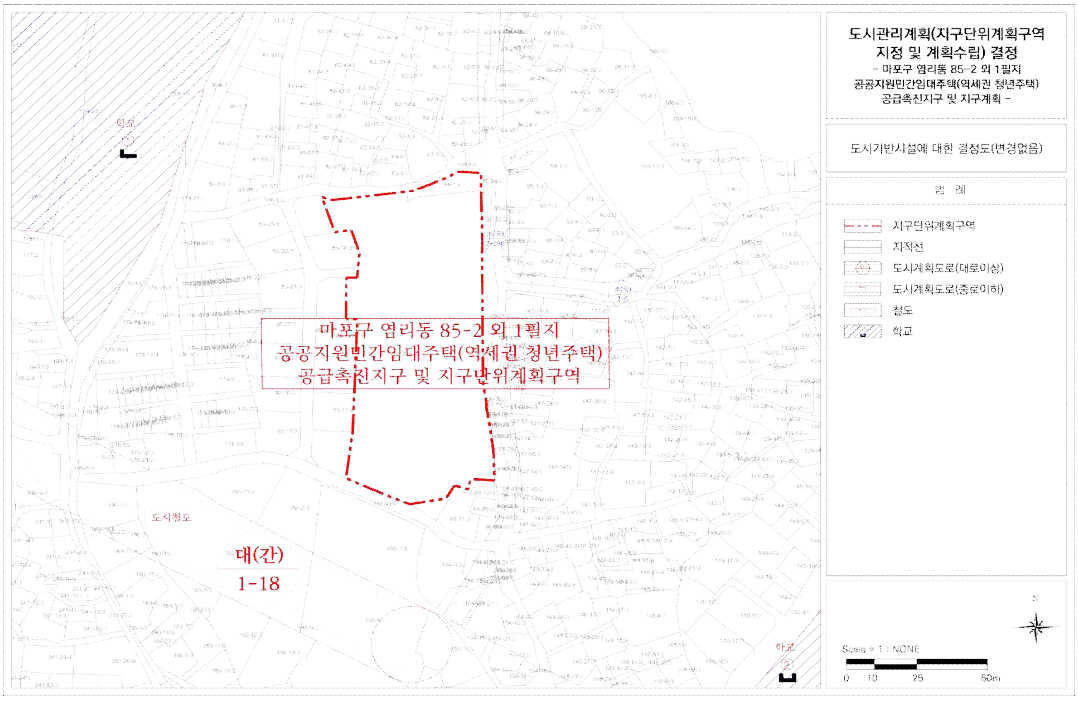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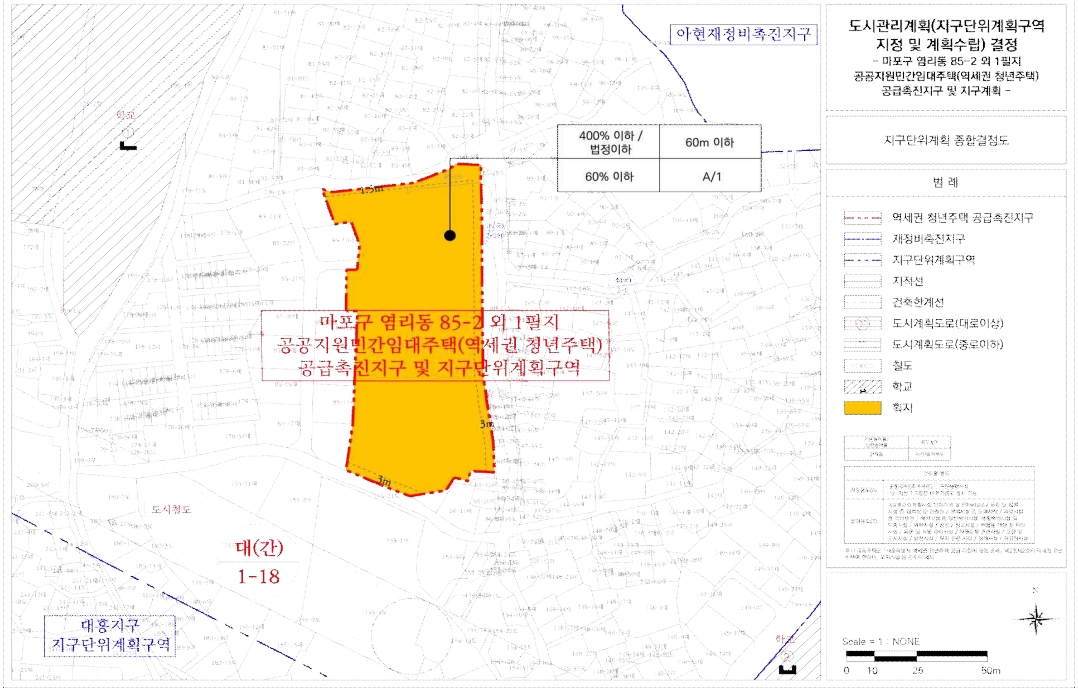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9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24.01.11.)에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9호(’ 24.01.12.)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7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금천구	뉴독산구역	독산동 1072번지 일대	81,663	·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독산동 1072번지 일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	금천구	독산2구역	독산동 1072번지 일대	86,184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	2023. 12. 19.	81,663	·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	2023. 12. 19.(기존구역) 2024. 02. 04.(추가구역)	86,184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9) 또는 금천구 주거정비과(☎02-2627-18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업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독산동 1072번지 일대(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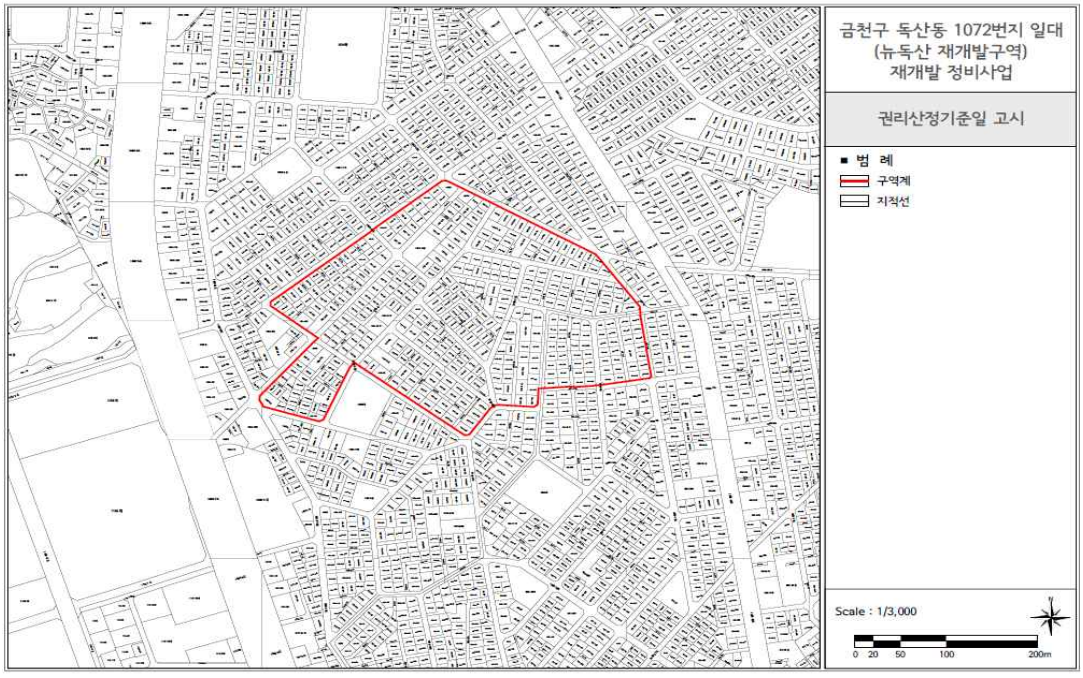

○ 독산동 1072번지 일대(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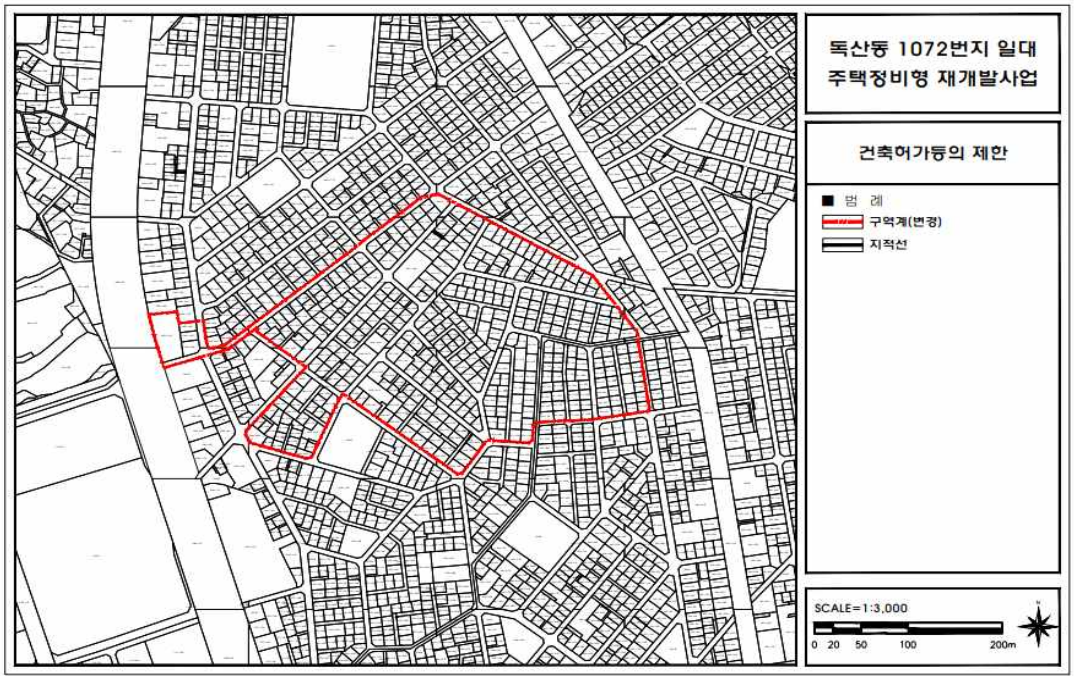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91호

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내무부 고시 제413호(1958.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36호(2024.12.26.)로 공원 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용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용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조성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산1-4 일대(용마산근린공원)
3. 공원면적 : 866,067.60㎡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7) 및 중랑구 공원녹지과(☎02-2094-235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용마산근린공원 총괄표 (위치 : 광진구 중곡4동 176-110일대, 중랑구 망우동 산69-482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866,067.60	277,265.74	39	11,022.00	22,439.80	675	866,067.60	277,842.55	40	11,303.35	22,766.52	678	바닥면적 증 : 281.35㎡ 연면적 증 : 326.72㎡
공원시설지구	소계	866,067.60	277,265.74	39	11,022.00	22,439.80	675	866,067.60	277,842.58	40	11,303.35	22,766.52	678	
	1지구	318,449.60	109,689.33	18	7,578.50	15,575.50	152	318,449.60	109,689.33	18	7,578.50	15,575.50	152	
	2지구	70,709.30	24,283.68	2	1,452.00	4,876.00	44	70,709.30	24,283.68	2	1,452.00	4,876.00	44	
	3지구	199,712.30	44,664.49	8	1,216.14	1,110.36	301	199,712.30	45,241.33	9	1,497.49	1,437.08	304	바닥면적 증 : 281.35㎡ 연면적 증 : 326.72㎡
	4지구	15,283.80	7,566.61	-	-	-	6	15,283.80	7,566.61	-	-	-	6	
	5지구	39,077.00	13,966.66	2	144.48	122.44	25	39,077.00	13,966.66	2	144.48	122.44	25	
	6지구	148,569.50	46,952.22	9	630.88	755.50	99	148,569.50	46,952.22	9	630.88	755.50	99	
	7지구	74,266.10	30,142.75	-	-	-	48	74,266.10	30,142.75	-	-	-	48	
시 설 율 (법정 40%)		277,265.74 / 866,067.60 = 32.01%						277,842.55 / 866,067.60 = 32.08%						
건 폐 율 (법정 10%)		11,022.00 / 866,067.60 = 1.27%						11,303.35 / 866,067.60 = 1.31%						

1-1. 용마산근린공원 1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69-482, 망우지구, 구 보육원지구, 서일대지구, 배밭지구)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18,449.60	109,689.33	18	7,578.50	15,575.50	152	318,449.60	109,689.33	18	7,578.50	15,575.50	152	
기반시설	소계	33,391.61	32,326.71	-	-	-	-	33,391.61	32,326.71	-	-	-	-	
	도로	27,367.39	26,302.49 (1,064.9)	-	-	-	-	27,367.39	26,302.49 (1,064.9)	-	-	-	-	
	광장	6,024.22	6,024.22	-	-	-	-	6,024.22	6,024.22	-	-	-	-	
조경시설		31,640.13	31,640.13	-	-	-	12	31,640.13	31,640.13	-	-	-	12	
휴양시설		11,252.80	11,252.80	1	120.00	120.00	66	11,252.80	11,252.80	1	120.00	120.00	66	
유희시설		606.85	606.85	-	-	-	2	606.85	606.85	-	-	-	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9,875.01	9,875.01	1	375.00	450.00	46	9,875.01	9,875.01	1	375.00	450.00	46	
교양시설	4,534.31	4,534.31	3	3,969.00	11,358.00	4	4,534.31	4,534.31	3	3,969.00	11,358.00	4	
편익시설	12,469.24	12,469.24	8	2,348.00	2,510.00	-	12,469.24	12,469.24	8	2,348.00	2,510.00	-	
관리시설	837.50	837.50	5	766.50	1,137.50	16	837.50	837.50	5	766.50	1,137.50	16	
도시농업시설	6,146.78	6,146.78	-	-	-	6	6,146.78	6,146.78	-	-	-	6	
녹지 및 기타	207,695.37	-	-	-	-	-	207,695.37	-	-	-	-	-	

2-1. 용마산근린공원 2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46.5, 면목약수터지구)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70,709.30	24,283.68	2	1,452.00	4,876.00	44	70,709.30	24,283.68	2	1,452.00	4,876.00	44	
기반시설	소계	5,728.35	5,728.35	-	-	-	-	5,728.35	5,728.35	-	-	-	-	
	도로	4,962.18	4,962.18	-	-	-	-	4,962.18	4,962.18	-	-	-	-	
	광장	766.17	766.17	-	-	-	-	766.17	766.17	-	-	-	-	
조경시설		10,955.47	10,955.47	-	-	-	-	10,955.47	10,955.47	-	-	-	-	
휴양시설		625.75	625.75	-	-	-	27	625.75	625.75	-	-	-	27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유희시설	325.99	325.99	-	-	-	9	325.99	325.99	-	-	-	9	
운동시설	5,578.69	5,578.69	1	1,371.00	4,795.00	8	5,578.69	5,578.69	1	1,371.00	4,795.00	8	
교양시설	772.07	772.07	-	-	-	-	772.07	772.07	-	-	-	-	
편익시설	297.36	297.36	1	81.00	81.00	-	297.36	297.36	1	81.00	81.00	-	
녹지 및 기타	46,425.62	-	-	-	-	-	46,425.62	-	-	-	-	-	

3-1. 용마산근린공원 3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1-4, 채석장지구)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99,712.30	44,664.49	8	1,216.14	1,110.36	301	199,712.30	45,241.33	9	1,497.49	1,437.08	304	
기반시설	소계	13,927.43	13,927.43	-	-	-	-	13,803.27	13,803.27	-	-	-	-	
	도로	8,968.93	8,968.93	-	-	-	-	8,844.77	8,844.77	-	-	-	-	감 124.16㎡
	광장	4,958.50	4,958.50	-	-	-	-	4,958.50	4,958.50	-	-	-	-	
조경시설		7,153.06	7,153.06	-	-	-	17	7,153.06	7,153.06	-	-	-	17	
휴양시설		2,408.50	2,408.50	-	-	-	119	2,340.50	2,340.50	-	-	-	114	감 68.0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유희시설	1,852.50	1,852.50	-	-	-	11	1,852.50	1,852.50	-	-	-	11	
운동시설	16,763.10	16,763.10	1	466.24	360.46	26	16,763.10	16,763.10	1	466.24	360.46	26	
교양시설	-	-	-	-	-	-	769.00	769.00	1	281.35	326.72	8	증 769.00㎡
편익시설	1,847.80	1,847.80	2	113.80	113.80	5	1,847.80	1,847.80	2	113.80	113.80	5	
관리시설	712.10	712.10	5	636.10	636.10	123	712.10	712.10	5	636.10	636.10	123	
녹지 및 기타	155,047.81	-	-	-	-	-	154,470.97	-	-	-	-	-	감 576.84㎡

3-2. 용마산근린공원 3지구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99,712.30	44,664.49	-	7	749.90	749.90	301			199,712.30	45,241.33	-	8	1,497.49	1,473.08	304	바닥면적 : 증 281.35㎡ 연면적 : 증 362.72㎡
기반시설	소 계			13,927.43	13,927.43	-	-	-	-	-			13,803.27	13,803.27	-	-	-	-	-	감 124.16㎡
	도 로			8,968.93	8,968.93	-	-	-	-	-			8,844.77	8,844.77	-	-	-	-	-	감 124.16㎡
	광장	가	5개소	4,958.50	4,958.50	-	-	-	-	-	가	5개소	4,958.50	4,958.50	-	-	-	-	-	
	광장 1	가-1	면목산 1-4	1,406.50	1,406.50	-	-	-	-	-	가-1	면목산 1-4	1,406.50	1,406.50	-	-	-	-	-	
	광장 2	가-2	면목산 1-4	688.00	688.00	-	-	-	-	-	가-2	면목산 1-4	688.00	688.00	-	-	-	-	-	
	광장 3	가-3	면목산 1-4	693.00	693.00	-	-	-	-	-	가-3	면목산 1-4	693.00	693.00	-	-	-	-	-	
	광장 4	가-4	면목산 1-4	1,528.00	1,528.00	-	-	-	-	-	가-4	면목산 1-4	1,528.00	1,528.00	-	-	-	-	-	
	광장 5	가-5	면목산 1-4	643.00	643.00	-	-	-	-	-	가-5	면목산 1-4	643.00	643.00	-	-	-	-	-	
조경시설	소 계			7,153.06	7,153.06	-	-	-	-	17			7,153.06	7,153.06	-	-	-	-	1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인공폭포	나-1	면목산 1-4	2,853.00	2,853.00	-	-	-	-	-	나-1	면목산 1-4	2,853.00	2,853.00	-	-	-	-	-	
	계단	나-2	면목산 1-4	69.00	69.00	-	-	-	-	-	나-2	면목산 1-4	69.00	69.00	-	-	-	-	-	
	사각파고라	①	면목산 1-4	-	-	-	-	-	-	6	①	면목산 1-4	-	-	-	-	-	-	6	
	파고라	②	면목산 1-4	-	-	-	-	-	-	3	②	면목산 1-4	-	-	-	-	-	-	3	
	팔각정자	③	면목산 1-4	-	-	-	-	-	-	2	③	면목산 1-4	-	-	-	-	-	-	2	
	등나무파고라	④	면목산 1-4	-	-	-	-	-	-	1	④	면목산 1-4	-	-	-	-	-	-	1	
	야외탁자	⑤	면목산 1-4	-	-	-	-	-	-	3	⑤	면목산 1-4	-	-	-	-	-	-	3	
	원형야외탁자	⑥	면목산 1-4	-	-	-	-	-	-	1	⑥	면목산 1-4	-	-	-	-	-	-	1	
	야외테이블	⑦	면목산 1-4	-	-	-	-	-	-	1	⑦	면목산 1-4	-	-	-	-	-	-	1	
	초화원	다	면목동 산73-2	4,231.06	4,231.06	-	-	-	-	-	다	면목동 산73-2	4,231.06	4,231.06	-	-	-	-	-	
휴양	소 계			2,408.50	2,408.50	-	-	-	-	119			2,340.50	2,340.50	-	-	-	-	119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설 휴게 쉼터	등의자		-	-	-	-	-	-	119							-	-	119	
	라	9개소	2,408.50	2,408.50	-	-	-	-	-	라	9개소	2,340.50	2,340.50	-	-	-	-	-	감 68.00㎡
	라-1	면목동 산 1-4	(207.00)	(207.00)	-	-	-	-	-	라-1	면목동 산 1-4	(207.00)	(207.00)	-	-	-	-	-	
	라-2	면목동 산 1-4	(1,135.00)	(1,135.00)	-	-	-	-	-	라-2	면목동 산 1-4	(1,067.00)	(1,067.00)	-	-	-	-	-	감 68.00㎡
	라-3	면목동 산 1-4	(827.00)	(827.00)	-	-	-	-	-	라-3	면목동 산 1-4	(827.00)	(827.00)	-	-	-	-	-	
	라-4	면목동 산 1-4	(37.00)	(37.00)	-	-	-	-	-	라-4	면목동 산 1-4	(37.00)	(37.00)	-	-	-	-	-	
	라-5	면목동 산 1-4	(37.00)	(37.00)	-	-	-	-	-	라-5	면목동 산 1-4	(37.00)	(37.00)	-	-	-	-	-	
	라-6	면목동 산 1-4	(56.00)	(56.00)	-	-	-	-	-	라-6	면목동 산 1-4	(56.00)	(56.00)	-	-	-	-	-	
	라-7	면목동 산 1-4	(15.50)	(15.50)	-	-	-	-	-	라-7	면목동 산 1-4	(15.50)	(15.50)	-	-	-	-	-	
	라-8	면목동 산 1-4	(49.70)	(49.70)	-	-	-	-	-	라-8	면목동 산 1-4	(49.70)	(49.70)	-	-	-	-	-	
	라-9	면목동 산 1-4	(44.30)	(44.30)	-	-	-	-	-	라-9	면목동 산 1-4	(44.30)	(44.30)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변경 사항 없음	소계			1,852.50	1,852.50	-	-	-	-	11			1,852.50	1,852.50	-	-	-	-	11	
	어린이 놀이터	마	면목동 산 1-4	1,852.50	1,852.50	-	-	-	-	-	마	면목동 산 1-4	1,852.50	1,852.50	-	-	-	-	-	
	조합 놀이대			-	-	-	-	-	-	1			-	-	-	-	-	-	1	
	사이소			-	-	-	-	-	-	3			-	-	-	-	-	-	3	
	그네			-	-	-	-	-	-	1			-	-	-	-	-	-	1	
	오름봉			-	-	-	-	-	-	1			-	-	-	-	-	-	1	
	모험 놀이대			-	-	-	-	-	-	1			-	-	-	-	-	-	1	
	유아 조합 놀이대			-	-	-	-	-	-	1			-	-	-	-	-	-	1	
	흔들 놀이 시설			-	-	-	-	-	-	3			-	-	-	-	-	-	3	
	소계			16,763.10	16,763.10	-	-	-	-	26			16,763.10	16,763.10	-	1	466.24	360.45	2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평행봉			-	-	-	-	-	-	4			-	-	-	-	-	-	4	
철봉			-	-	-	-	-	-	4			-	-	-	-	-	-	4	
상하체 들어 올리기			-	-	-	-	-	-	2			-	-	-	-	-	-	2	
체력단련 시설			-	-	-	-	-	-	16			-	-	-	-	-	-	16	
육상장	머	면목산 1-4	3,003.04	3,003.04	-	-	-	-	-	바	면목산 1-4	2,536.8	2,536.8	-	-	-	-	-	
베드민턴장	바	면목산 1-4	657.80	657.80	-	-	-	-	-	사	면목산 1-4	657.80	657.80	-	-	-	-	-	
게이트볼장	사	면목산 1-4	352.40	352.40	-	-	-	-	-	아	면목산 1-4	352.40	352.40	-	-	-	-	-	
테니스장	아	면목산 1-4	1,681.00	1,681.00	-	-	-	-	-	자	면목산 1-4	1,681.00	1,681.00	-	-	-	-	-	
축구장	자	면목산 1-4	8,649.00	8,649.00	-	-	-	-	-	차	면목산 1-4	8,649.00	8,649.00	-	-	-	-	-	
소운동장	차	면목산 1-4	1,521.00	1,521.00	-	-	-	-	-	카	면목산 1-4	1,521.00	1,521.00	-	-	-	-	-	
다목적 운동장	카	면목산 1-4	898.83	898.83	-	-	-	-	-	타	면목산 1-4	898.83	898.83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인공암벽장			–	–						타-1	면목산 1-4	466.24	466.24	철골조	1	466.24	360.45	–	–
	소계												769.0	769.0		1	281.35	362.72	8	증 769.00㎡
	책쉼터										라	면목산 1-4	769.00	769.00	철골조	1	281.35	326.72	–	증 769.00㎡
교육시설	화분										⑪	면목산 1-4	–	–	–	–	–	–	3	
	독서용 테이블										⑫	면목산 1-4	–	–	–	–	–	–	3	
	앉음벽										⑬	면목산 1-4	–	–	–	–	–	–	1	
	철재난간										⑭	면목산 1-4	–	–	–	–	–	–	1	
편의시설	소계			1,847.80	1,847.80	–	2	113.80	113.80	5			1,847.80	1,847.80	–	2	113.80	113.80	5	
	주차장	타	면목산 1-4	1,734.00	1,734.00	–	–	–	–	–	파	면목산 1-4	1,734.00	1,734.00	–	–	–	–	–	
	화장실	파	면목산 1-4	113.80	113.80	–	2	113.80	113.80	–	하	면목산 1-4	113.80	113.80	–	2	113.80	113.80	–	
	음수장	⑧	면목산 1-4	–	–	–	–	–	–	3	⑧	면목산 1-4	–	–	–	–	–	–	3	
	대기실	⑨	면목산 1-4	–	–	–	–	–	–	2	⑨	면목산 1-4	–	–	–	–	–	–	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계	712.10	712.10	-	5	636.10	636.10	123			712.10	712.10	-	5	636.10	636.10	123	
	하	면목산 1-4	220.30	220.30	-	1	220.30	220.30	-	거	면목산 1-4	220.30	220.30	-	1	220.30	220.30	-	
		관리사무소																	
		쓰레기통	(35.00)	-	-	-	-	-	35			(35.00)	-	-	-	-	-	35	
		위험표지판	(1.00)	-	-	-	-	-	3			(1.00)	-	-	-	-	-	3	
		방향표지판	(3.00)	-	-	-	-	-	3			(3.00)	-	-	-	-	-	3	
		종합안내판	(1.00)	-	-	-	-	-	2			(1.00)	-	-	-	-	-	2	
		쓰레기처리장	(7.50)	-	-	-	-	-	1			(7.50)	-	-	-	-	-	1	
		볼라드	(4.00)	-	-	-	-	-	4			(4.00)	-	-	-	-	-	4	
		공원등	(68.00)	-	-	-	-	-	73			(68.00)	-	-	-	-	-	73	
	거	면목산 1-4	224.80	224.80	-	2	224.80	224.80	-	너	면목산 1-4	224.80	224.80	-	2	224.80	224.80	-	
		배수지관리동																	
	너	면목산 1-4	191.00	191.00	-	2	191.00	191.00	-	더	면목산 1-4	191.00	191.00	-	2	191.00	191.00	-	
		배전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공간	공원정비 보관함	더	면목산 1-4	76.00	76.00	-	-	-	-	-		러	면목산 1-4	76.00	76.00	-	-	-	-	2		
		⑩		-	-	-	-	-	-	2		⑩		-	-	-	-	-	-	2		
녹지 및 기타	소계			155,047.81	-	-	-	-	-	-				154,470.97	-	-	-	-	-	-		감 576.84㎡
	녹지			155,047.81	-	-	-	-	-	-				154,470.97	-	-	-	-	-	-		감 576.84㎡

3-3. 용마산근린공원 3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2,014.85	8,968.93				
변 경	합 계				1,996.49	8,844.77				감 124.16㎡
당 초	소 로	계			1,926.21	8,862.62				
변 경		계			1,907.85	8,738.46				감 124.16㎡
당 초		2류	1	5.5~12.5	155.73	1,229.57	진입로	녹지대	소로 3-17	
당 초		3류	1	3.5~11.0	54.30	412.25	연결로	소로 2-1	휴게쉼터 다-1	
당 초		3류	2	2.35	407.90	988.47	산책로	소로 3-2	소로 3-2	
당 초		3류	3	4.5~5.5	43.40	211.27	연결로	주차장 타	소로 3-2	
당 초		3류	4	3.0~4.0	71.04	298.42	연결로	소로 3-6	주차장 타	
당 초		3류	5	5.0	14.25	70.51	연결로	소로 3-4	소로 3-2	
당 초		3류	6	4.0~11.0	78.99	523.68	연결로	휴게쉼터 다-2	광장 가-3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3류	7	3.0~4.0	18.05	58.15	연결로	휴게쉼터 다-2	광장 가-5	
당 초		3류	8	3.5~7.0	54.69	333.16	연결로	소로 3-17	녹지대	
변 경		3류	8	3.5~7.0	36.33	209.00	연결로	소로 3-17	교양시설 러	감 124.16㎡
당 초		3류	9	1.25	86.86	96.42	연결로	녹지대	소로 3-17	
당 초		3류	10	1.5	17.84	26.93	연결로	녹지대	놀이터 라	
당 초		3류	11	2.0	32.20	64.82	연결로	놀이터 라	공원 경계	
당 초		3류	12	2.0	11.57	23.52	연결로	소로 3-11	다목적 운동장 카	
당 초		3류	13	5.0	5.80	28.02	연결로	소로 3-8	광장 가-5	
당 초		3류	14	2.0	25.24	50.86	산책로	공원 경계	휴게쉼터 다-3	
당 초		3류	15	5.0~8.5	18.02	122.73	연결로	소로 3-17	광장 가-4	
당 초		3류	16	5.0	8.67	43.42	연결로	소로 3-17	소운동장 차	
당 초		3류	17	6.0~8.5	393.07	2,709.59	연결로	소로 2-1	소로 3-18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3류	18	2.5	41.03	103.04	연결로	소로 3-17	광장 가-2	
당 초		3류	19	3.0~6.5	48.01	202.64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2	
당 초		3류	20	4.0~5.5	29.43	150.58	연결로	광장 가-4	광장 가-1	
당 초		3류	21	4.0~5.5	53.60	230.28	연결로	광장 가-3	광장 가-1	
당 초		3류	22	2.0~5.0	29.15	82.20	연결로	소로 3-24	육상장 마	
당 초		3류	23	5.0	6.23	30.15	연결로	소로 3-2	광장 가-3	
당 초		3류	24	3.5~5.0	186.05	684.72	연결로	소로 3-23	소로 3-2	
당 초		3류	25	4.0	7.42	31.46	연결로	소로 3-24	배드민턴장 바	
당 초		3류	26	2.0	27.67	55.76	연결로	축구장 자	소로 3-24	
당 초	산책로	계			88.64	106.31				
당 초			1	1.2	33.31	39.97	산책로	소로 3-26	소로 3-26	
당 초			2	1.2	55.33	66.34	산책로	소로 3-26	소로 3-26	

4-1. 용마산근린공원 4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176-110일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5,283.80	7,566.61	-	-	-	6	15,283.80	7,566.61	-	-	-	6	
기반시설	소 계	1,526.02	1,526.02	-	-	-	-	1,526.02	1,526.02	-	-	-	-	
	광장	101.42	101.42	-	-	-	-	101.42	101.42	-	-	-	-	
	램프	-	-	-	-	-	-	-	-	-	-	-	-	
	계단	-	-	-	-	-	-	-	-	-	-	-	-	
	자연석 계단	-	-	-	-	-	-	-	-	-	-	-	-	
	도로	1,424.60	1,424.60	-	-	-	-	1,424.60	1,424.60	-	-	-	-	
	배수로	-	-	-	-	-	-	-	-	-	-	-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조경시설	4,484.29	4,484.29	-	-	-	-	4,484.29	4,484.29	-	-	-	-	
휴양시설	558.12	558.12	-	-	-	6	558.12	558.12	-	-	-	6	
유희시설	184.93	184.93	-	-	-	-	184.93	184.93	-	-	-	-	
운동시설	114.42	114.42	-	-	-	-	114.42	114.42	-	-	-	-	
편익시설	698.83	698.83	-	-	-	-	698.83	698.83	-	-	-	-	
녹지 및 기타	7,717.19	-	-	-	-	-	7,717.19	-	-	-	-	-	

5-1. 용마산근린공원 5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143-146 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9,077.00	13,966.66	2	144.48	122.44	25	39,077.00	13,966.66	2	144.48	122.44	25	
기반시설	소계	5,148.28	5,148.28	-	-	-	-	5,148.28	5,148.28	-	-	-	-	
	도로	4,237.20	4,237.20	-	-	-	-	4,237.20	4,237.20	-	-	-	-	
	광장	911.08	911.08	-	-	-	-	911.08	911.08	-	-	-	-	
조경시설		2,463.86	2,463.86	-	-	-	-	2,463.86	2,463.86	-	-	-	-	
휴양시설		139.43	139.43	-	-	-	11	139.43	139.43	-	-	-	11	
운동시설		628.90	628.90	-	-	-	12	628.90	628.90	-	-	-	1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5,385.29	5,385.29	-	-	-	-	5,385.29	5,385.29	-	-	-	-	
편익시설	107.70	107.70	1	92.48	70.44	-	107.70	107.70	1	92.48	70.44	-	
관리시설	93.20	93.20	1	52.00	52.00	2	93.20	93.20	1	52.00	52.00	2	
녹지 및 기타	25,110.34	-	-	-	-	-	25,110.34	-	-	-	-	-	

6-1. 용마산 근린공원 6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117, 구의지구)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48,569.50	46,952.22	9	630.88	755.50	99	148,569.50	46,952.22	9	630.88	755.50	99	
기반시설	소 계	8,675.30	8,238.23	-	-	-	-	8,675.30	8,238.23	-	-	-	-	
	도 로	6,753.95	6,316.88					6,753.95	6,316.88					
	광 장	1,921.35	1,921.35					1,921.35	1,921.35					
조경시설		9,287.51	9,287.51					9,287.51	9,287.51					
휴양시설		4,105.01	4,105.01	1	72.00	72.00	73	4,105.01	4,105.01	1	72.00	72.00	73	
유희시설		240.00	240.00					240.00	240.00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21,174.47	21,174.47	2	349.72	474.34		21,174.47	21,174.47	2	349.72	474.34		
운동시설	2,452.00	2,452.00				8	2,452.00	2,452.00				8	
편익시설	1,200.00	1,200.00	5	149.76	149.76	4	1,200.00	1,200.00	5	149.76	149.76	4	
관리시설	255.00	255.00	1	59.40	59.40	14	255.00	255.00	1	59.40	59.40	14	
녹지 및 기타	101,180.21						101,180.21						

7-1. 용마산근린공원 7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동 38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74,266.10	30,142.75	-	-	-	48	74,266.10	30,142.75	-	-	-	48	
기반시설	소 계	8,748.78	8,748.78	-	-	-	-	8,324.52	8,324.52	-	-	-	-	
	도 로	7,789.64	7,789.64	-	-	-	-	7,789.64	7,789.64	-	-	-	-	
	광 장	534.88	534.88	-	-	-	-	534.88	534.88	-	-	-	-	
조경시설		5,224.84	5,224.84	-	-	-	2	5,224.84	5,224.84	-	-	-	2	
휴양시설		377.65	377.65	-	-	-	24	377.65	377.65	-	-	-	24	
유희시설		152.00	152.00	-	-	-	4	152.00	152.00	-	-	-	4	
운동시설		14,210.64	14,210.64	-	-	-	17	14,210.64	14,210.64	-	-	-	17	
교양시설		1,592.28	1,592.28	-	-	-	-	1,592.28	1,592.28	-	-	-	-	
편익시설		260.82	260.82	-	-	-	-	260.82	260.82	-	-	-	-	
관리시설		-	-	-	-	-	1	-	-	-	-	-	1	
녹지 및 기타		44,123.35	-	-	-	-	-	44,123.35	-	-	-	-	-	

조성계획도(변경전)

용마산 근린공원 3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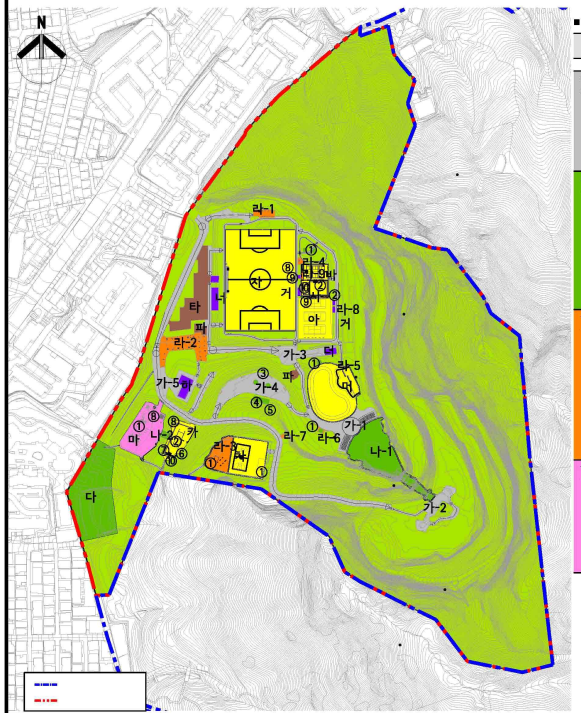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비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199,712.30	44,664.49	-	7동	749.90	749.90	301
기반시설	소계		13,927.43	13,927.43	-	-	-	-	-
	도로		8,968.93	8,968.93	-	-	-	-	-
	진입 광장	가	4,958.50	4,958.50	-	-	-	-	-
		가-1	1,406.50	1,406.50	-	-	-	-	-
		가-2	688.00	688.00	-	-	-	-	-
		가-3	693.00	693.00	-	-	-	-	-
		가-4	1,528.00	1,528.00	-	-	-	-	-
		가-5	643.00	643.00	-	-	-	-	-
조경시설	소계		7,153.06	7,153.06	-	-	-	-	17
	인공폭포	나-1	2,853.00	2,853.00	-	-	-	-	-
	계단	나-2	69.00	69.00	-	-	-	-	-
	초화원	다	4,231.06	4,231.06	-	-	-	-	-
	사각파고라	①	-	-	-	-	-	-	6
	파고라	②	-	-	-	-	-	-	3
	팔각정자	③	-	-	-	-	-	-	2
	등나무파고라	④	-	-	-	-	-	-	1
	야외탁자	⑤	-	-	-	-	-	-	3
	원형야외탁자	⑥	-	-	-	-	-	-	1
	야외테이블	⑦	-	-	-	-	-	-	1
휴양시설	소계		2,408.50	2,408.50	-	-	-	-	119
	휴게쉼터	라	2,408.50	2,408.50	-	-	-	-	-
		라-1	(207.00)	(207.00)	-	-	-	-	-
		라-2	(1,135.00)	(1,135.00)	-	-	-	-	-
		라-3	(827.00)	(827.00)	-	-	-	-	-
		라-4	(37.00)	(37.00)	-	-	-	-	-
		라-5	(37.00)	(37.00)	-	-	-	-	-
		라-6	(56.00)	(56.00)	-	-	-	-	-
		라-7	(15.5)	(15.5)	-	-	-	-	-
		라-8	(49.70)	(49.70)	-	-	-	-	-
		라-9	(44.30)	(44.30)	-	-	-	-	-
	등의자		-	-	-	-	-	-	119
유희시설	소계		1,852.50	1,852.50	-	-	-	-	11
	놀이터	마	1,852.50	1,852.50	-	-	-	-	-
	조합놀이터		-	-	-	-	-	-	1
	모험놀이터		-	-	-	-	-	-	1
	유아조합놀이터		-	-	-	-	-	-	1
	오름봉		-	-	-	-	-	-	1
	시소		-	-	-	-	-	-	3
	그네		-	-	-	-	-	-	1
	혼돌놀이시설		-	-	-	-	-	-	-

구분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비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운동시설	소계		16,763.10	16,763.10	-	-	-	-	26
	육상장	머	3,003.04	3,003.04	-	-	-	-	-
	배드민턴장	바	657.80	657.80	-	-	-	-	-
	게이트볼장	사	352.40	352.40	-	-	-	-	-
	테니스장	아	1,681.00	1,681.00	-	-	-	-	-
	축구장	자	8,649.00	8,649.00	-	-	-	-	-
	소요동장	차	1,521.00	1,521.00	-	-	-	-	-
	다용적운동장	카	898.83	898.83	-	-	-	-	-
	체력단련시설		-	-	-	-	-	-	16
	평행봉		-	-	-	-	-	-	4
	철봉		-	-	-	-	-	-	4
	생태체육배리		-	-	-	-	-	-	2
편익시설	소계		1,847.80	1,847.80	-	2동	113.80	113.80	5
	주차장	타	1,734.0	1,734.0	-	-	-	-	-
	화장실	파	113.80	113.80	-	2동	113.80	113.80	-
	음수장	⑧	-	-	-	-	-	-	3
	대기실	⑨	-	-	-	-	-	-	2
관리시설	소계		712.10	712.10	-	5동	636.10	636.10	123
	관리사무소	하	220.30	220.30	-	1동	220.30	220.30	-
	배수지관리동	거	224.80	224.80	-	2동	224.80	224.80	-
	배전실	너	191.00	-	-	2동	191.00	191.00	-
	관리공간	더	76.00	-	-	-	-	-	-
	쓰레기통		(35.00)	-	-	-	-	-	35
	위험표지판		(1.00)	-	-	-	-	-	3
	방향표지판		(3.00)	-	-	-	-	-	3
	종합안내판		(1.00)	-	-	-	-	-	2
	쓰레기처리장		(7.50)	-	-	-	-	-	1
	볼라드		(4.00)	-	-	-	-	-	4
	공원등		(68.00)	-	-	-	-	-	73
	공원정보표지판	⑩	-	-	-	-	-	-	2
녹지 및 기타	소계		155,047.81	-	-	-	-	-	-
	녹지		155,047.81	-	-	-	-	-	-

조성계획도(변경후)

용마산 근린공원 3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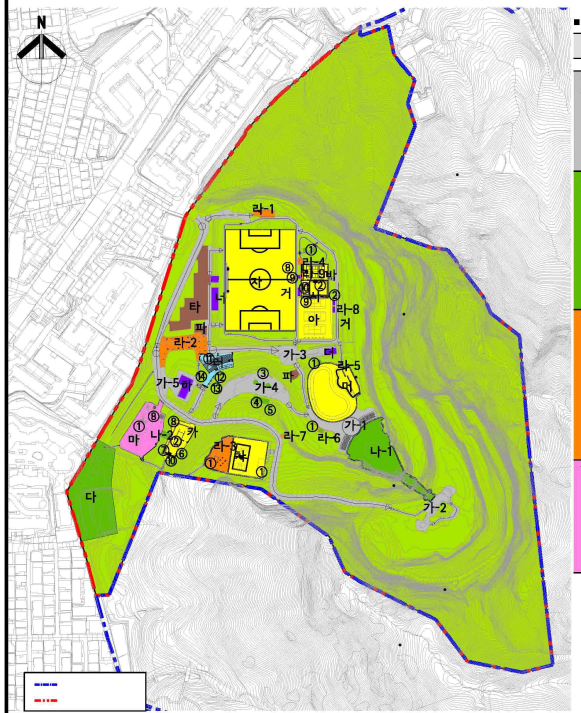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비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199,712.30	45,241.33	-	7동	1,497.49	1,437.08	304
기반시설	소계		13,803.27	13,803.27	-	-	-	-	-
	도로		8,844.77	8,844.77	-	-	-	-	-
	진입 광장	가	4,958.50	4,958.50	-	-	-	-	-
		가-1	1,406.50	1,406.50	-	-	-	-	-
		가-2	688.00	688.00	-	-	-	-	-
		가-3	693.00	693.00	-	-	-	-	-
		가-4	1,528.00	1,528.00	-	-	-	-	-
		가-5	643.00	643.00	-	-	-	-	-
조경시설	소계		7,153.06	7,153.06	-	-	-	-	17
	인공폭포	나-1	2,853.00	2,853.00	-	-	-	-	-
	계단	나-2	69.00	69.00	-	-	-	-	-
	초화원	다	4,231.06	4,231.06	-	-	-	-	-
	사각파고라	①	-	-	-	-	-	-	6
	파고라	②	-	-	-	-	-	-	3
	팔각정자	③	-	-	-	-	-	-	2
	동나무파고라	④	-	-	-	-	-	-	1
	야외탁자	⑤	-	-	-	-	-	-	3
	원형야외탁자	⑥	-	-	-	-	-	-	1
	야외테이블	⑦	-	-	-	-	-	-	1
휴양시설	소계		2,340.50	2,340.50	-	-	-	-	114
	휴게쉼터	라	2,340.50	2,340.50	-	-	-	-	-
		라-1	(207.00)	(207.00)	-	-	-	-	-
		라-2	(1,067.00)	(1,067.00)	-	-	-	-	-
		라-3	(827.00)	(827.00)	-	-	-	-	-
		라-4	(37.00)	(37.00)	-	-	-	-	-
		라-5	(37.00)	(37.00)	-	-	-	-	-
		라-6	(56.00)	(56.00)	-	-	-	-	-
		라-7	(15.5)	(15.5)	-	-	-	-	-
		라-8	(49.70)	(49.70)	-	-	-	-	-
		라-9	(44.30)	(44.30)	-	-	-	-	-
	등의자		-	-	-	-	-	-	119
유희시설	소계		1,852.50	1,852.50	-	-	-	-	11
	놀이터	마	1,852.50	1,852.50	-	-	-	-	-
	조합놀이터		-	-	-	-	-	-	1
	모험놀이터		-	-	-	-	-	-	1
	유아조합놀이터		-	-	-	-	-	-	1
	오름봉		-	-	-	-	-	-	1
	시소		-	-	-	-	-	-	3
	그네		-	-	-	-	-	-	1
	혼돌놀이시설		-	-	-	-	-	-	-

구분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비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운동시설	소계		16,763.10	16,763.10	-	-	-	-	26
	육상장	머	3,003.04	3,003.04	-	-	-	-	-
	배드민턴장	바	657.80	657.80	-	-	-	-	-
	게이트볼장	사	352.40	352.40	-	-	-	-	-
	테니스장	아	1,681.00	1,681.00	-	-	-	-	-
	축구장	자	8,649.00	8,649.00	-	-	-	-	-
	소공동장	차	1,521.00	1,521.00	-	-	-	-	-
	다용적운동장	카	898.83	898.83	-	-	-	-	-
	체력단련시설		-		-	-	-	-	16
	평행봉		-		-	-	-	-	4
	철봉		-		-	-	-	-	4
	생태체육어울리기		-		-	-	-	-	2
교양시설	소계		769.00	769.00	-	1동	281.35	326.72	8
	책쉼터	러	769.00	769.00	-	-	-	-	-
	화분	⑪	-	-	-	-	-	-	3
	독서용테이블	⑫	-	-	-	-	-	-	3
	앉음벽	⑬	-	-	-	-	-	-	1
	철제난간	⑭	-	-	-	-	-	-	1
편익시설	소계		1,847.80	1,847.80	-	2동	113.80	113.80	5
	주차장	타	1,734.0	1,734.0	-	-	-	-	-
	화장실	파	113.80	113.80	-	2동	113.80	113.80	-
	음수장	⑧	-		-	-	-	-	3
	대기실	⑨	-		-	-	-	-	2
관리시설	소계		712.10	712.10	-	5동	636.10	636.10	123
	관리사무소	하	220.30	220.30	-	1동	220.30	220.30	-
	텐수지관리동	거	224.80	224.80	-	2동	224.80	224.80	-
	배전실	너	191.00		-	2동	191.00	191.00	-
	관리공간	더	76.00		-	-	-	-	-
	쓰레기통		(35.00)		-	-	-	-	35
	위험표지판		(1.00)		-	-	-	-	3
	방향표지판		(3.00)		-	-	-	-	3
	종합안내판		(1.00)		-	-	-	-	2
	쓰레기처리장		(7.50)		-	-	-	-	1
	볼라드		(4.00)		-	-	-	-	4
	공원등		(68.00)		-	-	-	-	73
	공원장비보관함	⑩	-		-	-	-	-	2
녹지 및 기타	소계		154,470.97		-	-	-	-	-
	녹지		154,470.97		-	-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92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대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사업에 대하여 2024년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 2024.12.03)를 거쳐 『건축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 목적

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으로 선정되어 창의롭고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통하여 감성디자인 수도로서의 시민의 생활과 도시품격 향상을 도모

나. 성수 지역의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성수동의 부족한 녹지 및 공개공지를 제공하여 주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저층부의 복합문화공간의 공유를 통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역명	위치	대지면적	비고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대	20,810㎡	-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용도	최고층수	비고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18층	-

나. 특례적용사항

구역명	특례적용사항	적용취지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용적률 : 400%이하 허용용적률 : 400%이하 상한용적률 : 560%이하	-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 구현 - 성수의 부족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저층부 복합문화공간 개방을 통한 공공성 강화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73호), 경미한 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09호)에 따름

※ 추후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시 해당 내용에 따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 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 법령에 따름

6. 통합 적용하는 미술 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 운영 관리계획서
: 해당 없음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공공성 확보계획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공공성 확보	1. 녹지환경 개선 및 활성화 2. 지역기여시설 도입 3. 지하주차장 개방 4. 주민개방 전망공간 조성	1. 녹지환경 개선 및 활성화 - 대지의 코너부에 배치한 공개공지와 대지 중심에 계획한 공유 공간의 유기적 연계 - 대지내 큰 규모의 숲 산책로를 조성하고 실개천 및 미스트를 통한 수변경관 조성 - 계절별 식재계획을 통한 다채로운 녹지공간 조성 - 대지 내 잔디·식재·플리마켓 공간등을 조성 2. 지역기여 프로그램 도입 - 1층~3층(FL 7m) 아트리움 내 가변형 복합문화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문화 이벤트 및 프로그램 진행 (저층부 실내개방공간 개방시간 : 10:00~20:00) - 서울숲·성수역·뚝도시장 등에서 연결되는 보행계획 및 연결을 통한 저층부 가로활성화 프로그램 도입 - 성수동에 부족한 공연시설 및 패션디자이너를 위한 전시시설 계획 3. 지하주차장 개방 - 지역거주민을 위해 야간 주차장을 개방하며, 성수동 방문객을 위한 주말 주차장 운영 예정 (주차장 개방시간 : 평일야간_20:00~08:00 / 주말_24시 전면개방) - 전기차 충전설비 이용 4. 주민개방 전망공간 조성 - 옥상정원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E/V설치 (옥상전망 개방시간 : 주말 (10:00~21:00))

* 지하주차장 개방 관련하여 사용승인 전까지 성동구 건축과, 교통지도과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상세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

8.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 (전화: 02-2133-7623), 성동구 건축과(전화: 02-2286-5627)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별건축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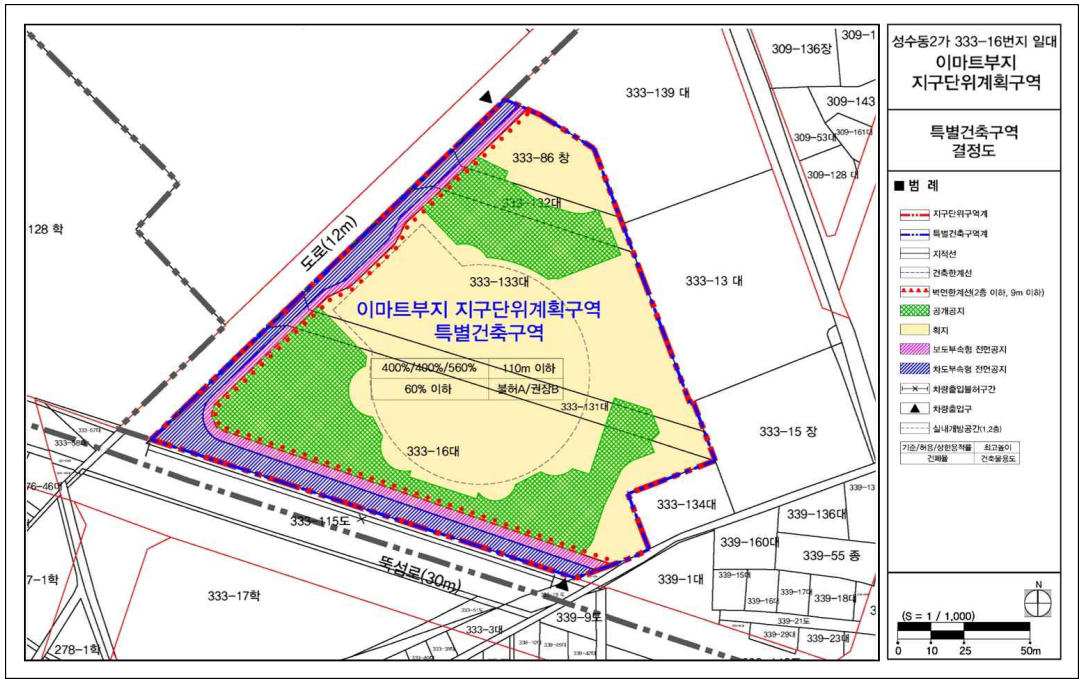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대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범 례
지구단위구역계
특별건축구역계
지적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2층 이하, 9m 이하)
공개공지
학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구
실내개방공간(1.2층)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최고높이
건폐율
건축물용도
(S = 1 / 1,000)
0 10 25 50m
N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건축구역
400%/480%/560%
110m 이하
60% 이하
불허A/권장B
도로(12m)
독성로(30m)
333-115도
128 학
333-139 대
309-136장
309-1
309-143
309-530
309-161대
309-128 대
333-86 창
333-132대
333-133대
333-13 대
333-131대
333-15 장
333-16대
333-134대
339-136대
339-160대
339-55 종
339-1대
339-9도
339-3대
333-17학
278-1학
7-1학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93호

도시관리계획(서초구 강남대로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16호(2024.10.24.)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서초구 강남대로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12.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10호(2025.1.16.)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 강남대로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체계적인 복합개발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할 거점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서초 강남대로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6일원	-	증)8,774.8	8,774.8	-	-

■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 사유
신 설	서초 강남대로 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 일원 - 면적 : 8,774.8㎡	· 체계적인 복합개발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할 거점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8,774.8	-	8,774.8	100.0	
일반상업지역		697.0	증)5,794.9	6,491.9	74.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66.7	-	2,166.7	24.7%	
	제3종일반주거지역	5,911.1	감)5,794.9	116.2	1.3%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서초 강남대로 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5,794.9	· 강남도심 및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의 입지여건을 고려,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해당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신 설	계	6,608.1		-	6,608.1	
	A	6,491.9	A-1	잠원동 6-1 일원	6,491.9	복합용지
	B	116.2	B-1	잠원동 7-9	116.2	공공용지

■ 결정 사유서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 가구 및 획지 신설 - A-1(복합용지) 6,491.9㎡ - B-1(공공용지) 116.2㎡	· 지구단위계획 신설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 수립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복합용지(특별계획구역)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분		내용
A	A-1	용도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 ※ 주차장을 제외한 총연면적의 40% 이상 준수
			허용용도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면적은 주차장을 제외한 총연면적의 30% 이하
			불허용도	·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309% 이하
			허용	505% 이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 따름)
			상한(계획)	1,023.6% 이하(공공기여계획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준수 시) ※ 창의 · 혁신디자인 적용 인센티브는 2024년 제5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 개최결과 및 사업자가 제시한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통합심의(건축위원회)에서 최대 102.9%까지 상향 가능 ※ 탄소제로 및 관광숙박시설 도입에 의한 인센티브 적용 시, 해당 사항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4-3-3. (11), (12))에 따라 산정
		최고높이		280m 이하

※ 기준 및 허용용적률은 종전 용도지역 혼재(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 따른 가중평균값 적용

(2) 공공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분		내용
B	B-1	용도	지정용도	· 노유자시설
			허용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높이		30m 이하

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1)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기준(복합용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계획)용적률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준수 시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이행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준수 시

※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과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내용(복합용지)

구 분	세분		완화기준	비고
친환경	녹화		·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대지면적) X 1	녹화면적은 법정 조경면적을 제외한 조경 산정면적
	물환경	빗물이용시설	· 기준용적률 X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 ≥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중수도 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대기환경	미세먼지 저감장치	· 기준용적률 X 0.1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 예) 그린룸, 기후적응형 벤치, 기후텐트, 공기정화장치 등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대지면적) X 2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X 2	

구 분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대지면적) X 2	강남대로와 시설녹지 간 폭 5m이상, 면적 250㎡ 이상 공공보행통로 확보 시

(3) 상한초과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내용(복합용지)

구 분	완화기준	비고
창의혁신디자인	· 2024년 제5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 개최결과 및 사업자가 제시한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통합심의(건축위원회)에서 최대 102.9%까지 상향 가능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탄소제로	· 허용용적률X(0.7X(∑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관광숙박	· 110% X 용적률 완화 계수(α) X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비율	

※ 상한용적률은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이행 시 최대 800%까지 일괄 적용하며 창의혁신디자인 및 탄소제로, 관광숙박 인센티브 적용기준 준수 시 최대 1,023.6%까지 완화 가능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 및 ㉯ 항목은 중복 적용불가
㉮~㉱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0.7 × (∑㉮~㉱) ≥ 15% → 15% 적용)

㉮ ZEB 인증

ZEB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완화비율	15%	14%	13%	12%	1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 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인증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9%	6%
1 등급	6%	3%

㉱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완화비율	5%	10%	15%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계수(α)

◦ 공개공지 추가확보 인정면적에서 필로티와 조경면적은 제외함
◦ 객실 비율은 전체 연면적에 대한 객실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로서 호텔 운영을 위한 주차장, 기계실/전기실 지원시설 및 복도, 화장실의 공용면적은 객실 연면적에 포함

항 목	처리기준 및 계수		
	0.8	0.9	1.0
상대정화구역	-	○	X
공개공지면적	법정면적 확보	-	법정면적의 25% 이상 추가확보
객실비율	70% 미만	-	80% 이상

※ 최저계수부터 직선보간법으로 부여(이웃한 두 점 사이를 1차식으로 보간하는 선형보간)

라.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1) 건축선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획지 A-1 : 강남대로변 폭 3.5m, 강남대로109길변 폭 3~12m, 강남대로107길변 폭 4m · 획지 B-1 : 강남대로107길변 폭 2m, 강남대로101길변 폭 2m	도면 참조

■ 결정 사유서

구 분	적용대상	결정 사유	비고
건축한계선	획지주변	· 획지 주변의 가로 환경 개선 및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건축한계선 계획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

(1) 대지안의 공지 계획

구 분		적용위치	비고
대지안의 공지	전면공지	도면참조	• 대상지 북측의 강남대로 109길 변 전면공지는 쌈지형 및 보도부속형 공지로 조성 • 강남대로변 및 강남대로 107길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공개공지	2개소(도면참조)	• 강남대로에서 접근하는 주 보행결절점에 지정 • 시설녹지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쌈지형 공개공지 지정

※ 대지 안의 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 등과 단차 없이 조성하고 내부 경사는 최소화하여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
※ 쌈지형 공지(전면공지)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서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 형태로 조성

(2) 통로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비고
공공보행통로	도면참조	· 강남대로와 시설녹지 간 공공보행통로 설치 (폭 5m 이상, 통로 상부 유효높이 8m 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의 시종점 및 선형은 가급적 유지하되 선형의 일부 조정은 가능
※ 공공보행통로에 지형차가 발생할 경우, 경사로 등 접근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

■ 결정 사유서

구 분	적용대상	결정사유
대지안의 공지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 건물의 인지성 및 저층부 개방감 확보를 위해 주요 조망지점과 보행결절점에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지정 · 공공보행통로와 시설녹지 연접부에 쌈지형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좁은 시설녹지를 확장, 활용성 제고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서측의 시설녹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남대로와 시설녹지 간에 대상지를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 지정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 강남대로 107길변 · 강남대로 109길변	· 강남대로 및 이면도로와 접속부에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불허구간	· 도면참조		

다.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

(1) 공공시설 등 계획

구 분	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 공공용지 부담률 : 36.82% (기준대지면적 : 6,491.9㎡) • 공공기여비용 : 1,492.23억원	

(2) 공공기여 내용

구 분	조성비용	인정금액	공공기여항목 (조성비)	비고(귀속주체)
공공시설	244.45억	244.45억	· 시설녹지 : 230.41억 - 토지비 : 224.98억(1,724㎡) - 조성비 : 5.43억 (인접부지 포함 2,166.7㎡) · 잠원경로당 건축비 : 14.04억 (연면적 380㎡)	· 시설녹지 : 서울시 · 잠원경로당 :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1,247.78억	1,247.78억	-	서울시/서초구
합계	1,492.23억	1,492.23억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검증은 온전한 성능의 기부채납 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시)에 따라 민간은 인허가 시 구체적인 내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부서 및 운영(예정)부서에 검증 요청하고 인허가부서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절차를 이행함.
※ 시설녹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토지소유권 이전 완료(토지소유권 이전 관련 합의서 참조)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중 공영주차장 및 경부간선도로 직결램프 설치는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2단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결정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시구 배분율은 8:2로 하되 공영주차장 및 직결램프 설치 시에는 서울시에 배분된 금액으로 충당
※ 잠원경로당 건축비는 「2022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노유자시설의 표준건축비 적용(부가가치세 면세된 단가)

■ 결정 사유서

적용대상	결정사유
공공기여 내용 등	·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 이득의 합리적 공유방안 마련

라. 창의혁신디자인 세부계획

(1) 창의혁신디자인 세부계획

구 분	내용	비고
창의혁신디자인 적용에 따른 계획	• 건물의 입체적 분절을 통해 차별화된 입면계획을 수립 • 한남대교 남단에 상징적인 입체적 군집경관을 제시 • 저층부 개방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다양한 체험 및 교류공간 계획 수립 • 주변경관에 부합하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고, 서울 상징색을 준수 • 생활상 변화를 고려한 가변성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 (시행지침)
공공성 확보	• 녹지환경 개선 및 활성화 • 시민 개방 및 전망공간 조성	-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특별계획구역	서초구 잠원동 6-1 일원	-	6,491.9	6,491.9	복합용지

■ 결정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면 적(㎡)	결정사유
신 설	특별계획구역	6,491.9	· 더리버사이드호텔부지를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블록 단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 신설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table>
<tr><th colspan="4">구 분</th><th>내 용</th><th>비 고</th></tr>
<tr><td colspan="4">위 치</td><td>•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6 일원</td><td></td></tr>
<tr><td colspan="4">면 적</td><td>• 6,491.9㎡</td><td></td></tr>
<tr><td colspan="4">용도지역</td><td>• 일반상업지역</td><td></td></tr>
<tr><td colspan="4">가구 및 획지계획</td><td>• 획지 A-1</td><td>특별계획구역</td></tr>
<tr><td rowspan="11">건축물에 관한 계획</td><td rowspan="3">용도</td><td colspan="2">지정용도</td><td>• 관광숙박시설
※ 주차장을 제외한 총연면적의 40% 이상 준수</td><td></td></tr>
<tr><td colspan="2">허용용도</td><td>•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 제 1,2 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면적은 주차장을 제외한 총연면적의 30% 이하</td><td></td></tr>
<tr><td colspan="2">불허용도</td><td>•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d></td></tr>
<tr><td rowspan="5">규모</td><td colspan="2">건폐율</td><td>• 60% 이하</td><td></td></tr>
<tr><td rowspan="3">용적률</td><td>기준</td><td>• 309% 이하</td><td></td></tr>
<tr><td>허용</td><td>• 505% 이하(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 따름)</td><td></td></tr>
<tr><td>상한
(계획)</td><td>1,023.6% 이하(공공기여계획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준수 시)</td><td></td></tr>
<tr><td colspan="2">최고높이</td><td>• 280m 이하</td><td></td></tr>
<tr><td>배치</td><td colspan="2">건축한계선</td><td>• 강남대로 폭 3.5m
• 강남대로 109길 폭 3~12m(도면참조)
• 강남대로 107길 폭 4m</td><td></td></tr>
<tr><td rowspan="3">형태</td><td colspan="2">저층부계획
(5층이하)</td><td>• 지상1층은 건물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미만으로 계획
• 지상1층 외부공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층고를 25m 이상 확보하고 조경 및 휴게공간 조성
• 지상1층은 장애인의 접근을 고려하여 BF설계 적용
• 지상1층의 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 설치</td><td></td></tr>
<tr><td colspan="2">고층부계획
(11층이상)</td><td>• 한강 및 도심 전망이 가능한 전망공간 설치
- 25층 이상, 지상1층 바닥에서 높이 150m 이상인 위치</td><td></td></tr>
<tr><td colspan="2">입면/외관</td><td>• 다채로운 입면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저층/중층/고층부를 구분하여 색채 또는 외장 등 입면 변화 계획 수립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차폐하여 계획
• 야간 경관을 고려한 조명계획 수립</td><td></td></tr>
</table>

구 분			내 용	비 고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안의 공지	전면공지	• 대상지 북측의 강남대로 109길 변 전면공지는 쌈지형 및 보도부속형 공지로 조성 • 강남대로변 및 강남대로 107길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공개공지	• 대상지 내 공개공지 2개소 위치 지정(도면 참조) - 강남대로에서 접근하는 주 보행결절점에 지정 - 시설녹지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쌈지형 공개공지 지정	
	공공보행통로		• 강남대로와 시설녹지 간 공공보행통로 설치 - 폭 5m 이상, 통로 상부 유효높이 8m 이상 확보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도면 참조)	
	공공기여에 관한사항	공공기여 총량	• 공공용지 부담률 : 36.82%(기준 대지면적 : 6,491.9㎡)	
		공공시설 및 설치비용	•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	
	창의혁신디자인 세부계획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에 따른 계획	• 건물의 입체적 분절을 통해 차별화된 입면계획을 수립 • 한남대교 남단에 상징적인 입체적 군집경관을 제시 • 저층부 개방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다양한 체험 및 교류공간 계획 수립 • 주변경관에 부합하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고, 서울 상징색을 준수 • 생활상 변화를 고려한 가변성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 (시행지침)
		공공성확보	• 녹지환경 개선 및 활성화 • 시민 개방 및 전망공간 조성	-

※ 기준 및 허용용적률은 종전 용도지역 혼재(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 따른 가중평균값 적용
※ 상한(계획) 용적률 중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인센티브는 2024년 제5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 개최결과 및 사업자가 제시한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통합심의(건축위원회)에서 최대 102.9%까지 상향 가능
※ 상한(계획) 용적률 중 탄소제로 및 관광숙박시설 도입에 의한 인센티브 적용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4-3-3. (11), (12))에 따라 산정
※ 대지 안의 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 등과 단차 없이 조성하고 내부 경사는 최소화하여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
※ 쌈지형 공지(전면공지)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서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 형태로 조성

Ⅲ.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특별계획구역	서초구 잠원동 6-1 일원	-	6,491.9	6,491.9	복합용지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면 적(㎡)	결정사유
신 설	특별계획구역	6,491.9	• 더리버사이드호텔부지를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블록 단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 신설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6,491.9	-	6,491.9	100.0	
일반상업지역	697.0	증)5,794.9	6,491.9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5,794.9	감)5,794.9	-	0.0	

■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서초 강남대로 107길 6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5,794.9	• 강남도심 및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의 입지여건을 고려,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신 설	계	6,491.9		-	6,491.9	
	A	6,491.9	A-1	잠원동 6-1 일원	6,491.9	복합용지

■ 결정(변경) 사유서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 가구 및 획지 신설 - A-1(복합용지) 6,491.9㎡	• 지구단위계획 신설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 수립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지정/허용/불허용도)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 ※ 주차장을 제외한 총연면적의 40%이상 준수	• 좌동	-
	허용용도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면적은 주차장을 제외한 총연면적의 30% 이하	• 좌동	-
	불허용도	•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좌동	-

(3)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60% 이하	• 좌동	-

나) 용적률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준	309% 이하	• 좌동	-
허용	505% 이하	• 좌동	-
상한(계획)	1,023.6% 이하 (공공기여계획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준수 시)	• 좌동	-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용적률체계 적용
※ 기준용적률은 종전 용도지역 혼재(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 따른 가중평균값 적용
※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인센티브는 2024년 제5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 개최결과 사업자가 제시한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통합심의(건축위원회)에서 최대 102.9%까지 상향 가능
※ 탄소제로 및 관광숙박시설 도입에 의한 인센티브 적용 시, 해당 사항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4-3-3. (11), (12))에 따라 산정

다) 최고높이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최고높이	280m	• 좌동	-

(4)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가)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적용사항	비고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309% 이하	종전 용도지역 혼재(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 따른 가중평균값 적용

나) 허용용적률

구분	세분		완화기준	적용사항	비고
친환경	녹화		· 309 × (538.6/6,491.9) × 1	25.6	녹화면적은 법정 조경 면적을 제외한 조경 산정면적
	물환경	빗물이용시설	· 309 × 0.04	12.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 ≥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이 되도록 설치
		중수도 시설 설치	· 309 × 0.04	12.4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대기환경	미세먼지 저감장치	· 309 × 0.1	30.9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 예)그린룸, 기후적응형 벤치, 기후텐트, 공기정화장치 등
대지내공지	전면공지		· 309 × (528.4/6,491.9) × 2	50.3	
	공개공지		· 309 × {(795.2−649.2)/6,491.9} × 2	13.9	전체 공개공지 면적 1,184.6㎡ 중 795.2㎡ 적용
공공보행통로			· 309 × (530.5/6,491.9) × 2	50.5	강남대로와 시설녹지 간 폭 5m이상, 면적 250㎡ 이상 공공보행통로 확보 시
합계				196.0	

다) 상한(계획)용적률

구 분	완화기준	적용사항	비고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 2024년 제5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 개최결과 및 사업자가 제시한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통합심의(건축위원회)에서 최대 102.9%까지 상향 가능	102.9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탄소제로 적용	· 허용용적률×(0.7×(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505% × (0.7 × 16%)	56.6	
관광숙박	· 110% × 용적률 완화 계수(α) ×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비율 · 110 × 0.8 × 72.88%	64.1	
합계		223.6	

※ 탄소제로 적용 인센티브는 ZEB 인증 기준 5등급,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15%이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관광숙박 건립에 따른 적용 인센티브 산정
- 용적률 완화 계수(α) : 0.8 적용
  ▸상대정화구역 아님(×1), 공개공지면적 비율 법정면적의 25% 이상 확보(×1), 객실비율 70%미만(×0.8)
-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비율 : 전체 연면적 중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비율 72.88% 적용

(5)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배치	건축한계선	• 강남대로 폭 3.5m • 강남대로 109길 폭 3~12m(도면참조) • 강남대로 107길 폭 4m	• 좌동	
형태	저층부계획 (5층이하)	• 지상1층은 건물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미만으로 계획 • 지상1층 외부공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층고를 25m 이상 확보하고 조경 및 휴게공간 조성 • 지상1층은 장애인의 접근을 고려하여 BF설계 적용 • 지상1층의 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 설치	• 좌동 • 1층 전망공간 설치 (도시숲 조망)	
	고층부계획 (11층이상)	• 한강 및 도심 전망이 가능한 전망공간 설치(1개소)	• 한강 및 도심 전망이 가능하도록 25층 이상, 지상1층 바닥에서 높이 150m 이상인 위치	
	입면/외관	• 다채로운 입면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저층/중층/고층부를 구분하여 색채 또는 외장 등 입면 변화 계획 수립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차폐하여 계획 • 야간 경관을 고려한 조명계획 수립	• 좌동	

※ 건축계획의 세부사항은 계획설명서 참고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대지 안의 공지	전면공지	• 대상지 북측의 강남대로 109길 변 전면공지는 쌈지형 및 보도부속형 공지로 조성 • 강남대로변 및 강남대로 107길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 좌동	
	공개공지	• 대상지 내 공개공지 2개소 위치 지정(도면 참조) - 강남대로에서 접근하는 주 보행결절점에 지정 - 시설녹지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쌈지형 공개공지 지정	• 좌동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보행통로	• 강남대로와 시설녹지 간 공공보행통로 설치 - 폭 5m 이상, 통로 상부 유효높이 8m 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에 면한 건물 저층부에 식음시설 등 가로활성화용도 도입(공공보행통로변에 면한 건축물 벽면길이의 1/2이상 면하도록 설치)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도면 참조)	• 좌동	

다.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기여 총량	• 공공용지 부담률 : 36.82% (기준대지면적 : 6,491.9㎡)	• 좌동	1,492.23억원
공공시설 설치비용	•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	• 공공시설(244.45억) - 시설녹지 토지비 : 224.98억 - 시설녹지 조성비 : 5.43억 - 경로당 건축비 : 14.04억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 1,247.78억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검증은 온전한 성능의 기부채납 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시)에 따라 민간은 인허가 시 구체적인 내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부서 및 운영(예정)부서에 검증 요청하고 인허가부서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절차를 이행함. 이때 설치비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일을 기준으로 시점보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등)하여 결정(변경)고시 당시 설치비용 가액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함

※ 시설녹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토지소유권 이전 완료(토지소유권 이전 관련 합의서 참조)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중 공영주차장 및 경부간선도로 직결램프 설치는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2단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결정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시구 배분율은 8:2로 하되 공영주차장 및 직결램프 설치 시에는 서울시에 배분된 금액으로 충당

※ 잠원경로당 건축비는 「2022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노유자시설의 표준건축비 적용(부가가치세 면세된 단가)

※ 사전협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결과 반영(2024. 7월 기준)

라. 창의혁신디자인 세부계획

(1) 창의혁신디자인 세부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창의 혁신 디자인 적용에 따른 계획	• 건물의 입체적 분절을 통해 차별화된 입면계획을 수립 • 한남대교 남단에 상징적인 입체적 군집경관을 제시 • 저층부 개방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다양한 체험 및 교류공간 계획 수립 • 주변경관에 부합하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고, 서울 상징색을 준수 • 생활상 변화를 고려한 가변성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	**[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 - 한강~시설녹지 녹지축의 주요 결절점으로서 자연요소 도입, 도시숲 위로 떠 있는 건축물로 계획(C2) - 기단부, 중층부, 고층부로 구분하여 입체적 분절을 통한 차별화된 입면계획 수립(C3) - 고층부는 오픈 발코니 계획을 통해 도시적 실루엣을 다채롭게 구성(D3) **[대지내공지등 공유공간 구성]** - 법적 의무 및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제외한 공지형 공유공간 추가 확보(A1, A2) - 캔틸레버구조를 활용하여 저층부를 역피라미드 형태로 계획하여 시각 통로 확보, 도시숲 조성(A7, B3, C6) : 1층 층고 25m 확보, 캔틸레버 하부 공공보행통로 설치, 수공간 연계 **[접근성 개선 및 교류기능 강화]** - 시설녹지~강남대로 간 단절된 보행네트워크 회복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설치(A4, C4) - 경계부옹벽을 철거하고 단차 발생구간은 경사로를 조성해 공유공간 접근성 개선, 보행약자 고려(A3, A6, A7) - 대상지의 지형차이를 활용하여 접근 레벨 다양화, 계단형 조경공간 조성(C4, C7, D4) -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개방형 카페, 녹지공간 및 산책로, 수공간, 조경시설물 등을 통합적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및 소통공간 제공(A2, A4, A5, B2, D2) **[색채 및 재료 계획]** - 서울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준수(C1) 한강은백색 : 저철분 로이유리, 스테인리스 미러, 흰벽돌 등 기와진회색 : 커튼월 프레임 남산초록색, 단청빨간색 : 조경시설물, 조형물 **[미래사회 대응]** - 미래세대의 다양한 가구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간계획 수립(E1) -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전동 블라인드 설치 등 탄소중립 관련 기술 적용(E3) - 법적 필수 설치시설 외에 주요 접근로 주변에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수단 보관소 설치(E4) - 자연채광 및 통풍이 가능한 위치에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E5)	창의 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 (시행 지침)
공공성 확보	• 녹지환경 개선 및 활성화 • 시민 개방 및 전망공간 조성	**[녹지환경 개선 및 활성화]** - 도시숲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을 차용한 조경시설물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휴게공간 설치(A2, A5, B2, B4, C2) - 경부간선도로변 완충녹지와 도시숲에 통합적 조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설녹지 확장, 유기적 연계방안 마련(C2, C5) - 건축물 상부의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야외테라스, 실내 녹화 공간 조성(B2) - 입면요소로서 조경공간을 도입하고 다양한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토심 확보, 계절별 식재계획 및 식생 유지관리계획 수립(D6)	-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시민 개방 및 전망공간 조성] - 24시간 개방되는 전망공간 2개소 계획(B1, D5) : 오픈카페(1층), 하늘정원카페(중층부, 25층 이상 위치) - 1층 개방공간을 최대화하여 지역에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역민+관광객+시설이용자 등 다양한 계층 혼합 유도(A7, E2)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 ※ 주차장을 제외한 총연면적의 40% 이상 준수	• 좌동
		허용용도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 제 1,2 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면적은 주차장을 제외한 총연면적의 30% 이하	• 좌동
		불허용도		•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좌동
	규모	건폐율		• 60% 이하	• 좌동
		용적률	기준	• 309% 이하	• 좌동
			허용	• 505% 이하(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 따름)	• 좌동
			상한(계획)	• 1,023.6% 이하 (공공기여계획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준수 시) ※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인센티브는 2024년 제5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 개최결과 및 사업자가 제시한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통합심의(건축위원회)에서 최대 102.9%까지 상향 가능 ※ 탄소제로 및 관광숙박시설 도입에 의한 인센티브 적용 시, 해당 사항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4-3-3. (11), (12))에 따라 산정	• 좌동
		최고높이		• 280m	• 좌동
	배치	건축한계선		• 강남대로 폭 3.5m • 강남대로 109길 폭 3~12m(도면참조) • 강남대로 107길 폭 4m	• 좌동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형태	저층부계획(5층이하)	• 지상1층은 건물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미만으로 계획 • 지상1층 외부공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층고를 25m 이상 확보하고 조경 및 휴게공간 조성 • 지상1층은 장애인의 접근을 고려하여 BF설계 적용 • 지상1층의 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 설치	• 좌동 • 1층 전망공간 설치 (도시숲조망)
		고층부계획(11층이상)	• 한강 및 도심 전망이 가능한 전망공간 설치(1개소)	• 한강 및 도심 전망이 가능하도록 25층 이상, 지상1층 바닥에서 높이 150m 이상인 위치
		입면/외관	• 다채로운 입면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저층/중층/고층부를 구분하여 색채 또는 외장 등 입면 변화 계획 수립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차폐하여 계획 • 야간 경관을 고려한 조명계획 수립	• 좌동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안의 공지	전면공지	• 대상지 북측의 강남대로 109길 변 전면공지는 쌈지형 및 보도부속형 공지로 조성 • 강남대로변 및 강남대로 107길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 좌동
		공개공지	• 대상지 내 공개공지 2개소 위치 지정(도면 참조) – 강남대로에서 접근하는 주 보행결절점 – 시설녹지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쌈지형 공개공지 지정	• 좌동
	공공보행통로		• 강남대로와 시설녹지 간 공공보행통로 설치 – 폭 5m 이상, 통로 상부 유효높이 8m 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에 면한 건물 저층부에 식음시설 등 가로활성화용도 도입(공공보행통로변에 면한 건축물 벽면길이의 1/2 이상 면하도록 설치)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도면 참조)	• 좌동
	공공기여에 관한사항	공공기여 총량	• 공공용지 부담률 : 36.82% (기준대지면적 : 6,491.9㎡)	• 좌동(1,492.23억원)
		공공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	• 공공시설(244.45억) – 시설녹지 부지가액 : 224.98억 – 시설녹지 조성비 : 5.43억 – 경로당 건축비 : 14.04억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1,247.78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창의혁신 디자인 세부계획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에 따른 계획	• 건물의 입체적 분절을 통해 차별화된 입면계획을 수립 • 한남대교 남단에 상징적인 입체적 군집경관을 제시 • 저층부 개방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다양한 체험 및 교류공간 계획 수립 • 주변경관에 부합하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고, 서울 상징색을 준수 • 생활상 변화를 고려한 가변성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	**[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 - 한강~시설녹지 녹지축의 주요 결절점으로서 자연요소 도입, 도시숲 위로 떠 있는 건축물로 계획(C2) - 기단부, 중층부, 고층부로 구분하여 입체적 분절을 통한 차별화된 입면계획 수립(C3) - 고층부는 오픈 발코니 계획을 통해 도시적 실루엣을 다채롭게 구성(D3) **[대지내공지 등 공유공간 구성]** - 법적 의무 및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제외한 공지형 공유공간 추가 확보(A1, A2) - 캔틸레버구조를 활용하여 저층부를 역피라미드 형태로 계획하여 시각 통로 확보, 도시숲 조성(A7, B3, C6) : 1층 층고 25m 확보, 캔틸레버 하부 공공보행통로 설치, 수공간 연계 **[접근성 개선 및 교류기능 강화]** - 시설녹지~강남대로 간 단절된 보행네트워크 회복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설치(A4, C4) - 경계부옹벽을 철거하고 단차 발생구간은 경사로를 조성해 공유공간 접근성 개선, 보행약자 고려(A3, A6, A7) - 대상지의 지형차이를 활용하여 접근 레벨 다양화, 계단형 조경공간 조성(C4, C7, D4) -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개방형 카페, 녹지공간 및 산책로, 수공간, 조경시설물 등을 통합적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및 소통공간 제공(A2, A4, A5, B2, D2) **[색채 및 재료 계획]** - 서울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준수(C1) 한강은백색 : 저철분 로이유리, 스테인리스 미러, 흰벽돌 등 기와진회색 : 커튼월 프레임 남산초록색, 단청빨간색 : 조경시설물, 조형물 **[미래사회 대응]** - 미래세대의 다양한 가구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간계획 수립(E1) -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전동 블라인드 설치 등 탄소중립 관련 기술 적용(E3) - 법적 필수 설치시설 외에 주요 접근로 주변에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수단 보관소 설치(E4) - 자연채광 및 통풍이 가능한 위치에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E5)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창의 혁신 디자인 세부 계획	공공성 확보	• 녹지환경 개선 및 활성화 • 시민 개방 및 전망공간 조성	**[녹지환경 개선 및 활성화]** - 도시숲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을 차용한 조경시설물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휴게공간 설치(A2, A5, B2, B4, C2) - 경부간선도로변 완충녹지와 도시숲에 통합적 조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설녹지 확장, 유기적 연계방안 마련(C2, C5) - 건축물 상부의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야외테라스, 실내 녹화 공간 조성(B2) - 입면요소로서 조경공간을 도입하고 다양한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토심 확보, 계절별 식재계획 및 식생 유지관리계획 수립(D6) **[시민 개방 및 전망공간 조성]** - 24시간 개방되는 전망공간 2개소 계획(B1, D5) : 오픈카페(1층), 하늘정원카페(중층부, 25층 이상 위치) - 1층 개방공간을 최대화하여 지역에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역민+관광객+시설이용자 등 다양한 계층 혼합 유도(A7, E2)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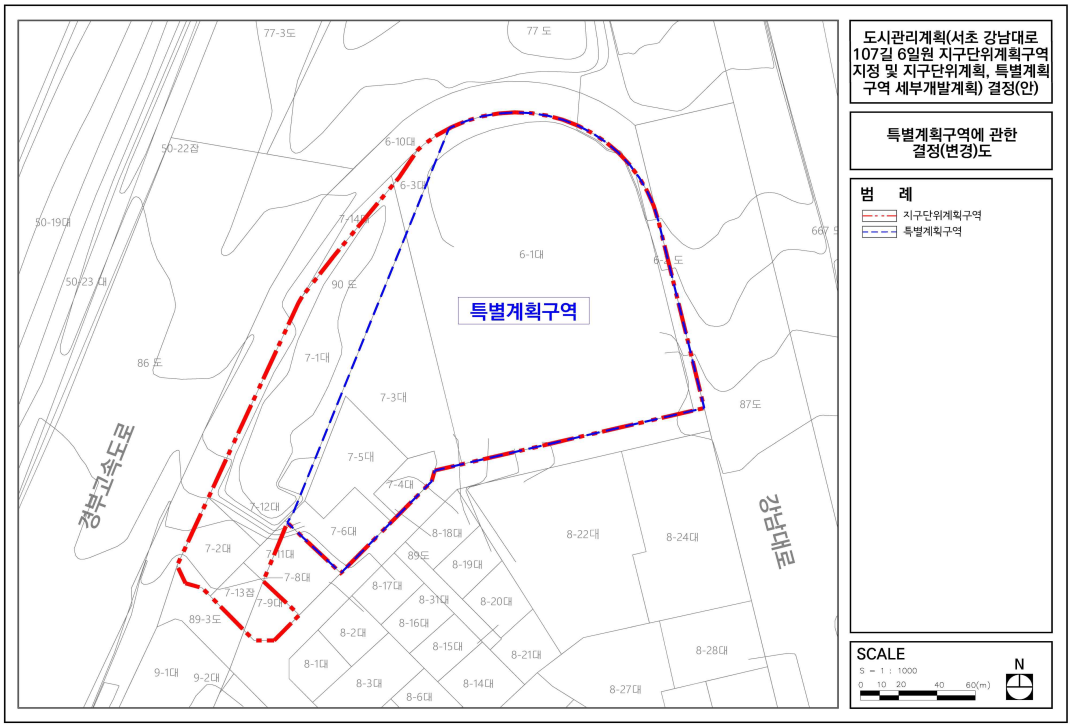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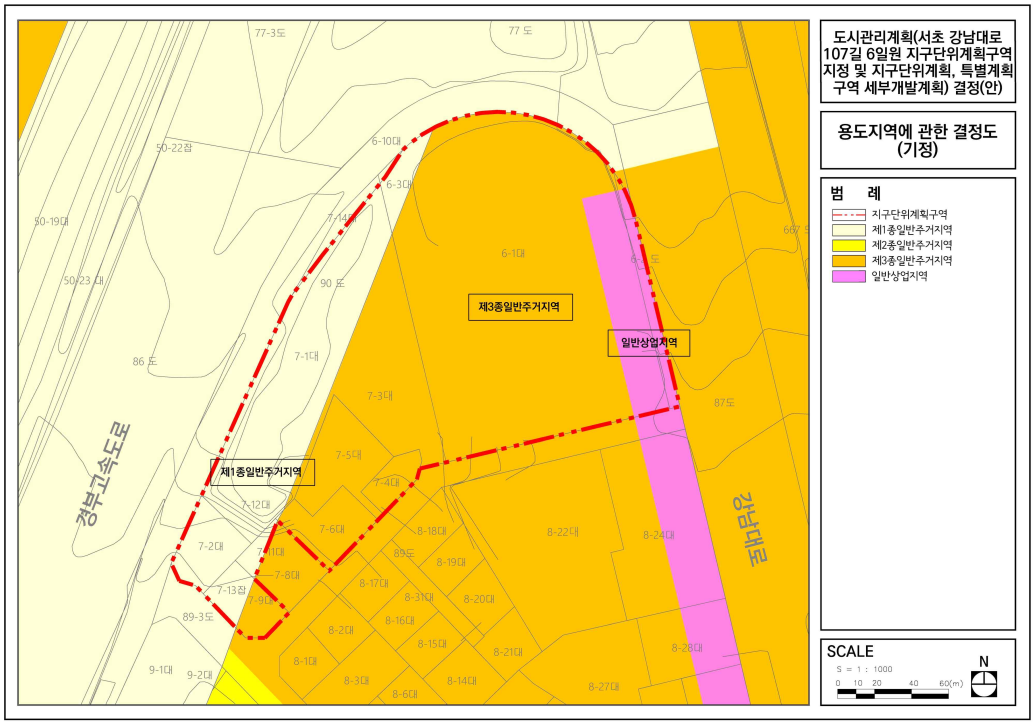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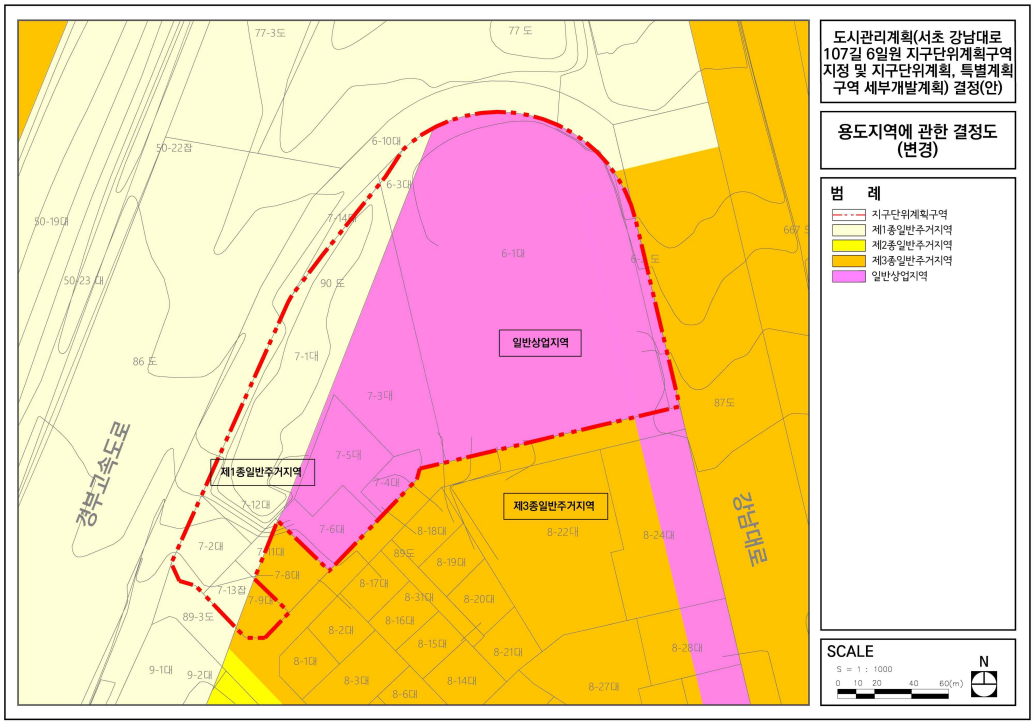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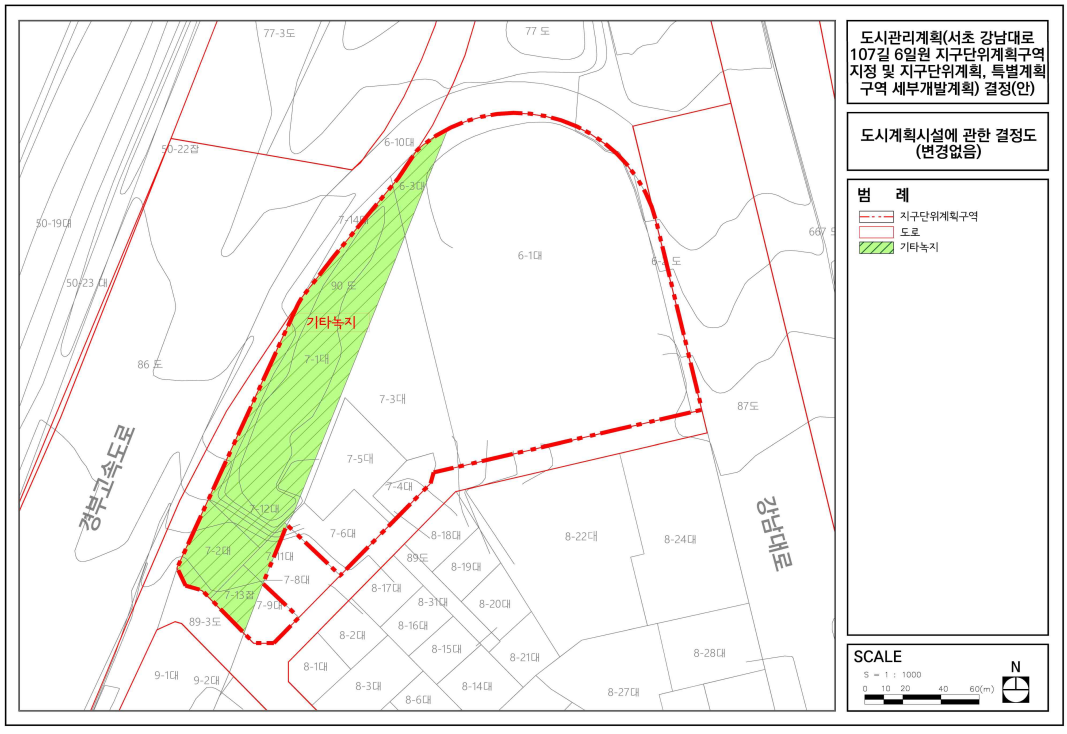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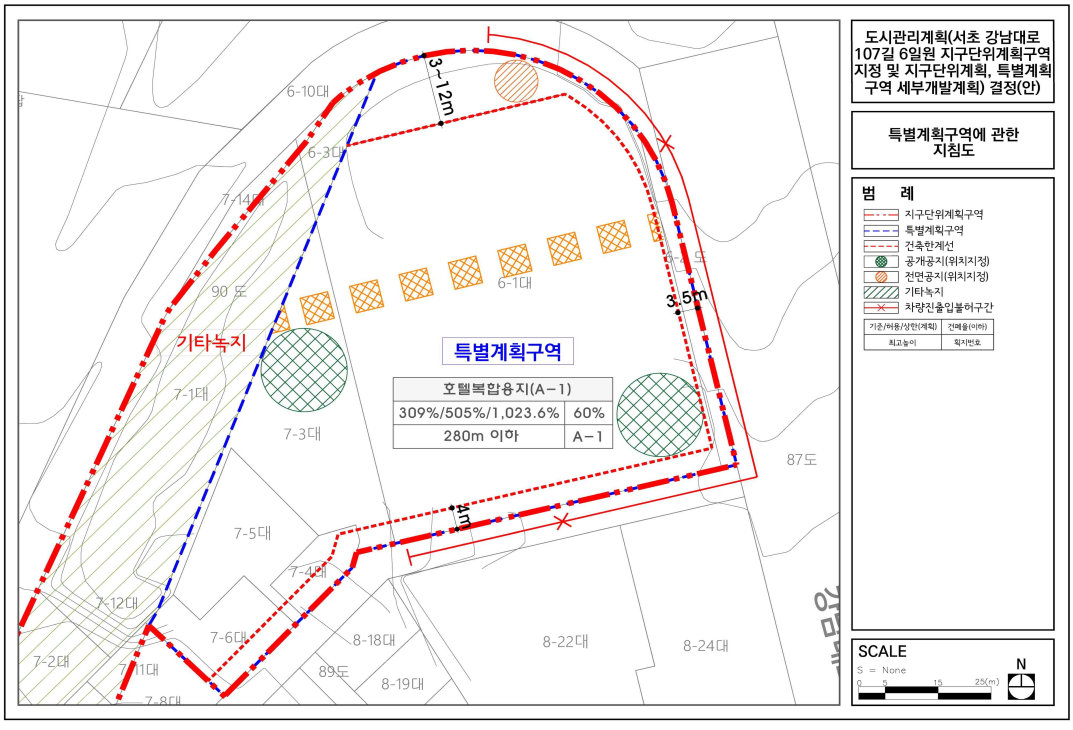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94호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중계 지구단위계획(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90호(2001.09.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고시된 중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72 일대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467호(2024.08.29.)로 열람공고를 거쳐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대지위치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72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28,785.30 ㎡	층 수	지하 4층, 지상 49층
건축면적(㎡)	9,305.41 ㎡	건폐율(%)	32.33 %
연면적(㎡)	208,180.19 ㎡	용적률(%)	476.44 %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1,450대
동 수	7개동	세 대 수	1,336세대

4. 사업기간 : 2022. ~ 2029.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다.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Ⅰ. 결정취지

○ 노원구 하계동 272 일대 재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중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90호(2001.09.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467호(2024.8.29.)로 열람 공고된 중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중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 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56,949.5	-	1,556,949.5	100.0	-
주거지역	소계	1,453,366.5	-	1,453,366.5	93.4	
	제1종일반주거지역	133,466.5	-	133,466.5	8.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70,922.0	-	170,922.0	11.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160.0	감) 28,785.3	90,374.7	5.8	
	제3종일반주거지역	1,029,838.0	-	1,029,838.0	66.1	
	준주거지역	-	증) 28,785.3	28,785.3	1.9	
일반상업지역		33,461.0		33,461.0	2.1	
자연녹지지역		70,122.0		70,122.0	4.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하계동 27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8,785.3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임대주택을 재정비하여 추가 임대주택 확보 및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공간으로 개선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용도지구 : 변경 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3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7. (변경 없음)

8. 아파트용지(하계동272) : 신설

구 분		계획지침	비고
위 치		● 노원구 하계동 272	
면 적		● 28,785.3㎡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상점에 한하며,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 ※ 주거용도는 지상연면적의 95%미만으로 계획하고, 주거용도 외 용도는 지상연면적의 5%이상 계획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480%이하	
	높이	● 49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공공보행통로	● 남~북 방향 공공보행통로 확보 ※ 시·종점은 유지하되 건축계획에 따름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 교차로 및 공원변으로부터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30m)	
공공기여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696세대 추가 도입 [(기정)640세대→(변경)1,336세대]	
	용적률 완화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 허용 -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의 20% -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의 15% - 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의 10%	
기타 관한 사항		● 배치 등은 건축계획에 따름	

9. 공공기여 계획 : 신설

구분		내용	비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공공임대주택	(기정)640세대 → (변경)1,336세대 [증·감: 696세대(증)] · 장기전세주택 696세대 추가 도입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임대주택을 재정비하여 추가 임대주택 확보 및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공간으로 개선하여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노원구 하계동 272번지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에 한함
	용적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 허용 ·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의 20% ·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의 15% ·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의 10%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붙임 참조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2133-7072)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 02-3410-79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 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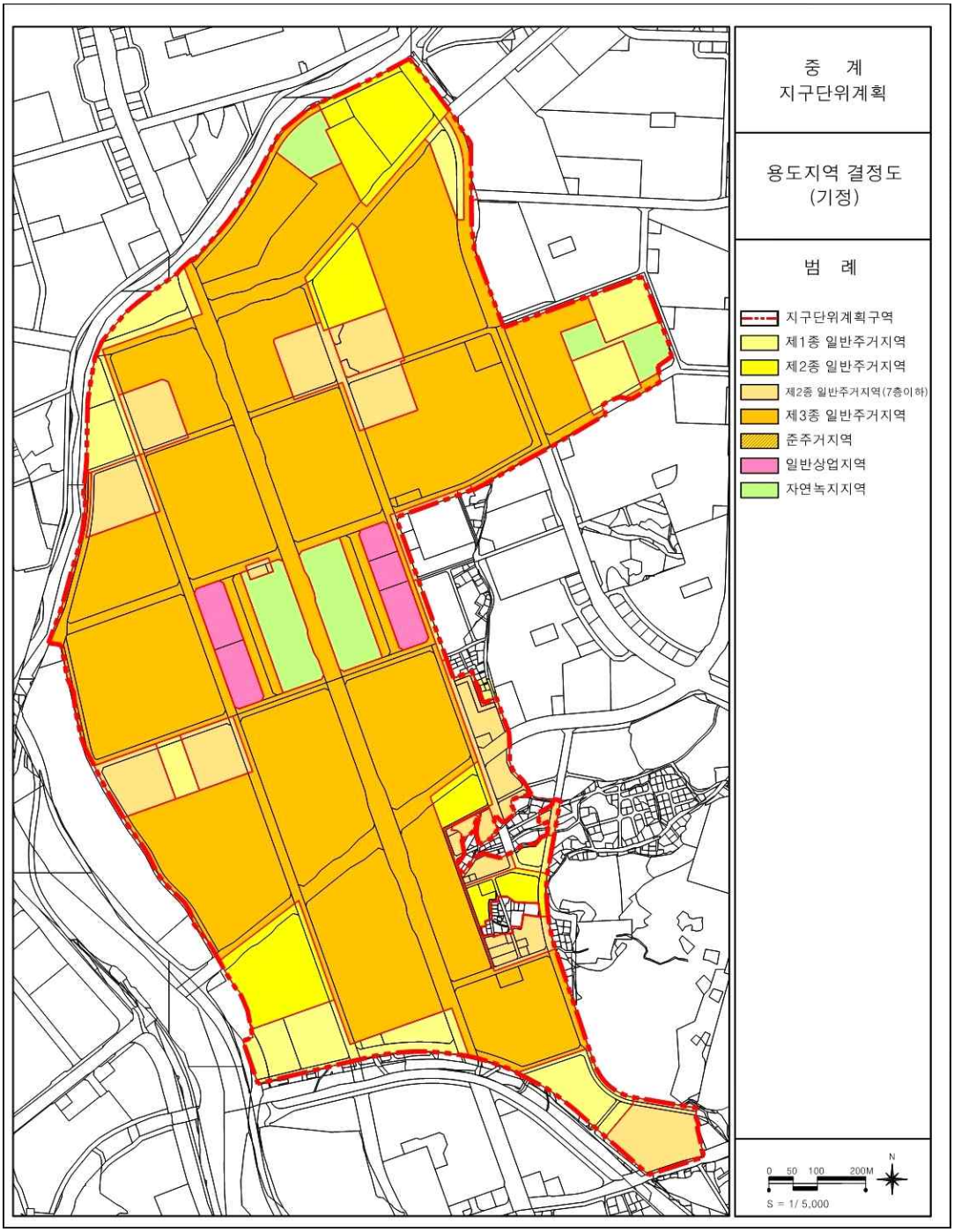

2-1.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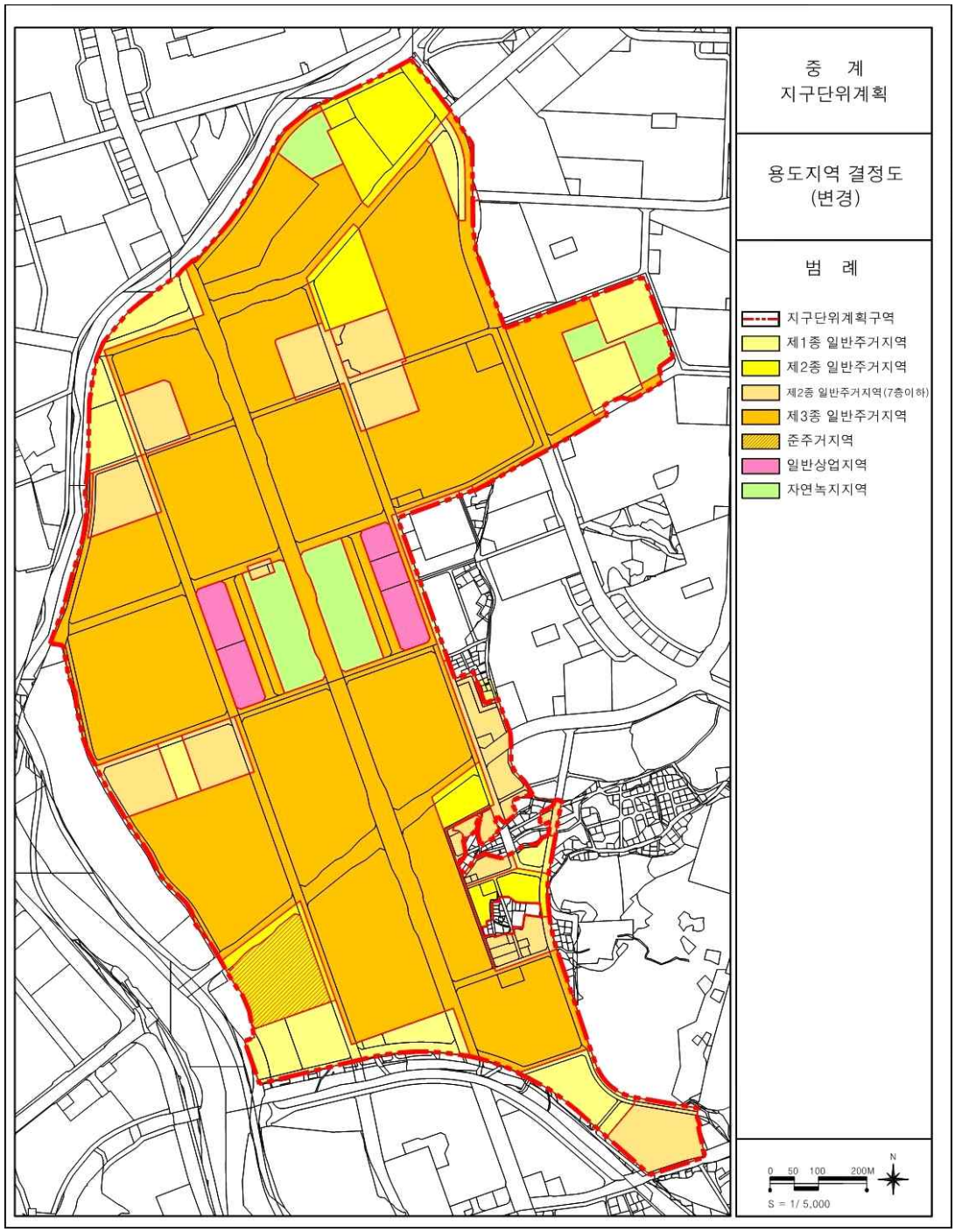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없음)
4.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도 (변경 없음)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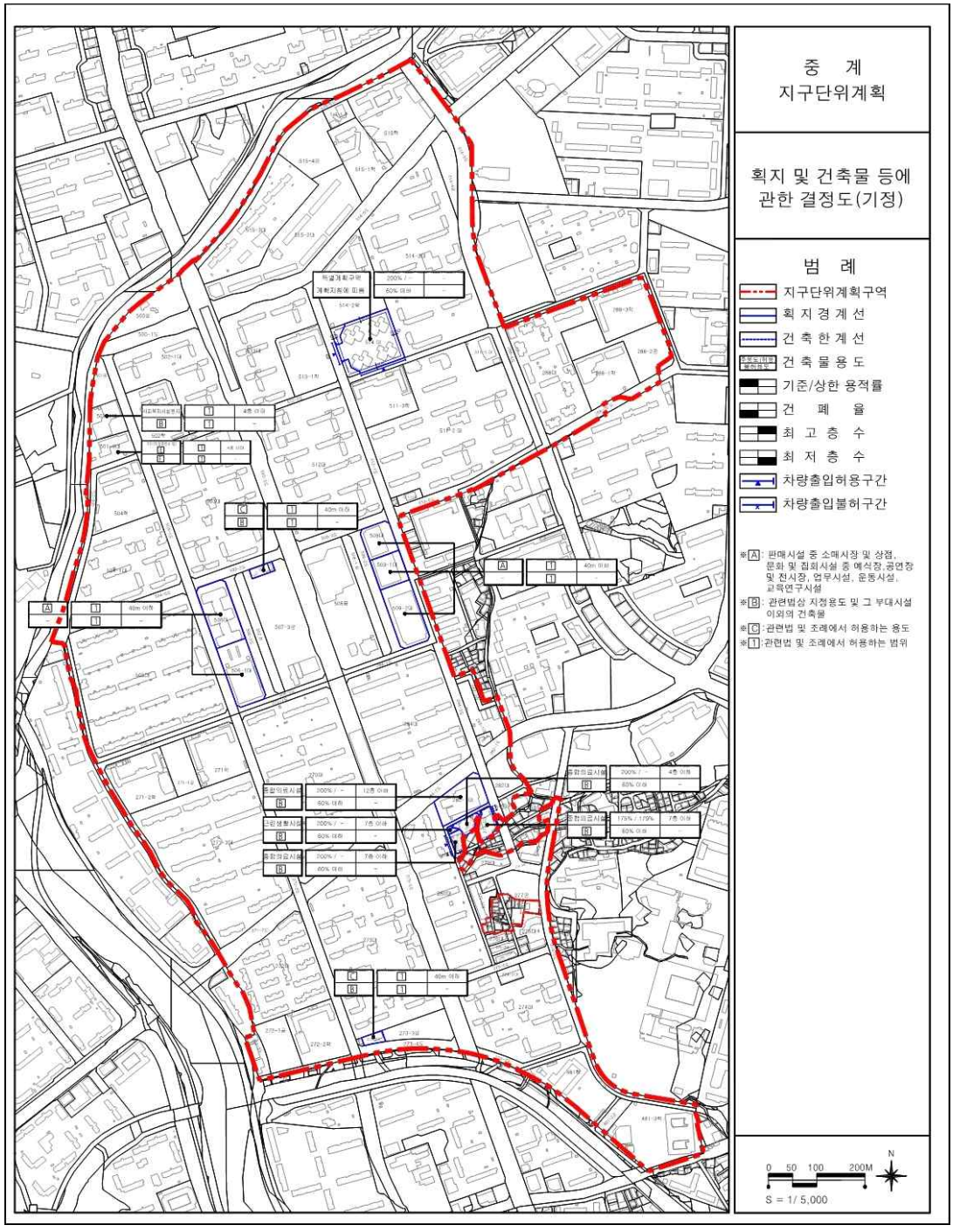

5-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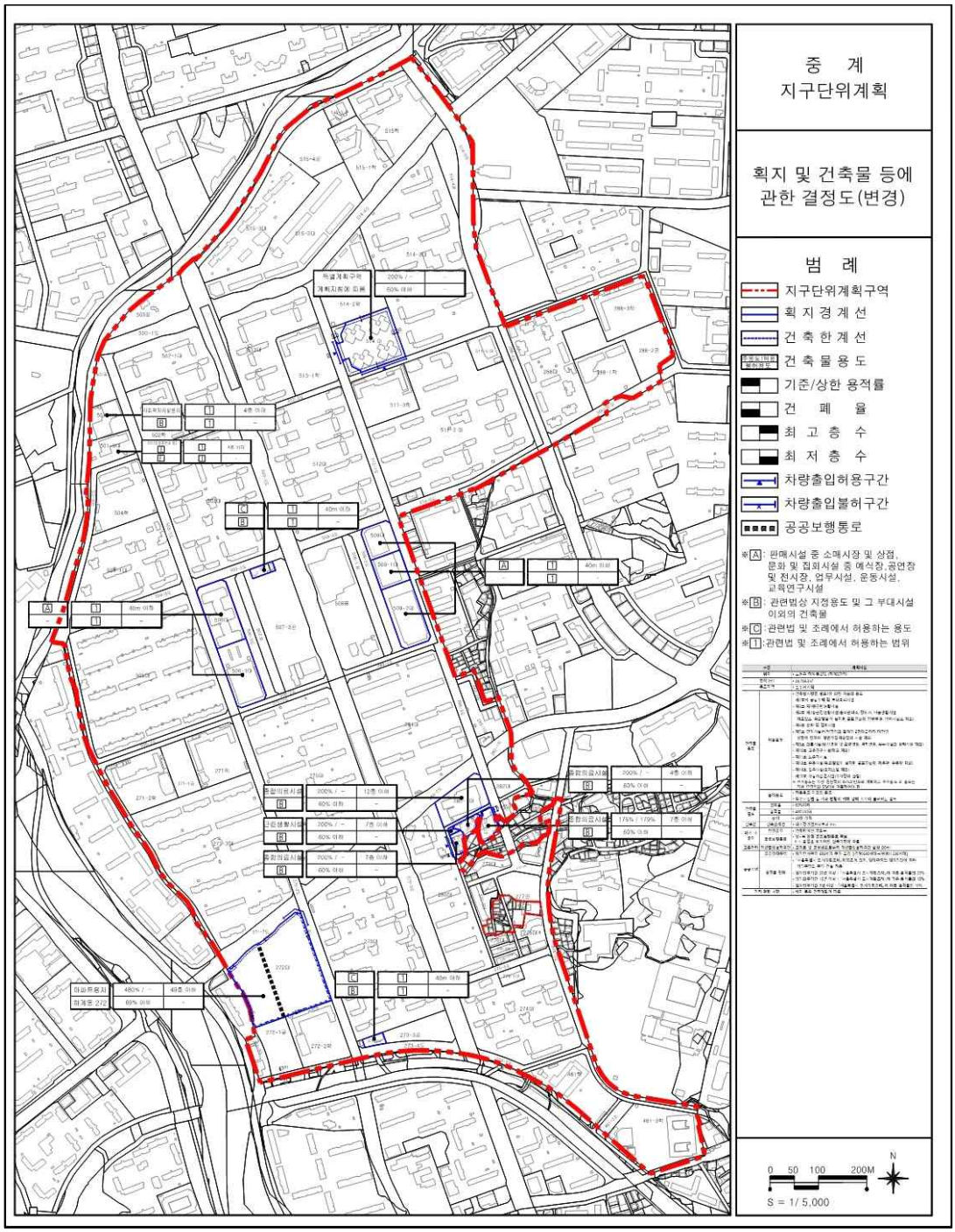

5-2-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정)

5-2-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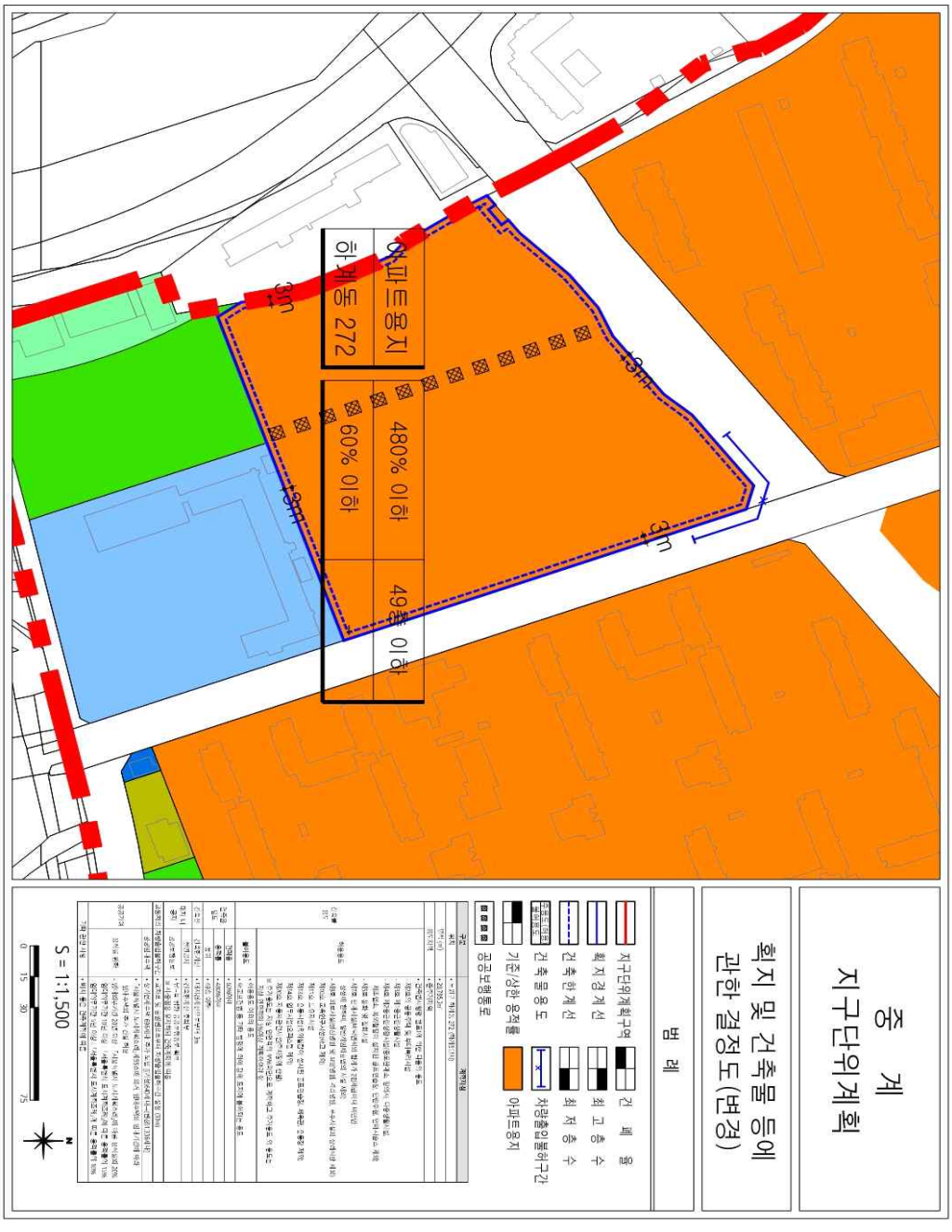

붙임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72	
② 대 지 면 적 (㎡)			28,785.30 ㎡	
③ 건 축 면 적 (㎡)			9,305.41 ㎡	
④ 건축 연면적 (㎡)			208,180.19 ㎡	
⑤ 건 폐 율 (%)			32.33 %	
⑥ 용 적 률 (%)			476.44 %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7개동 / 지하4층 / 지상49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용 39A1형㎡ : 48세대	
			전용 39AS (주거약자)형㎡ : 24세대	
			전용 39A2형㎡ : 340세대	
			전용 49A1형㎡ : 42세대	
			전용 49AS(주거약자) 형㎡ : 28세대	
			전용 49A2형㎡ : 133세대	
			전용 59A1형㎡ : 25세대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전용 49A1형㎡ : 42세대	
			전용 49A2형㎡ : 121세대	
			전용 59A1형㎡ : 11세대	
			전용 59A2형㎡ : 170세대	
			전용 59B2형㎡ : 170세대	
			전용 84A1형㎡ : 12세대	
			전용 84B2형㎡ : 84세대	
			전용 84C2형㎡ : 86세대	
		계	총 1,336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2. ~ 2029.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57,951.08㎡	근생주차장 포함
	관리사무소		260.49㎡	
	MDF실		38.92㎡	
	방재실		76.58㎡	
	경비실-1,2		59.51㎡	
	근로자휴게실		48.80㎡	
	키즈스테이션		13.20㎡	
	어린이집		678.82㎡	
	경로당		586.36㎡	
	다함께돌봄센터		219.50㎡	
	작은도서관		225.22㎡	
	게스트하우스-1,2		129.36㎡	
	세대창고		2,042.30㎡	
	외부계단-1,2		121.80㎡	
	공중보행통로		2,280.71㎡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전기실		338.67㎡						
	발전기실		149.33㎡						
	펌프실-1,2,3		268.85㎡						
	열교환실-1,2,3		873.94㎡						
	지열기계실		94.34㎡						
	연료전지실		86.40㎡						
	정화조관리층-1,2		348.87㎡						
	재활용품창고		216.66㎡						
	빗물저류조 관리층-1,2		135.62㎡						
⑨ 부대 복리 시설 (근생용)	전기실(근생)		118.52㎡						
	발전기실(근생)		80.04㎡						
	저수조/펌프실(근생)		546.08㎡						
	정화조관리층(근생)		99.95㎡						
	열교환실(근생)		76.66㎡						
	지열기계실(근생)		27.81㎡						
⑩ 단위 세대 면적	통합 공공 임대	타 입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39A1	48세대	39.71	28.69	68.40	38.07	106.47	
		39AS (주거약자)	24세대	39.71	28.69	68.40	38.07	106.47	
		39A2	340세대	39.37	28.48	67.85	37.75	105.60	
		49A1	42세대	49.20	34.49	83.69	47.17	130.86	
		49AS (주거약자)	28세대	49.20	34.49	83.69	47.17	130.86	
		49A2	133세대	49.60	34.73	84.33	47.56	131.89	
		59A1	25세대	59.83	40.99	100.82	57.36	158.18	
	장기 전세	49A1	42세대	49.20	34.49	83.69	47.17	130.86	
		49A2	121세대	49.60	34.73	84.33	47.56	131.89	
		59A1	11세대	59.83	40.99	100.82	57.36	158.18	
		59A2	170세대	59.89	41.02	100.91	57.42	158.33	
		59B2	170세대	59.76	40.94	100.70	57.30	158.00	
		84A1	12세대	84.99	56.36	141.35	81.49	222.84	
		84B2	84세대	84.76	56.22	140.98	81.26	222.24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84C2	86세대	84.94	56.22	141.16	81.44	222.60	
⑪ 근린생활시설	지하1~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전용 : 3,847.94㎡ / 공용 : 2,798.62㎡(지하층 포함)						
⑫ 사회적기업	지상1층 사회적기업		전용 : 100.32㎡						
⑬ 사회복지관	지상1층 사회복지관		전용 : 189.03㎡						
⑭ 지역편의시설	지역편의시설		전용 : 515.82㎡ / 공용 : 602.86㎡						
⑮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1,415.48㎡						용적률산정 제외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23호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민간전문가)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고문변리사(민간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명 칭	선발 인원	근무 기간	담당부서	직무 내용
지식 재산권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	2명	선정일로부터 2년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감정 등 사무 역할 수행 ○ 서울시 공사·출연기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수행 역할 ○ 발명자의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부분과 특허 출원에서 등록 절차 등 안내 포함

2. 응모 자격 요건

○ 《총괄》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자격요건
○ 공통 응모자격 요건 : 대한민국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 필요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특허법인 등에서 변리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3. 근무형태 및 보수 수준

○ 근무형태 : 비상근

○ 보수수준 : 자문회의, 자료검토 등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 심사수당 및 그 밖에 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보수 지급 방법 : 월 1회 일괄지급

- 월별 자문내역서, 활동일지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

4. 선발방법 및 일정

○ 응모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2. 27.(목) ~ 3. 4.(화) 17:00 ※ 주말 방문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 우편은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본청 5층)

· 이메일 : nusnuh@seoul.go.kr (이메일 접수시 접수 확인 문자 발송 예정)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선발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모집공고	'25.2.20.(목) ~ 3. 5.(수)	
응모원서 접수	'25.3. 6.(목) ~ 3.11.(화) 17:00	창의행정담당관 5층
서류전형 결과 발표	'25.3.14.(금)	
면접전형	'25.3.19.(수)	서울시청
최종결과 발표	'25.3.21.(금)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모자에게 개별 통지함

- 서류전형 : 응모자의 자격·경력 등이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평가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결과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위촉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모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만 인정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변리사자격증 사본 1통

6. 기타(유의사항)

○ 제출서류에는 신청인 본인이 서명(전자서명 포함) 하여야 합니다.

○ 응모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확인한 후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작성시 신청인 부주의로 인한 잘못 또는 허위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제반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선발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응모를 무효로 하거나 선발이 취소됩니다.

○ 응모원서에 상시연락 가능한 E-mail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모원서상의 기재착오 · 누락 ·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133-7824)

<공고문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본인은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자 아래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성명 (인)

응시분야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 (민간전문가)	응 시 번 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주요경력	. . .		
자격증 및 면허증			

응 시 표			
응시분야	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 (민간전문가)	응시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2025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 . .(만 세)
	한 자		E- Mail	
연 락 처				
주 소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경 력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자 격 사 항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공고문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5. .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하되, 지원동기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글씨폰트 14 크기)를 사용

<공고문 별지 제4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민간전문가【서울특별시 고문변리사】 선발 응모자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서 명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463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과태료(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 및 재산(부동산, 자동차)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시보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02.20. ~ 2025.03.06.

2. 공시송달 대상 및 압류 내역

연번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압류 물건	압류일
	성명	주소			
1	정*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사제로 483, 621호(흥업면, 거장아파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위반내용:차량의 총중량 초과 체납액:815,000원	자동차 86*9339	2025.03.07.
2	한*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241번길 23-7, 1층(태평동)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위반내용:차량의 축하중 초과 체납액:1,073,800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440-8 (지분 1064분의 16.5)	2025.03.07.
3	이*목	경상북도 경주시 어일2길 20-42(문무대왕면)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위반내용:차량의 총중량 초과 체납액:605,000원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864-2 (지분 18분의 4,지분36분의 3)	2025.03.07.

※ 체납액은 2025.02.10일 기준이며, 가산금 등으로 실제 체납금액은 다를 수 있음.

3.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박구서(☎ 02-3284-5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472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이크레더블	제6110000-20-2025-00003호	' 25.2.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808~812호
2	주식회사 후시파트너스	제6110000-20-2025-00004호	' 25.2.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9층 10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475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 등록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025.1.1.자)

2. 직인 등록 일자 : 2025.2.1.자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내용

가. 직인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시립미술관 서서울미술관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서서울미술관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cm×2.0cm		2025.2.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025.1.1.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서서울미술관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서서울미술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서서울미술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476호

과학관 신규등록 공고(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한 과학관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등록연월일 : 2025. 2.
2. 등록 번호 : 제 서-20호
3. 명 칭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4. 구 분 : 공립전문과학관
5. 대 표 자 : 유만선
6.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56
7. 규 모 : 전시실 1,261㎡, 사무실 139㎡, 강당 87㎡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자 : 이정훈(02-2133-522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487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2. 20. ~ 2025. 3. 6.(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기간 : 2025. 3. 7. ~ 2025. 3. 20.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별첨 서식),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4, E-mail : kys82@seoul.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자메일(kys82@seoul.go.kr)

6. 과태료 자진 납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 납부기한 : 2025. 3. 20.
   나. 납부방법
   - 고지서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 인터넷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	반 송 내 역		발송물 구 분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1	이*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5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1-16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	심*오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1-2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3	서*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10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2-0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4	김*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2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수취인불명	2025-01-2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5	성*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2-0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48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02. 20. ~ 2025. 03. 06.

2. 공시송달 대상 : 재산(부동산) 압류 통지서
○ 압류 관련 내용

(단위 : 원)

연번	압류물건(부동산) - 급수설비 소재지	수도요금 체납 및 압류 현황			물건소유자		반송사유
		납기	금액	압류일	성명	우편송달	
1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10가길 54(마장동)	2023.01~ 2024.09	4,160,890	2024. 11.18	손○인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10가길 54(마장동)	폐문부재 등 (보관기간경과)
2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7-11 102호(금호1가동)	2022.02~ 2024.10	832,430	2024. 12.02	오○숙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7-11 102호(금호1가동)	폐문부재 등 (보관기간경과)
3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50, 107동 2701호(마장동)	2022.08~ 2024.09	332,450	2024. 12.18	주○선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50, 107동 2701호(마장동)	폐문부재 등 (보관기간경과)
4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816-32(마장동)	2022.05~ 2024.09	507,720	2024. 12.18	정○근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9길 39-1(마장동)	폐문부재 등 (보관기간경과)
5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481-21(마장동)	2023.01~ 2024.09	7,569,440	2024. 12.18	이○길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65-26, 1307동 403호	폐문부재 등 (보관기간경과)
6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13-11(마장동)	2023.09~ 2024.09	216,860	2024. 12.19	홍○희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31길 24-5(마장동)	폐문부재 등 (보관기간경과)
7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7-2(마장동)	2023.05~ 2024.11	249,080	2025. 02.11	이○주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7-2(마장동)	폐문부재 등 (보관기간경과)

3.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담당 이은백, ☎02-3146-270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491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항 및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개별건축물 등과 타행위에 부과·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처리 구역별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2. 하수처리 구역별 단위단가

처리 구역	단 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2014.3.1.부터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25. 2.20.~2026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2014.2.28.까지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25. 2.20.~2026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중랑	천원/㎥	1,032	788
난지	천원/㎥	928	618
탄천	천원/㎥	1,309	1,018
서남	천원/㎥	1,131	84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49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2. 20. ~ 2025. 3. 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3141284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148-431 성도주택 가동 202호	수도요금	2021년 11월 등 19납기	19회	388,130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148-431 성도주택 가동 202호	윤선화	730725-2****** (2회송달 부재)	경기도 화성시 병점서로 63-21, 409호(병점동)	388,130	2025.3.5. 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최이서(☎02-3146-33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51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2. 20. ~ 2025. 3. 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2043828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4길 79, 103동 103호 (창동)	수도요금	2022년7월 등 14납기	14회	362,920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4길 79, 103동 103호 (창동)	이*진	760203-2******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362,920	2024.12.30.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박정환(☎02-3146-32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51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2. 20. ~ 2025. 3. 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777098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8길 22, 202호 (창동 ,서연하우스)	수도요금	2023년 9월 등 5납기	5회	601,730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8길 22, 202호 (창동 ,서연하우스)	홍*표	630301-1******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601,730	2024.12.30.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박정환(☎02-3146-32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526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오휘후 연희지사	서울 후 제755호	정영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6, 3층 (연희동)	폐업 ('25.02.07.)		
2	진&뷰티	서울 후 제2642호	송영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18, 423동 1006호 (길음동)	폐업 ('25.01.01.)		
3	인셀메틱	서울 후 제2087호	윤혜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18, 423동 1006호 (길음동)	폐업 ('25.01.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530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준인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변경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수행실적평가(PQ) 대상 금액 변경(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2호 반영)
- (현행) 추정가격 2.2억원 이상
- (변경)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3.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누리집 ▸ 분야별 정보(주택) ▸ 건설기술 ▸ 건설기술 자료실 ▸ 지침/방침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서울시(개정안)
제Ⅰ장.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추정가격 2.3억원) 이상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이하생략)…
다. 평가방법 및 절차 (8) 발주부서는 각 사업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추정가격 2.3억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 추진 시 “수행실적평가” 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추정가격 2.3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수행실적평가)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이하생략)…
다. 평가방법 및 절차 (13) 발주부서는 각 사업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추정가격 2.3억원) 이상의 용역 추진 시 “수행실적평가” 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537호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설계 열람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잠수교 접근성 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사의 개요
○ 사 업 명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 위 치 : 잠수교 및 주변지역 일원(서울시 서초구 및 용산구)
○ 사업규모 : 차로폐쇄(왕복 2차로 ➔ 보행·문화공간 전환),
보행데크 확장(22개소, B=2.25m, B=5.00m),
디자인 난간 설치(L=920m × 양측),
기타 도로 포장(칼라 아스콘, B=18~28m, L=920m) 등
○ 사업내용 : 잠수교 전면 보행화(2차로 폐쇄) 및 문화공간 조성

2. 공사의 필요성
○ 잠수교 전면 보행화를 통해 시민들이 즐기면서 머물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

3. 공사의 효과
○ 잠수교의 전면 보행화로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시민 여가·문화공간 확충
○ 잠수교 보행데크 신설 및 확장에 따라 휴식·이벤트 공간 추가 확보
○ 도로 포장 및 디자인 난간 설치로 쾌적한 환경 조성

4. 공사기간
○ 설 계 : 2024년 9월 ~ 2025년 7월
○ 공 사 : 2025년 9월 ~ 2026년 4월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9,767	-	-	11,860	7,907	-

※ 공사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금액)은 사업계획, 공정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공람방법 :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용산구 도로과, 서초구 도로과에서 도서 열람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출시기 : 공람개시 후 ~ 공람 만료일부터 5일 이내

○ 제출방법 : 의견 제출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jms0920@seoul.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02-2133-8087, 주명수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539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정○식 등 321명
4. 공고기간 : 2025. 2. 20. ~ 2025. 3. 6.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5. 2. 20. ~ 2025. 3. 6.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공시송달 사전통지서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109호73**	정*식	경기도 고양시	2024-10-29 16:38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	265저60**	유*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12-18 14: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	112두31**	(*)*탈*닉*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12-17 09: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	133하66**	권*미	서울특별시	2024-12-19 16:0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	194서19**	홍*지	경기도 화성시	2024-12-17 10:5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6	170허39**	주*회*아*니*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19 15:52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7	109허71**	이*국	경기도 광주시	2024-12-16 14:1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8	34호53**	윤*현	경기도 성남시	2024-12-16 15:4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	34호78**	정*두	서울특별시	2024-12-16 15:3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0	34호78**	정*두	서울특별시	2024-12-16 15:3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1	191허53**	제*에*스	세종특별자치시	2024-12-13 18:16	반포역~고속터미널교차로	50000
12	34호53**	윤*현	경기도 성남시	2024-12-16 15:42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3	126하28**	김*윤	인천광역시	2024-12-17 13:4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4	223허43**	(*)*원	경기도 파주시	2024-12-18 12:44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4-4	50000
15	230무37**	주*회*헬*케*코*아	인천광역시	2024-12-19 09:1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6	193호97**	주*회*브*지*루	서울특별시	2024-12-13 10:03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신동초교교차로	50000
17	110나46**	(*)*한*프*이*지*어*	서울특별시	2024-12-16 17:2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8	23어18**	이*훈	경기도 고양시	2025-01-09 10:50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9	40너53**	(*)*지*컴*니	서울특별시	2025-01-10 20:0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0	397너76**	이*희	충청북도 청주시	2025-01-08 14: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1	116조12**	이*찬	경기도 양주시	2025-01-08 18:0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2	82보34**	김*환	서울특별시	2025-01-07 17:13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3	239주82**	이*효	서울특별시	2025-01-08 17:1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4	300주82**	서*용	경상남도 의령군	2025-01-09 18:4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5	서울89자48**	김*겸	서울특별시	2025-01-09 08:41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6	86무04**	소*원	경기도 오산시	2025-01-07 13:01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7	인천30바44**	장*운	인천광역시	2024-12-19 07:55	의원회관앞교차로~국회의사당역	50000
28	11마54**	노*성	서울특별시	2025-01-10 19:5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9	서울31사39**	정*문	경기도 성남시	2025-01-11 15:0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0	839거50**	강*현	서울특별시	2025-01-06 16:35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31	167라62**	윤*정	경기도 성남시	2025-01-09 18:5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2	221하95**	임*범	서울특별시	2024-12-26 09:2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3	143호87**	(*)*마*디*인	서울특별시	2024-12-27 08:52	복정역~장지역	50000
34	서울31바79**	채*기	경기도 안양시	2025-01-07 20: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5	100루18**	Y*R*H*N*E*E*	충청남도 천안시	2025-01-10 17:2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6	경기45바47**	이*현	경기도 고양시	2025-01-07 09:3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7	224호64**	정*용	경기도 안산시	2025-01-02 20:0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8	389오21**	이*정	서울특별시	2025-01-08 09:3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9	52무26**	장*우	경기도 성남시	2025-01-09 17:0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0	01어22**	고*향	인천광역시	2025-01-12 14:2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1	52루51**	전*진	서울특별시	2025-01-12 04:1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2	08오58**	황*숙	서울특별시	2025-01-07 10: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3	821거83**	김*복	경기도 과천시	2025-01-08 19:2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4	220보29**	김*하	서울특별시	2025-01-09 19:53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5	15거08**	Z*A*Y*O*R*S*A*	경기도 김포시	2025-01-11 14:5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6	서울31사43**	이*희	서울특별시	2025-01-07 12:36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여의도동)	50000
47	811너77**	김*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01-09 09:54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50000
48	76다65**	한*천	경기도 광주시	2025-01-08 13:52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49	186고23**	한*실	서울특별시	2025-01-11 11: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50	17루61**	L*T*I*I*E*D*N*	경기도 안산시	2025-01-07 11:2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1	270러11**	김*주	서울특별시	2025-01-10 16:1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2	48거86**	주*회*쿤*트*어	서울특별시	2025-01-11 14:1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3	222모96**	주*회*더*스*메*	서울특별시	2025-01-02 16:5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4	152하14**	주*회*에*치*아*엔*	서울특별시	2024-12-19 09:38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55	19모23**	이*정	경기도 화성시	2025-01-08 11:5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6	197하64**	양*콜*김*수*	경기도 용인시	2025-01-04 09:3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7	273고79**	박*윤	경기도 남양주시	2025-01-10 20: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8	79라78**	정*순	대전광역시	2025-01-07 16: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60000
59	193하69**	양*식	서울특별시	2025-01-06 09:1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60	46로01**	김*진	경기도 수원시	2025-01-11 10:4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1	76다65**	한*천	경기도 광주시	2025-01-08 10:41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62	서울31아34**	염*석	서울특별시	2025-01-03 20:41	윤중초교앞교차로~여의교교차로	50000
63	80나70**	전*혁	경기도 의정부시	2025-01-04 07:03	사학연금서울센터~금융감독원	50000
64	68부33**	Q*A*Y*N*X*N	경기도 시흥시	2025-01-09 08:3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65	05버92**	정*해	서울특별시	2025-01-11 19:03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66	25호22**	길*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12-24 08:2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67	72마99**	(*)*전*제*애*복*회	대전광역시	2025-01-10 12:43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68	221호86**	김*찬	인천광역시	2024-12-20 17:0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69	01무87**	블*펄*라*빗*쿼*유*회*	서울특별시	2025-01-08 07:03	여의동로3길	50000
70	45조44**	조*문	서울특별시	2025-01-08 07:38	용화여고~노원역	50000
71	336구29**	이*구	경기도 안산시	2025-01-10 14:5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2	367오78**	주*회*천*인*스*틱	경기도 남양주시	2025-01-08 18:3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73	397너76**	이*희	충청북도 청주시	2025-01-08 09:5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4	14더98**	S*G*S*L*I*A*O*A*S*E*I*F	충청북도 충주시	2025-01-08 15:3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5	12오45**	N*U*E*T*O*G*A*	경기도 의정부시	2025-01-07 10:0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6	34모58**	주*회*아*부	서울특별시	2025-01-08 19:0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7	서울31자23**	김*현	서울특별시	2025-01-09 16:25	서울종합운동장교차로~삼전사거리	50000
78	30고51**	박*수	서울특별시	2025-01-09 16:29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79	서울14다65**	안*준	경기도 양주시	2025-01-10 09:08	삼육에코팜센터~육사야구장	60000
80	97도38**	유*용	서울특별시	2025-01-11 18:0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1	209우95**	마*환	경기도 고양시	2025-01-09 17: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2	93보85**	장*대	경기도 성남시	2025-01-07 09: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3	45저02**	이*희	서울특별시	2025-01-08 09: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4	392부51**	(*)*영*앤*	서울특별시	2024-12-24 17: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85	155노27**	주*회*혠	서울특별시	2025-01-03 13:2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86	839거50**	강*현	서울특별시	2025-01-06 13:12	서울 송파구 잠실동 261	50000
87	33우02**	Y*O*I*S*K	서울특별시	2025-01-08 19:3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88	152호89**	(*)*스*디*	전라남도 장성군	2024-12-31 14:3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9	221호86**	김*찬	인천광역시	2024-12-20 17: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90	13서23**	이*람	광주광역시	2025-01-10 20: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1	138다66**	주*회*그*다*	서울특별시	2025-01-10 13: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2	서울31바36**	김*석	경기도 김포시	2025-01-10 19:3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93	215수66**	김*수	충청북도 청주시	2025-01-07 09: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4	05거29**	윤*민	경기도 파주시	2025-01-07 09:1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95	204마10**	김*국	인천광역시	2025-01-07 07:1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96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12-20 16:3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97	221호86**	김*찬	인천광역시	2024-12-20 17:0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98	15머09**	박*영	서울특별시	2025-01-12 16:07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99	37두25**	엄*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5-01-10 10:18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00	서울36바16**	승*하	서울특별시	2025-01-10 13:08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101	161허86**	최*수	충청남도 천안시	2024-12-24 19:2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2	154호21**	(*)*이*렌*카	경기도 평택시	2025-01-07 19:3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03	82어44**	김*후	경기도 안양시	2025-01-08 15:2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04	41부71**	박*용	부산광역시	2025-01-08 16:3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05	81수23**	김*수	서울특별시	2025-01-10 07:25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106	33하83**	이*성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23 20:19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107	197호55**	박*미	경기도 하남시	2024-12-20 19:33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8	59라38**	S*U*E*Y*V*E*I*A	충청북도 청주시	2025-01-08 10:3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9	01로60**	최*림	서울특별시	2025-01-09 19: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10	10거15**	임*영	서울특별시	2025-01-09 16:0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11	경기39바41**	김*용	경기도 안산시	2025-01-12 23:01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12	172무56**	제*앤*도*개*주*회*	경기도 안산시	2025-01-07 09:1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13	65소36**	김*웅	인천광역시	2025-01-10 19:40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114	68모82**	진*자	서울특별시	2025-01-07 09:15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9	50000
115	91누75**	박*유	경기도 광주시	2025-01-08 07:2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16	77저11**	조*자	서울특별시	2025-01-09 13:17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60000
117	328우77**	김*민	서울특별시	2025-01-10 14:4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18	152호89**	(*)*스*디*	전라남도 장성군	2024-12-31 14:3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9	815두33**	차*환	경기도 수원시	2025-01-07 08: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20	61거21**	채*욱	서울특별시	2025-01-08 09:58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21	72마99**	(*)*전*제*애*복*회	대전광역시	2025-01-09 11:41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122	35보16**	김*엽	부산광역시	2025-01-07 17:2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23	72마99**	(*)*전*제*애*복*회	대전광역시	2025-01-09 11:39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124	83노22**	최*춘	서울특별시	2025-01-09 16: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25	23노07**	임*택	경기도 부천시	2025-01-11 11:24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26	56누59**	E*G*M*A*M*H*M*D*A*A*K*M*L*O*A*E*	경기도 고양시	2025-01-07 07: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27	87고99**	김*조	경기도 부천시	2025-01-10 14:5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28	93더38**	(*)*스*워*	서울특별시	2025-01-08 08:2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29	72마99**	(*)*전*제*애*복*회	대전광역시	2025-01-09 07:55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30	85조65**	김*진	서울특별시	2025-01-11 07:08	광장아파트6동앞	50000
131	143모23**	김*연	대전광역시	2025-01-07 17:07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32	서울89자75**	이*구	서울특별시	2025-01-08 17:5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33	84구21**	김*정	경기도 가평군	2025-01-09 17:14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134	17부58**	한*희	인천광역시	2025-01-09 08:12	영등포역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5	335우85**	최*애	서울특별시	2025-01-08 18: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6	808로98**	H*A*G*U*A*	경기도 안성시	2025-01-10 10:3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37	59라38**	S*U*E*Y*V*E*I*A	충청북도 청주시	2025-01-08 10:3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38	251라77**	김*호	서울특별시	2025-01-11 17:06	상봉삼거리~망우역	50000
139	152호89**	(*)*스*디*	전라남도 장성군	2024-12-31 14:3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40	308주17**	지*이*비*주*	경기도 김포시	2025-01-11 18:1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41	87주30**	유*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025-01-11 17:2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42	150도48**	주*회*예*건*	서울특별시	2025-01-10 16:1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43	231모79**	주*회*윙*패*리*탄	경기도 화성시	2025-01-09 19:3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44	서울32사34**	서*민	서울특별시	2025-01-03 11:5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여의도동)	50000
145	334오77**	김*환	서울특별시	2025-01-07 09:2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46	199버79**	주*회*중*증*행*연*원	서울특별시	2025-01-07 16: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	50000
147	92소75**	산*조*주*회*	경기도 용인시	2025-01-08 07:1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48	221하95**	임*범	서울특별시	2025-01-03 19:4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49	805버26**	정*인	서울특별시	2025-01-11 10:0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50	131누19**	김*용	경기도 부천시	2025-01-12 11:0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51	34호78**	정*두	서울특별시	2025-01-04 16:3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52	299가81**	이*익	서울특별시	2025-01-08 17:4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53	서울31아69**	이*규	경기도 의정부시	2025-01-07 20:3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54	04저27**	이*석	서울특별시	2025-01-08 17:3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55	166허43**	주*회*스*이*너*이*	서울특별시	2025-01-02 14:02	사당역~남태령역	50000
156	91머60**	곽*철	서울특별시	2025-01-08 09:40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57	336구29**	이*구	경기도 안산시	2025-01-10 14:5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58	152호89**	(*)*스*디*	전라남도 장성군	2024-12-30 11:2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59	813모69**	윤*모	경기도 남양주시	2025-01-10 08: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60	65노21**	주*회*오*스*이*	경기도 양주시	2025-01-10 18:1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61	235어22**	뉴*트*코*아*주*	서울특별시	2025-01-09 12:3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62	17루61**	L*T*I*I*E*D*N*	경기도 안산시	2025-01-07 11:2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63	981우31**	김*우	대구광역시	2025-01-11 16:05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164	51가73**	L*L*N*N*N	경기도 수원시	2025-01-09 08:3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65	24주23**	주*회*세*랩*	서울특별시	2025-01-12 12:3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66	서울영등포카75**	이*운	서울특별시	2024-11-12 16:45	여의동로 63빌딩방향	40000
167	서울31자46**	이*현	서울특별시	2024-11-10 14:22	천호대로 답십리역6번출구앞	50000
168	서울91자42**	최*식	서울특별시	2025-01-07 13:1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69	52나93**	계*진	경기도 화성시	2025-01-07 12: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70	367주33**	(*)*라*	서울특별시	2025-01-09 07:3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71	26거16**	이*혜	경기도 고양시	2025-01-10 17:2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72	143수39**	H*A*G*E*E*	경기도 광명시	2025-01-07 09:2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73	112다41**	주*회*엑*데*터	서울특별시	2025-01-09 17:3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74	839거50**	강*현	서울특별시	2024-12-31 16:28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175	180노45**	김*원	부산광역시	2025-01-09 20:4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76	839거50**	강*현	서울특별시	2025-01-02 16:28	서울 송파구 잠실동 261	50000
177	49조44**	박*석	경기도 고양시	2025-01-09 07:1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78	191호72**	주*회*플*윔*스	서울특별시	2024-12-17 09:0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79	94더07**	홍*흥	경기도 의정부시	2025-01-07 08:3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80	서울36바18**	강*경	서울특별시	2025-01-03 12: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여의도동)	50000
181	75고92**	장*	서울특별시	2025-01-08 07: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60000
182	156호21**	안*환	서울특별시	2024-12-19 08:28	광화문우체국앞	50000
183	229호25**	강*인	서울특별시	2024-12-20 20:1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84	35머98**	최*인	서울특별시	2024-12-09 15:41	금천구청입구사거리~말미사거리	50000
185	126호94**	권*경	경기도 안산시	2024-11-21 06:52	고척교교차로~동양미래대학교앞교차로	50000
186	815어62**	진*이	경기도 성남시	2025-01-07 08:5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동)	50000
187	서울31아24**	강*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5-01-07 09:4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88	49머81**	문*희	서울특별시	2025-01-10 07:5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9	서울32아50**	박*근	서울특별시	2025-01-06 10:4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5 (삼성동)	50000
190	91더47**	진*철	서울특별시	2025-01-08 17: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91	51수61**	김*섭	인천광역시	2025-01-07 07:1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92	19머86**	이*섭	서울특별시	2025-01-04 08:4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93	서울38아82**	정*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1-10 09:4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94	825주46**	이*우	서울특별시	2025-01-09 09:0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95	서울31아81**	김*남	전라남도 함평군	2025-01-10 09: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6	82더39**	박*아	경기도 하남시	2025-01-08 11:5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97	경기부천가71**	이*회	경기도 부천시	2025-01-02 11:53	종로3가역~종로5가	40000
198	서울중카12**	문*식	서울특별시	2025-01-02 11:53	종로3가역~종로5가	40000
199	경기45바56**	김*기	경기도 고양시	2025-01-09 19:52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200	116허72**	박*우	서울특별시	2024-12-26 09:57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01	116허72**	박*우	서울특별시	2024-12-31 12:2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02	81거81**	김*태	서울특별시	2025-01-08 08:4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03	인천30바29**	권*형	인천광역시	2025-01-07 19:0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04	116나87**	김*환	서울특별시	2024-12-31 20:4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05	116나87**	김*환	서울특별시	2024-12-31 20: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06	221하52**	유*창	서울특별시	2024-12-22 08:20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07	23마78**	김*숙	경기도 안양시	2025-01-08 09:18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08	226노34**	우*식	서울특별시	2025-01-09 12:2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09	293마97**	차*림	서울특별시	2025-01-07 16: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	50000
210	서울98사67**	이*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5-01-10 08:3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60000
211	서울31사80**	신*곤	경기도 용인시	2025-01-07 02:1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12	201머90**	최*백	서울특별시	2025-01-08 09:2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13	서울32자59**	정*화	경기도 광주시	2025-01-07 15:4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14	73누51**	개*운*주*회*	서울특별시	2025-01-08 09:50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60000
215	서울84자32**	채*민	서울특별시	2025-01-09 07:2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6	06조72**	김*동	경기도 고양시	2025-01-07 18:5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17	64저40**	박*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5-01-10 10:3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18	155누11**	한*숙	서울특별시	2025-01-09 09:4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19	125하23**	주*회*서*	서울특별시	2024-12-23 18:4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20	서울31사85**	윤*운	서울특별시	2025-01-09 09:0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21	19서23**	김*수	경기도 의왕시	2025-01-09 09:39	장지교교차로	50000
222	경기48바51**	황*천	경기도 남양주시	2025-01-09 09:07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223	193호94**	조*희	경기도 광주시	2024-12-20 09:0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24	서울31사28**	장*식	서울특별시	2025-01-11 13:25	반포역~주홍교	50000
225	23조39**	(*)*성*싸*클*	충청남도 아산시	2025-01-08 07:4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26	68머31**	최*열	경기도 남양주시	2025-01-10 18:4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27	221하26**	전*복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31 09:37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28	221하26**	전*복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30 09:3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29	서울31자26**	김*호	서울특별시	2025-01-10 11:5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0	12우77**	유*연	서울특별시	2025-01-10 19:3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31	42고77**	방*우	서울특별시	2025-01-12 17:51	영등포역	50000
232	서울31자61**	현*목	서울특별시	2025-01-07 20:45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50000
233	350라85**	고*훈	경기도 부천시	2025-01-07 17:3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34	175러86**	윤*덕	경기도 시흥시	2025-01-10 12:15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50000
235	185두31**	임*식	서울특별시	2025-01-08 08: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36	60노76**	장*숙	서울특별시	2025-01-09 12:0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여의도동)	50000
237	87로37**	박*애	서울특별시	2025-01-08 08:02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238	서울31바77**	이*호	서울특별시	2025-01-10 09: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9	서울32아20**	김*영	서울특별시	2025-01-10 08:21	노원역~상계백병원교차로	50000
240	83오12**	손*숙	서울특별시	2025-01-10 17:5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241	09버42**	강*원	서울특별시	2025-01-10 09:25	개화사거리~김포공항사거리	50000
242	서울55러36**	임*자	서울특별시	2025-01-08 18:5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3	96가09**	강*중	인천광역시	2025-01-10 16:0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44	26러81**	김*자	서울특별시	2025-01-07 17:1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245	경기93자42**	조*순	경기도 김포시	2025-01-08 11:4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46	191라14**	박*갑	경기도 오산시	2025-01-08 14:23	압구정로 한양3차아파트앞	50000
247	248오72**	전*자	서울특별시	2025-01-08 09:41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48	서울31아32**	송*섭	서울특별시	2025-01-10 09:3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49	60버11**	R*C*A*D*T*M*T*Y*D*A*D*	충청남도 서산시	2025-01-09 20:1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50	221호97**	강*우	서울특별시	2024-12-27 09: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51	221하26**	전*복	경기도 남양주시	2025-01-02 09:16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52	153하57**	(*)*영*설	인천광역시	2025-01-06 19:3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53	159호28**	윤*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31 19:0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54	86무04**	소*원	경기도 오산시	2025-01-07 13:0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55	70로93**	김*수	서울특별시	2025-01-08 08:4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60000
256	45보08**	박*준	부산광역시	2025-01-09 19:27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0 (신사동)	50000
257	130하22**	(*)*노*림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24 18:1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58	서울31사85**	신*철	경기도 하남시	2025-01-08 20: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59	812노42**	(*)*로*정*통*	서울특별시	2025-01-08 10:4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60	경기85자57**	(*)*이*이*합*류	경기도 부천시	2025-01-08 01:4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61	62오91**	송*준	서울특별시	2025-01-09 18:5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62	27서01**	백*걸	경상북도 영천시	2025-01-10 08:1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263	47도39**	조*철	서울특별시	2025-01-12 18:25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264	006라72**	주*회*케*이*씨	서울특별시	2025-01-09 09:15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60000
265	서울31사40**	하*식	서울특별시	2025-01-10 08:1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66	54어10**	이*철	서울특별시	2025-01-08 20:54	윤중초교앞교차로~여의도역	50000
267	42러90**	임*식	경기도 광주시	2025-01-10 18:1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68	368조42**	이*배	서울특별시	2025-01-07 18: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69	31나97**	윤*태	서울특별시	2025-01-07 16:2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70	11노50**	주*회*디*아	인천광역시	2025-01-10 16:4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71	107부68**	정*범	서울특별시	2025-01-10 17:2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72	303머39**	K*N*A*Y*N*A*A*A*E*N*	충청남도 아산시	2025-01-11 15:1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73	116허72**	주*회*저*트*트*	충청남도 공주시	2025-01-11 16:4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74	20어04**	김*희	광주광역시	2025-01-09 18: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75	170더49**	주*회*케*아*씨*글*벌	서울특별시	2025-01-10 17:2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276	68버02**	(*)*록*	경기도 포천시	2025-01-07 18:2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77	179저93**	주*회*바*칼*코	서울특별시	2025-01-07 20:4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78	342가32**	S*N*H*	인천광역시	2025-01-09 09: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9	81고33**	전*형	서울특별시	2025-01-07 18:2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80	296고38**	김*봉	서울특별시	2025-01-09 12:09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281	49나03**	채*철	서울특별시	2025-01-10 10:32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82	76다65**	한*천	경기도 광주시	2025-01-08 13:53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283	41부71**	박*용	부산광역시	2025-01-08 16:3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84	82너21**	명*자	경기도 파주시	2025-01-09 07: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85	서울32사34**	서*민	서울특별시	2025-01-09 12: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여의도동)	50000
286	서울31사34**	이*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1-07 11:27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50000
287	서울38아36**	최*범	서울특별시	2025-01-09 07:59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88	81다37**	원*기	서울특별시	2025-01-08 11:1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50000
289	221하52**	유*창	서울특별시	2024-12-22 08:1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90	82로59**	선*옥	서울특별시	2025-01-07 09: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91	52허04**	을*회*	경기도 남양주시	2024-12-23 08:50	화랑대사거리~화랑대역	50000
292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5-01-08 17: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93	204마10**	김*국	인천광역시	2025-01-07 07:1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94	서울31자50**	전*철	서울특별시	2025-01-10 15:2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95	23너34**	이*옥	서울특별시	2025-01-11 20:08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96	46머38**	김*자	서울특별시	2025-01-08 09:2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97	79러15**	정*선	경기도 양주시	2025-01-08 13:23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60000
298	248더88**	오*택	경기도 남양주시	2025-01-09 09:10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299	810루16**	장*연	충청남도 천안시	2025-01-12 17:3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00	40수48**	한*윤	서울특별시	2025-01-07 08: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01	20도39**	이*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5-01-08 09:3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02	95부83**	심*걸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5-01-09 08: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03	209저20**	박*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1-08 20:42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304	162허64**	주*회*알*초*바*오	서울특별시	2024-12-31 17:2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05	서울32자57**	최*현	서울특별시	2025-01-08 18:3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06	24도39**	유*	경기도 성남시	2025-01-02 22:30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50000
307	30라29**	정*호	서울특별시	2025-01-09 08:54	공릉동 오일뱅크 회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08	201러13**	(*)*무	경기도 의정부시	2025-01-06 17:01	서울 노원구 공릉동 583-2	50000
309	166무31**	주*회*우*록*엔*테*먼*	서울특별시	2025-01-08 17:4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10	41보52**	박*귀	서울특별시	2025-01-09 18:0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11	02무15**	이*영	서울특별시	2025-01-09 13:56	영등포역	50000
312	65노51**	이*호	경기도 용인시	2024-11-30 16:16	한남IC~잠원IC	50000
313	22머60**	원*피*대*주*회*	경기도 성남시	2025-01-07 20: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14	26모79**	홍*섭	인천광역시	2025-01-10 17: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15	10더71**	G*O*A*K*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01-10 12:2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16	서울31사45**	박*기	서울특별시	2025-01-08 09: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17	282모55**	T*S*B*E*A*M*R*	인천광역시	2025-01-11 19:5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18	275서17**	K*I*H*G*A*A*I*N*A*A*	경기도 수원시	2025-01-07 17:0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19	89버64**	곽*삼	서울특별시	2025-01-10 11:16	양남사거리~영등포유통상가교차로	50000
320	인천30바77**	김*철	인천광역시	2025-01-07 08:4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21	32루08**	김*수	서울특별시	2025-01-08 18:2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 빙 서 류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륜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542호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발굴된 시유특허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해외특허권)의 사업화로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43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유 시유특허권에 대한 실시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유특허권의 정의
○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입니다.

2.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처분종류: 통상실시권 허락)
가. 국내 시유특허권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특허	1	복공판	10-0665967	2007-01-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	신축이음장치의 고무씰 보호부재	10-0700947	2007-03-2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3	막분리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의 막오염 지수 연속 모니터링에 의한 응집 전처리공정 제어장치및 그 방법	10-0720139	2007-05-1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4	막분리 정수처리장치의 수질 등급코드를 이용한 운전모드 선택장치및 그 운영방법	10-0720140	2007-05-1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5	빗물받이 받침대	10-0747772	2007-08-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6	기초 구조물과 분리 결합이 용이한 가로등주	10-0775816	2007-11-0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7	미끄럼방지용 다짐롤러장치	10-0784031	2007-12-0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8	자동제어를 이용한 선택적 전처리 막여과 고도처리장치 및 그 방법	10-0791896	2007-12-2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9	안정기 수납부가 형성된 보수용 커버를 갖는 가로등주	10-0796449	2008-01-15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0	수도관의 부식 억제 방법	10-0797847	2008-01-1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1	미세먼지 청소차	10-0810152	2008-02-27	통상실시권 허락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특허	12	약품 및 케익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시스템	10-0834690	2008-05-2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3	2단 침지형 막여과조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	10-0843656	2008-06-2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4	수도의 절수장치	10-0848466	2008-07-1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5	약품 및 케익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방법 및 처리시스템	10-0852939	2008-08-1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6	하수관거 차수로봇용 가물막이 수밀 패널	10-0886461	2009-02-2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7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10-0890246	2009-03-1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8	누설방지장치	10-0922996	2009-10-1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9	식생블록 녹화용 모듈	10-0925849	2009-11-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0	수도관의 급속동결장치	10-0936841	2010-01-0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1	정밀하게 부피를 잴 수 있는 일정용적을 갖는 용량코니칼 튜브	10-0947767	2010-03-0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2	다기능세척장치	10-0952293	2010-04-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3	이동식 소방호스 두루마리 장치	10-0955096	2010-04-2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4	후타재가 필요없는 교량용 핑거 조인트 결합 구조물	10-0957696	2010-05-0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5	펌프의 실링수 공급밸브	10-0970322	2010-07-0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6	방음벽 지주의 연결구조물	10-0976636	2010-08-1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7	부식성이 조절된 수돗물의 공급방법	10-0979250	2010-08-25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8	바아형상의 파지부를 구비한 소화기	10-0982443	2010-09-0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9	하수도 맨홀용 역지변	10-0994795	2010-11-1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30	수도계량기 교체공구	10-1005335	2010-12-2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31	침전슬러지 배출유동화 장치	10-1019206	2011-02-2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32	무동력으로 초기 기동가능한 펌프 시스템	10-1042676	2011-06-1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33	전염소 투입률 산출 시스템 및 방법	10-1043521	2011-06-15	통상실시권 허락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특허	34	부유물 제거장치	10-1069375	2011-09-2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35	제설제 재활용장치	10-1074857	2011-10-1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36	수영장 청소시스템	10-1081507	2011-11-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37	자가공기호흡장치	10-1083726	2011-11-0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38	필지경계점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10-1090346	2011-11-3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39	음식물 쓰레기통	10-1131124	2012-03-15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40	투수포장재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 및 방법	10-1131767	2012-03-2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41	수증기 응결이 발생하지 않는 계량기의 카운터 제조방법	10-1164601	2012-07-0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42	표면장력 저감을 이용한 막의 완결성 시험방법	10-1164600	2012-07-0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43	화재진압용 복합형 소화장치	10-1168210	2012-07-1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44	전력절감을 위한 맥동식침전지 운영 방법	10-1178601	2012-08-2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45	정수지 또는 배수지 내에서 유수의 정체부 형성을 방지하는 베플	10-1179008	2012-08-2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46	수도계량기 카운터 걸림 검사장치	10-1179023	2012-08-2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47	복합형 빗물받이 뚜껑 및 그 시공구조	10-1188005	2012-09-2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48	목조 건축물의 적심층 화재진압용 분사노즐을 구비한 분사건	10-1188064	2012-09-2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49	DMP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10-1188092	2012-09-2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50	급수관 구경확대를 위한 새들붙이 분수전 무단수 차단장치	10-1195199	2012-10-2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51	상수도용 자석 부착형 스트레이너	10-1195200	2012-10-2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52	DMP 개질 아스팔트 및 그 제조방법	10-1195201	2012-10-2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53	유지보수 발판이 구비된 도로 전광표지	10-1197458	2012-10-3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54	수도관용 동결 해빙못 시공구조	10-1205468	2012-11-2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55	오거 장비용 가림막 장치	10-1224693	2013-01-15	통상실시권 허락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특허	56	투수 포장 구조체	10-1225072	2013-01-1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57	요동방지 호스 지지체	10-1234541	2013-02-1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58	수용액 내 암모니아성질소의 측정방법	10-1244614	2013-03-1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59	국지도로용 광방향성 반사블록을 구비한 BUG제어 LED조명등	10-1259539	2013-04-2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60	휴대형 검사장치	10-1279624	2013-06-2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61	굴착방지 가변형 제수밸브	10-1279625	2013-06-2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62	내식성이 향상되는 수도시설용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의 용접부 후처리방법	10-1309980	2013-09-1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63	방화 커튼 장치	10-1343047	2013-12-1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64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이동단말기	10-1345266	2013-12-1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65	고분자를 이용하여 알갱이 형태로 가공한 안료 및 이를 포함하는 장수명 칼라 아스팔트 조성물	10-1392414	2014-04-2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66	통합 건설 정보 관리 시스템	10-1395665	2014-05-0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67	토석류 저감장치	10-1395667	2014-05-0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68	장거리 분사용 방수포	10-1395664	2014-05-0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69	구명장치	10-1395669	2014-05-0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70	용적확장형 캐리어	10-1400949	2014-05-2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71	정수처리 공정에서 염소투입량 결정방법	10-1400950	2014-05-2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72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용 첨가제 및 첨가제가 포함된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혼합물	10-1424759	2014-07-2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73	정수 슬러지를 재활용한 다공성 조습보드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다공성 조습보드의 제조방법	10-1478422	2014-12-2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74	가교형 받침 구조물의 시공방법	10-1511265	2015-04-0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75	플라스터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10-1514809	2015-04-1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76	야간 관측이 용이한 하천 수위 측정장치	10-1519592	2015-05-0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77	흉부 압박 시스템	10-1532418	2015-06-23	통상실시권 허락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특허	78	슬래그의 치환 배합을 이용한 숏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숏크리트 공법	10-1533533	2015-06-2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79	계량기용 봉인장치 및 봉인방법	10-1537271	2015-07-1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80	배수지용 수돗물 재담수 시스템	10-1543736	2015-08-05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81	호흡면체 직결 공기정화용 어댑터	10-1551675	2015-09-0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82	물 유출 지연 장치	10-1551672	2015-09-0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83	출동정보전달 시스템	10-1567241	2015-11-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84	무장애 스마트 통신 장치 및 그 방법	10-1574201	2015-11-2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85	흙 콘크리트 조성물	10-1575791	2015-12-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86	슬라이딩 도어를 구비한 경량 덮개	10-1586825	2016-01-1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87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가진 모바일 웹 페이지 생성 장치 및 제공 시스템	10-1592496	2016-02-0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88	심폐소생술 실습장치 (1)	10-1610289	2016-04-0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89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출동 지령 전달 시스템	10-1614510	2016-04-15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90	이동자 흡식 부유물 제거장치	10-1642443	2016-07-1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91	물 흐름 감지형 제수밸브	10-1643173	2016-07-2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92	오염물질 시료 포집 장치	10-1648842	2016-08-1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93	라돈비적 판독방법	10-1668976	2016-10-1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94	차량의 비정상운행 관리 시스템 및 관리방법	10-1669975	2016-10-2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95	다기능 구조낭	10-1674165	2016-11-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96	복합 프로파일 및 이를 구비한 지주구조물	10-1683630	2016-12-0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97	중온화 펠렛형 아스팔트용 박리방지제 조성물 및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수분저항성이 우수한 중온화 아스팔트 혼합물	10-1687114	2016-12-0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98	분할식 라이닝폼을 이용한 아치형 터널의 시공방법	10-1687308	2016-12-1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99	다기능 안전면체	10-1692524	2016-12-28	통상실시권 허락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특허	100	등기구	10-1696149	2017-01-0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01	심폐소생술 실습장치 (2)	10-1705745	2017-02-0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02	환자 이송용 들것	10-1714316	2017-03-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03	다기능 안전벨트	10-1723634	2017-03-3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04	역류 방지용 수도 미터기	10-1739892	2017-05-1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05	조류퇴치장치	10-1743707	2017-05-3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06	도로포장용 차열성 도료조성물	10-1754943	2017-06-3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07	가로등 부하선로 측정장치 및 그 방법	10-1772823	2017-08-2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08	액상 탈황 촉매 및 이의 제조방법	10-1777084	2017-09-0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09	배출수지 순차제어 시스템 및 방법	10-1783095	2017-09-2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10	하수슬러지 소각재로부터 인(P)의 회수 방법	10-1785242	2017-09-2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11	유지관리가 용이한 프리캐스트 신축이음장치 및 시공방법	10-1785624	2017-09-2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12	소방용 스탠드 파이프	10-1796386	2017-11-0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13	프리스트레스 도입형 강재 및 이의 제작방법	10-1798416	2017-11-1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14	칼슘제를 이용한 수돗물 처리 시스템 및 방법	10-1805350	2017-11-2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15	하수관로 물 돌리기 시스템	10-1814880	2017-12-2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16	비산측정용 고효율 시료포집 장치	10-1824130	2018-01-25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17	밸브 상태 확인장치	10-1847732	2018-04-0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18	드레인 밸브	10-1861844	2018-05-2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19	고내구성 급경화 상온식 균열 보수제 제조방법	10-1864548	2018-05-2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20	고내구성 급경화 상온식 균열 보수제 시공 방법	10-1864547	2018-05-2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21	맨홀 덮개 개폐 장치	10-1865366	2018-05-31	통상실시권 허락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특허	122	비상 탈출 장치	10-1881455	2018-07-1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23	변형 가능한 환자 이송 장비	10-1889068	2018-08-0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24	분할식 라이닝폼을 이용한 아치형 터널의 시공방법	10-1906546	2018-10-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25	방수 겹이음 시공 공법 및 이를 위한 방수 겹이음 시공장치	10-1929499	2018-12-1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26	교량 무인 점검장치(와이어캠)	10-1934490	2018-12-2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27	포장체의 온도 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포장체의 차열성능 평가방법	10-1971609	2019-04-1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28	가림막 및 그 가림막을 이용한 들것	10-2006856	2019-07-2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29	발광 헬멧	10-2015243	2019-08-2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30	환기용 필터장치	10-2018002	2019-08-2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31	일차 슬러지를 재순환하는 것을 이용한 하수 처리장치	10-2020743	2019-09-0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32	교량의 배수 감시시스템	10-2044964	2019-11-0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33	어깨 지지부 및 이를 포함하는 주들것 (1)	10-2074580	2020-01-3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34	환자 맞춤형 경추 보호대	10-2079505	2020-02-1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35	어깨 지지부 및 이를 포함하는 주들것 (2)	10-2082100	2020-02-2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36	혼화장치	10-2086256	2020-03-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37	오존 및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에어 클린 마스크	10-2094097	2020-03-2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38	드론을 활용한 수중시설 안전점검 시스템	10-2099056	2020-04-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39	부식 평가 시험 장치	10-2101126	2020-04-0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40	영상통화 자동전환을 이용한 재난 신고 시스템 및 그방법	10-2113419	2020-05-1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41	자동 개폐구조를 갖는 그레이팅	10-2118165	2020-05-2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42	해충 제거 장치	10-2132565	2020-07-0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43	다기능 소방호스	10-2133095	2020-07-06	통상실시권 허락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특허	144	부식평가 실험 장치	10-2169118	2020-10-1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45	상수도관 내부 수중 촬영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상수도관 내부 촬영 방법	10-2169121	2020-10-1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46	링크 구조를 구비하여 공기통 교환이 용이한 공기호흡기	10-2169988	2020-10-2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47	전자석 체결구조를 구비하여 공기통 교환이 용이한 공기호흡기	10-2169987	2020-10-2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48	시인성이 향상된 안전핀을 구비한 소화기	10-2170301	2020-10-2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49	올림식 사다리 지지 장치 및 이를 설치하는 설치 방법	10-2175339	2020-11-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50	전동식 압축기를 구비한 로프 발사총	10-2181877	2020-11-1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51	압축장치를 일체로 구비한 로프 발사총	10-2181838	2020-11-1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52	아우트리거 설치 위치의 표시가 가능한 특수차	10-2184187	2020-11-2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53	소방차량충돌 방지장치 및 소방차량 충돌방지 제어방법	10-2184190	2020-11-2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54	매설관 모니터링 장치	10-2185326	2020-11-25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55	휴대형 스마트 소방장비	10-2188041	2020-12-0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56	하수 처리장치에 사용되는 발전 및 발열 시스템	10-2188934	2020-12-0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57	하수슬러지의 인 회수용 필터프레스 장치 및 이를 통해 초음파를 이용한 인 회수 방법	10-2191378	2020-12-0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58	하수 처리 장치	10-2200986	2021-01-05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59	소화기호스 자동 올림을 위한 안전핀을 구비한 소화기	10-2209004	2021-01-2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60	소화기호스 자동올림장치를 구비한 소화기	10-2209001	2021-01-2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61	염화칼슘 등 제설제에 의한 피해방지 장치	10-2229151	2021-03-1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62	보수 핀을 이용하여 오염을 제어하는 여과막 모듈	10-2247721	2021-04-2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63	도시형 침수 체험 시스템	10-2252131	2021-05-1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64	지하철 영상효과 및 급정거 체험시스템	10-2256610	2021-05-2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65	고압에어를 이용한 상수도권 세척장치	10-2259539	2021-05-27	통상실시권 허락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특허	166	하수관로 메탄가스 폭발 실험장비	10-2283462	2021-07-2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67	하수처리장치의 응집제 분산 투입방법	10-2289906	2021-08-0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68	여과지 내의 활성탄층 역세척 시스템	10-2294957	2021-08-2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69	소방 훈련용 장치	10-2295387	2021-08-2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70	고전압을 이용한 동물 포획장치	10-2298039	2021-08-3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71	세척브러쉬를 이용한 상수도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10-2300901	2021-09-0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72	수질사고 방지 시스템	10-2313085	2021-10-0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73	구조용 리프트 장치	10-2313671	2021-10-1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74	지주결합용 블록형 함체	10-2314505	2021-10-1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75	전자동 소화전 개폐장치	10-2318503	2021-10-2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76	안전난간 구조체	10-2325549	2021-11-0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77	중앙분리대 자동개폐 시스템	10-2337001	2021-12-0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78	전기안전 교육장비	10-2390914	2022-04-2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79	교량 추락사고 방지장치	10-2401106	2022-05-1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80	상수도관 잔류염소 제어방법	10-2415636	2022-06-2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81	안전 방화 셔터	10-2420227	2022-07-0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82	배수지 유출 유량 산출시스템	10-2424110	2022-07-1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83	차고 초고속 수관건조장치	10-2426685	2022-07-25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84	관창사다리	10-2427899	2022-07-2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85	전기차 충전소가 구비된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모듈 결합형 스마트 폴	10-2429277	2022-08-0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86	드론 스테이션이 구비된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모듈 결합형 스마트 폴	10-2429271	2022-08-0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87	잉여슬러지를 반류수 및 하수처리공정으로 공급하는 하수 처리 장치	10-2431186	2022-08-05	통상실시권 허락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특허	188	원터치 폴딩형 질식소화포 전기차량 화재진압장치	10-2452851	2022-10-05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89	보행자용 바닥 신호등 장치	10-2460291	2022-10-25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90	차량화재진압용 상방방사관창	10-2474445	2022-12-0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91	온도센서를 구비한 소방장갑	10-2475353	2022-12-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92	활성탄 팽창률 측정장치	10-2475354	2022-12-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93	부상식 수조형 전기차 화재진압장치	10-2475355	2022-12-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94	영양염류의 회수 및 처리가 가능한 반류수 처리시스템	10-2477025	2022-12-0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95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성분을 제어하는 방법	10-2485386	2023-01-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96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장치	10-2491008	2023-01-1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97	질식소화포를 상단에 구비한 튜브형 전기차 화재진압장치	10-2539154	2023-05-2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98	개선된 수중교각 청소장치	10-2079903	2020-02-1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199	휴대 가능한 연기차단어셈블리	10-2478647	2022-12-1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00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위한 광학 센서의 교정 방법 및 장치	10-2390910	2022-04-2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01	소방호스의 고층 이송을 위한 호스 지지 중계기	10-2572494	2023-08-25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02	소방차 자체분무 자동화시스템	10-2577798	2023-09-0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03	휴대용 자동심폐소생장치	10-2554486	2023-07-0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04	높이 상승 기능을 갖는 투신자살 방지용 안전휀스	10-2554348	2023-07-0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05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세먼지 예측시스템	10-2594820	2023-10-2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06	안전덮개	10-2605569	2023-11-2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07	유출 트러프에 설치되는 이물질 필터링 장치	10-2623669	2024-01-0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08	소방용 라이트 라인 장치	10-2623673	2024-01-0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09	미세플라스틱 입자 포집기	10-2623676	2024-01-08	통상실시권 허락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특허	210	응집제 주입 감시 시스템 및 이것을 이용한 응집제주입 감시 방법	10-2638855	2024-02-1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11	상수도 관로의 자동 드레인 시스템	10-2643359	2024-02-28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12	사출 형태의 변경이 가능한 노즐 장치 및 노즐 사용자 경고 시스템	10-2644354	2024-03-0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13	자동 수관 정리 및 건조대	10-2648490	2024-03-1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14	소방용 공기 호흡기	10-2651183	2024-03-2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15	투신자살 방지용 안전휀스 어셈블리	10-2659167	2024-04-1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16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상수도 원격 검침 이상 데이터의 감시 및 교정하는 방법	10-2665080	2024-05-0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17	고가 사다리차	10-2666225	2024-05-1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18	수도관 세척 성능 평가 시스템 및 수도관 세척 성능 평가 방법	10-2666969	2024-05-1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19	침수 대응을 위한 차량 진입 차단 장치	10-2668881	2024-05-2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20	차량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장비	10-2671916	2024-05-3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21	전기차량의 소방용 상부 관통형 관창	10-2672107	2024-05-3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22	크기 조절이 가능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10-2673899	2024-06-0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23	배급수관 내부의 고형물 생성 방지용 부식억제제 투입장치	10-2675295	2024-06-11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24	접이식 헬멧을 구비하여 신속 착용이 가능한 면체	10-2682286	2024-07-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25	신속 착용이 가능한 소방용 면체 결합형 헬멧	10-2682287	2024-07-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26	스마트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옥내 누수 조기 감시 시스템	10-2688759	2024-07-23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27	응급 처치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전자기기	10-2690593	2024-07-29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28	워터백을 활용한 도심 저지대 침수장비 장치	10-2691119	2024-07-3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29	접이식 전기차 화재 진압 수조	10-2696985	2024-08-1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30	정수처리 공정의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용 여과 장치	10-2701000	2024-08-27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31	배관 타입의 초고속 자동 수관 세척 건조 및 정리장치	10-2701414	2024-08-28	통상실시권 허락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특허	232	전기차량의 화재 진압 장치	10-2703110	2024-09-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33	경보 및 잔류 전류 감지 기능을 구비한 스마트 안전화 시스템	10-2703111	2024-09-02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34	전기차량의 이동 기능을 구비한 타공형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	10-2709908	2024-09-20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35	차량 침수 및 전복 체험 장치, 이를 이용한 체험 방법	10-2711692	2024-09-25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36	초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도보용 내비게이션 방법 및 장치	10-2572024	2023-08-24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37	소방용 위치 기반 경보 단말	10-2719700	2024-10-1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38	높이조절과 독립 폼 방수가 가능한 방수총	10-2728829	2024-11-0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39	미세 플라스틱의 다단 여과 장치	10-2744433	2024-12-1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40	좌우분리 배광을 갖는 풀 컷오프 비대칭 등기구	10-2333771	2021-11-26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	241	일산화탄소 감지하는 스마트릴선유닛	10-2746679	2024-12-20	통상실시권 허락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실용신안	1	다기능 방화담요	20-0481506	2016-10-04	통상실시권 허락
실용신안	2	그레이팅 개폐기	20-0481637	2016-10-19	통상실시권 허락
실용신안	3	친환경 교육용 원형 상자텃밭	20-0483156	2017-04-04	통상실시권 허락
실용신안	4	소형 LED 식물재배기 자동관수장치	20-0484008	2017-07-12	통상실시권 허락
실용신안	5	다짐도 평가장치	20-0485051	2017-11-16	통상실시권 허락
실용신안	6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장치	20-0485115	2017-11-22	통상실시권 허락
실용신안	7	제설제 살포장치용 비산방지장치	20-0486350	2018-04-27	통상실시권 허락
실용신안	8	대기전력 차단용 검전 플러그	20-0487241	2018-08-20	통상실시권 허락
실용신안	9	고임목	20-0490522	2019-11-19	통상실시권 허락
실용신안	10	분사장치	20-0492709	2020-11-23	통상실시권 허락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디자인	1	가로등	30-0723292	2013-12-26	통상실시권 허락
디자인	2	가로등	30-0743445	2014-05-09	통상실시권 허락
디자인	3	수도용 가변 이형관	30-0752119	2014-07-08	통상실시권 허락
디자인	4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30-0814722	2015-09-07	통상실시권 허락
디자인	5	맨홀받침 블록(1)(2)	30-0902711 -0001/0002	2017-04-07	통상실시권 허락
디자인	6	관이음매용 플랜지(거치대를 장착한 밸브)	30-0902760	2017-04-07	통상실시권 허락
디자인	7	상수도용 공기밸브 뚜껑	30-0908245	2017-05-22	통상실시권 허락
디자인	8	창문 비상탈출용 브래킷	30-0962209	2018-06-21	통상실시권 허락
디자인	9	교습구(엉덩이 빵빵)	30-1015835	2019-07-15	통상실시권 허락
디자인	10	저금통	30-1102997	2021-03-30	통상실시권 허락
디자인	11	휀스	30-1142145	2021-12-10	통상실시권 허락
디자인	12	휀스	30-1159841	2022-04-12	통상실시권 허락
디자인	13	나비 애벌레 사육키트	30-1258673	2024-04-23	통상실시권 허락
디자인	14	넥타이	30-1225055	2023-07-18	통상실시권 허락
디자인	15	마우스 패드	30-1248754	2024-01-30	통상실시권 허락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또는 서울시)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나. 해외 시유특허권

구분	연번	발명의명칭	국가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비고
특허	1	흉부압박시스템	일본	6391497	2018-08-31	통상실시권 허락	국내특허 10-1532418
특허	2	흉부압박시스템	일본	6598931	2019-10-11	통상실시권 허락	국내특허 10-1532418
특허	2	소화장치	중국	103372271	2016-03-16	통상실시권 허락	국내특허 10-1188064 10-1168210

구분	연번	발명의명칭	국가	등록번호	등록일	처분종류	비고
특허	3	소화장치	일본	5681748	2015-01-16	통상실시권 허락	국내특허 10-1188064 10-1168210
특허	4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미국	8834711	2014-09-16	통상실시권 허락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5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중국	102066271	2013-09-11	통상실시권 허락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6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일본	5356512	2013-09-06	통상실시권 허락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7	조류퇴치장치	미국	9655358	2017-05-23	통상실시권 허락	국내특허 10-1743707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각 시유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전역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3. 신청방법

가. 기 간 : 수시접수 가능

나. 방 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창의행정담당관

· 이메일 : nusnuh@seoul.go.kr

다. 구비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4. 신청자격

○ 대상 시유특허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해외특허)의 실시 가능업체(사업자등록 업체)

5.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계약대상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한다.

나. 통상실시권에 대한 실시료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 다만, 시유특허권 실시료 견적금액은 수의계약신청서에 기재한다.

※ 실시료 견적금액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 : 기본 3%.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할 수 있음

라. 실시료 견적금액은 예상 금액을 기재할 뿐 계약기간 만료 후 실제납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

마. 공공성 · 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사. 계약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등본(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경우 법인인감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이 된 이후에는 제품 홍보를 위해 계약자의 업체명, 대표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일부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6. 계약 및 실시료 정산 방법

가. 계약대상자가 결정되면 계약대상자에 한해 실시를 위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나. 계약내용

1) 실시기간은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으로 한다.

※ 특허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구조물 및 처리시스템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본 공고와 별도로 특허가 반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로 한다.

2)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및 제품의 판매단가 기준은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수량 및 가격으로 한다.

3) 실시료 견적금액 산정식의 점유율은 계약 체결시 협의하여 확정한다.

4) 기본율은 기본 3%로 하여 년 단위로 실시료를 산정*한다.

*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조정 할 수 있음

다. 지정된 처분범위와 견적금액을 내용으로 계약서 확인과 함께 서울시가 날인한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2부)”에 계약대상자 날인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시유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정산내용

1)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년 단위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확인하여 실시료 납부액을 산정한다.

※ 실시료 산정식 = 제품의 총판매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 총판매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계약 체결시 확정함)
- 기본율 : 기본 3% (계약 체결시 확정함)

2) 실시료 정산시 실시실적 증빙서류로 총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 1부를 제출한다.

3)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는 해당제품의 재고자산수불부, 거래처별 납품내역서, 제품판매현황자료, 회계장부,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은 과세서류 등 공인된 제품별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4) 실시료 매출액 미발생시 사유서 제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7. 문의처

○ 기타 시유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권 설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정훈선 주무관(☎ 02-2133-7824, nusnuh@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의 계 약 신 청 서

(시유특허권 처분)

신청인	① 명칭(대표자)	*(예시)* ***(주) 기업체명 (홍길동)***	②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권 리 의 표 시		*(예시) 특허등록 제10-0000000호*		
⑤ 발명 (고안) 의 명칭				
⑥ 처 분 의 종 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 시 범 위		기 간 : 202 . . - 202 . . (년간) 지 역 : 대한민국 전역 내 용 : 특허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⑧ 견 적 금 액		*(예시) 금 960천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당해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사 업 계 획 서(예시)

1. 회 사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mail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수(명)			

2. 회 사 연 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대표자 이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경력	기간	기업체명	주생산 품목	최종직위

4. 인 원 현 황

부서명	경영직	사무직	영업직	…	**합계**
인사/총무					
생산					
영업					
⋮					
합계					

5. 시유특허 사업화 추진계획

① 당해 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②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실 시 료 견 적 서

권리의 표시	특허 제 호
발명의 명칭	
실시료 견적금액	*금 960천원*

[예시]

○ 실시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100개
- 제품의 판매단가/단위 : 400천원/개
- 점유율 : 80%
- 기본율 : 3%
※ 해당제품의 경우 특허10-00000호의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바 점유율 80%로 신청함
○ 실시료 산출금액
- 100개 × 400천원/개 × 80% × 3% =960천원

※ 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판 매 단 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 유 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 본 율 : 3%

202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이사 홍길동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543호

성북구 보문동5가 14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08호(2021.7.1.)호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5가 14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로 인한 공급촉진지구 지정의 해제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2025. 2. 20. ~ 2025. 3. 6.(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2.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 청년주택운용팀(02-2133-6292)
3. 열람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성북구 보문동5가 14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5가 146-1 일원
      ○ 면 적 : 1,157.9㎡
   나.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21년 07월 01일
   다.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
   라. 도시관리계획사항 : 준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환원)·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
4. 관계도서 :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청년주택운용팀(02-2133-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 규]

◈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72호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 호 정㊞
2025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다만, 제6조 각 항의”를 “다만, 제7조 각 항의”로 한다.

제6조 중 “참관단체 · 부서는”을 “소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참관을 희망하는 자는”으로 하고,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의 단체참관은 10인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연간 의사일정에 따라 비회기중 평일로 한다”를 “연간 의사일정에 따라 비회기중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회기중 평일에도 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참관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의 “1층 로비 및 본회의장”을 “의회의사당 1층 로비 및 본회의장”으로 제2호의 “2층 복도”를 “의회의사당 2층 복도”로 한다.

제7조 제5항 “사무처장은 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회 홍보책자를 국문과 외국어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관의 기념이 되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별지 서식】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단체참관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신청서”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참관의 허가) 참관은 의회의원·의회 소속 5급이상의 공무원의 소개 또는 참관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에 따라 사무처장이 허가한다. 다만, 제6조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허가한 경우 참관할 수 있다.	제5조(참관의 허가) ---------- ---------- ---------- ---------- ----------. -- 제7조 -------- ---------- ----------
제6조(참관의 신청) 참관단체·부서는 참관 희망일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참관의 신청) 소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참관을 희망하는 자는 - ----------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의 단체참관은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참관의 운영) ① 참관기간은 서울특별시의회 연간 의사일정에 따라 비회기 중 평일로 한다.	제7조(참관의 운영) ① ---------- ---------- 비회기중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회기중 평일에도 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참관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참관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로비 및 본회의장. 다만, 본회의장 단상 및 의원석은 허가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③ ----------. 1. 의회의사당 1층 로비 및 본회의장. ---------- ----------.

2. 2층 복도	2. 의회의사당 2층 복도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사무처장은 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회 홍보책자를 국문과 외국어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관의 기념이 되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별지 서식] 서울특별시의회 단체참관 신청서	[별지 서식]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신청서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회기 중에도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참관신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참관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오류사항을 정정(안 제5조)

나. 의원 및 공무원 소개 참관 시에도 참관 신청서를 제출토록 명시하고, 단체의 신청에 따른 참관인원을 10명 이상으로 규정(안 제6조)

다.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회기중 평일에도 참관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1항)

라. 참관 구역을 의회의사당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7조제3항)

마. 의회 홍보책자 활용 및 참관의 기념이 되는 기념품 제공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73호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 호 정 인
2025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전문위원실) 및 실 · 담당관은 여론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 및 결과 공개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여론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홍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시민여론조사 의뢰서

번 호			
제 목			
위원회·부서명		조사방법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규모 (표본수)	
조사시기		활용시기	
조사목적			
주 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활용계획			
조사결과 언론보도 계획			
기 타			

(신청 의원명: , 담당자:)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부서) 여론조사 의뢰서를 제출함.

위원장(실·담당관) ○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

시민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

번 호						
제 목						
위원회·부서명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 수)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목적						
주 요 조사결과 (요 약)						
조사결과 활용실적	조례 제개정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언론보도	기타	공개여부
향후 활용 계획						
기 타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부서) 활용실적보고서를 검토하였음.

위원장(실·담당관) ○ ○ ○(서명 또는 날인)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7조(활용실적 제출)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전문위원실) 및 실·담당관은 여론조사 종료 후 결과 및 결과 공개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홍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 경>
별지 제1호(여론조사의뢰서)

시민여론조사 의뢰서

<table>
<tr><td>번 호</td><td colspan="3"></td></tr>
<tr><td>제 목</td><td colspan="3"></td></tr>
<tr><td>위원회/부서명</td><td></td><td>조사방법</td><td></td></tr>
<tr><td>조사대상
(모집단)</td><td></td><td>조사규모
(표본수)</td><td></td></tr>
<tr><td>조사시기</td><td></td><td>활용시기</td><td></td></tr>
<tr><td>조사목적</td><td colspan="3"></td></tr>
<tr><td>주 요
조사내용</td><td colspan="3"></td></tr>
<tr><td>조사결과
활용계획</td><td colspan="3"></td></tr>
<tr><td>조사결과
언론보도
계획</td><td colspan="3"></td></tr>
<tr><td>기 타</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 의원명: , 담당자:)</td><td>별지 제1호(여론조사의뢰서)

시민여론조사 의뢰서

<table>
<tr><td>번 호</td><td colspan="3"></td></tr>
<tr><td>제 목</td><td colspan="3"></td></tr>
<tr><td>위원회/부서명</td><td></td><td>조사방법</td><td></td></tr>
<tr><td>조사대상
(모집단)</td><td></td><td>조사규모
(표본수)</td><td></td></tr>
<tr><td>조사시기</td><td></td><td>활용시기</td><td></td></tr>
<tr><td>조사목적</td><td colspan="3"></td></tr>
<tr><td>주 요
조사내용</td><td colspan="3"></td></tr>
<tr><td>조사결과
활용계획</td><td colspan="3"></td></tr>
<tr><td>조사결과
언론보도
계획</td><td colspan="3"></td></tr>
<tr><td>기 타</td><td colspan="3"></td></tr>
</table>
(신청 의원명: , 담당자:)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부서) 여론조사 의뢰서를 제출함.
위원장(실·담당관) ○ ○ ○(서명 또는 날인)</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별지 제2호(여론조사 활용실적보고서)

시민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

<table>
<tr><td>번 호</td><td colspan="5"></td></tr>
<tr><td>제 목</td><td colspan="5"></td></tr>
<tr><td>위원회·부서명</td><td colspan="2"></td><td>조사방법</td><td colspan="2"></td></tr>
<tr><td>조사대상</td><td colspan="2"></td><td>조사규모
(표본 수)</td><td colspan="2"></td></tr>
<tr><td>조사기간</td><td colspan="2"></td><td>조사기관</td><td colspan="2"></td></tr>
<tr><td>조사목적</td><td colspan="5"></td></tr>
<tr><td>주 요
조사결과
(요 약)</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조사결과
활용실적</td><td>조례
제개정</td><td>시정질문</td><td>행정사무감사</td><td>언론보도</td><td>기타</td><td>공개여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td></tr>
<tr><td>향후 활용
계획</td><td colspan="5"></td></tr>
<tr><td>기 타</td><td colspan="5"></td></tr>
</table></td><td>별지 제2호(여론조사 활용실적보고서)

시민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

<table>
<tr><td>번 호</td><td colspan="5"></td></tr>
<tr><td>제 목</td><td colspan="5"></td></tr>
<tr><td>위원회·부서명</td><td colspan="2"></td><td>조사방법</td><td colspan="2"></td></tr>
<tr><td>조사대상</td><td colspan="2"></td><td>조사규모
(표본 수)</td><td colspan="2"></td></tr>
<tr><td>조사기간</td><td colspan="2"></td><td>조사기관</td><td colspan="2"></td></tr>
<tr><td>조사목적</td><td colspan="5"></td></tr>
<tr><td>주 요
조사결과
(요 약)</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조사결과
활용실적</td><td>조례
제개정</td><td>시정질문</td><td>행정사무감사</td><td>언론보도</td><td>기타</td><td>공개여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td></tr>
<tr><td>향후 활용
계획</td><td colspan="5"></td></tr>
<tr><td>기 타</td><td colspan="5"></td></tr>
</table>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부서) 활용실적보고서를 검토하였음

위원장(실·담당관) ○ ○ ○(서명 또는 날인)</td></tr>
</table>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장 보고기한 및 활용실적 보고서 제출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활용실적 보고서 제출기한을 현실화하여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여론조사 의뢰 및 활용실적 제출 시 상임위원장 검토 과정을 추가하여 조사의 타당성 및 결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전문위원실) 및 실 · 담당관은 '여론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 및 결과 공개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 제출기한을 '여론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연장 (안 제7조)

나. 「시민여론조사 의뢰서」에 상임위원장(실·담당관) 확인 서명란 신설 ([별지] 제1호)

다. 「시민여론조사 활용실적보고서」에 상임위원장(실·담당관) 확인 서명란 신설 ([별지]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5-21호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종 로 구 청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 : 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도로 : 변경없음
2) 주차장 : 변경없음
3) 철도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
1) 공원 : 변경
▶ 총괄표

구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m2)	개소	면적(m2)	개소	면적(m2)	개소	면적(m2)
합계	4	6,639	3	5,469	4	6,639	3	5,469
소공원	3	5,469	3	5,469	3	5,469	3	5,469
어린이공원	1	1,170	-	-	1	1,170	-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소공원	부암동 251-8일대	1,448	-	1,448	2004.4.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	-
기정	②	공원	소공원	부암동 336-2일대	2,763	-	2,763	2004.4.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	-
폐지	③	공원	어린이공원	부암동 303-1일대	1,170	감) 1,170	-	2004.4.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	-
기정	④	공원	소공원	부암동 262-1일대	1,258	-	1,258	2011.6.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8호)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③	공원	어린이 공원	• 공원 폐지 - 위치: 부암동 303-1일대 - 면적: 감) 1,170㎡	•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건축물 용도계획 결정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밀도 결정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다.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라. 경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부암2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부암2 특별계획구역	부암동 303-1번지 일대	6,056	-	6,056	어린이공원 폐지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③	공원	어린이 공원	• 공원 폐지 - 위치: 부암동 303-1일대 - 면적: 감) 1,170㎡	•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

▶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도면표시번호	□부암2 특별계획구역	(좌동)	-
지정목적	□과대필지의 계획적 관리	(좌동)	
위치	□부암동 303-1, 303-2, 304, 379-13, 379-2번지 (세부개발계획 시 원활한 계획 실현이 어려울 경우 303-1번지와 소유가 다른 379-2, 379-13번지 제척 가능)	(좌동)	
면적	□6,056㎡	(좌동)	
용도	□단독주택(3가구 이하)	(좌동)	
건폐율/용적률	□50% / 100%	(좌동)	
높이	□2층이하(시건축조례 제27조의 높이규정 적용) □지형 여건상 지하층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지하층의 노출부분은 1개층(4m) 이하로 함	(좌동)	
대지 내 공지	□공공보행통로 2개소(B=4~6m) (세부개발계획 시 규모 및 위치 변경 가능)	(좌동)	
기타	□현재의 양호한 임상 및 대지 내 수계 보전 (측량성과 및 계획안에 따라 보전 위치 결정) □구역 내 어린이공원 조성 후(1,170㎡) 기부채납(세부개발계획 시 보전 임상 및 수계를 고려하여 시설의 위치 및 종류 변경 가능, 건 폐율 및 용적률 등의 완화 미적용 □흉고직경 20cm이상의 큰나무의 제자리 보존 (건축불가능시 필지내 이식 가능) □지반변동은 50cm이하로 권장	(좌동)	

□ 적용의 완화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라. 관련 도서 : 생략(종로구청 건축과 비치 도서와 같음)

마. 기타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안)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건축과(☎02-2148-2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기정

변경(안)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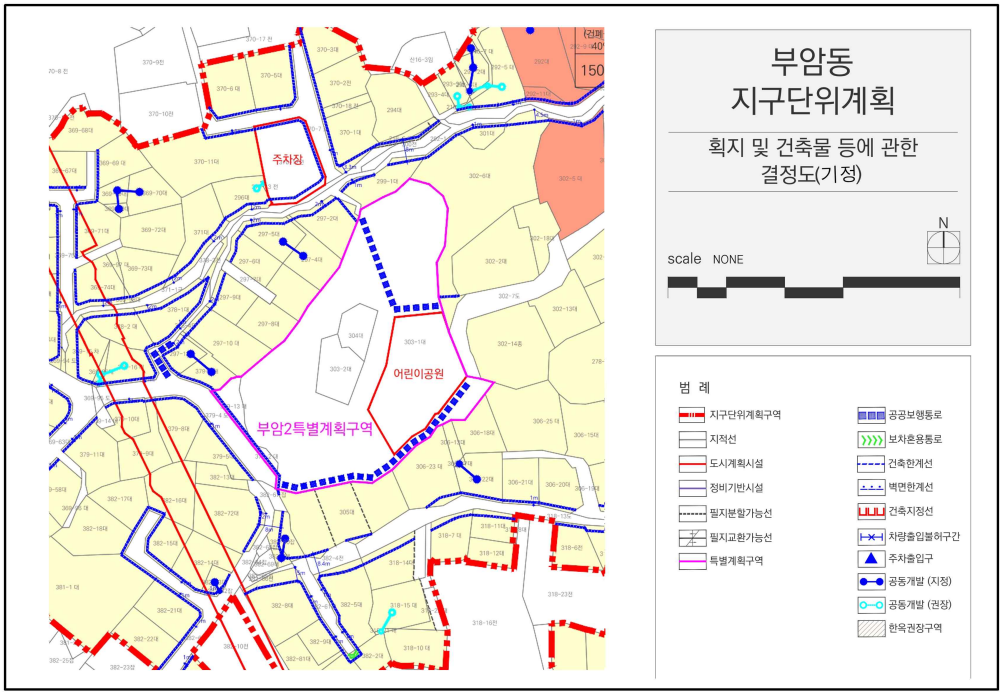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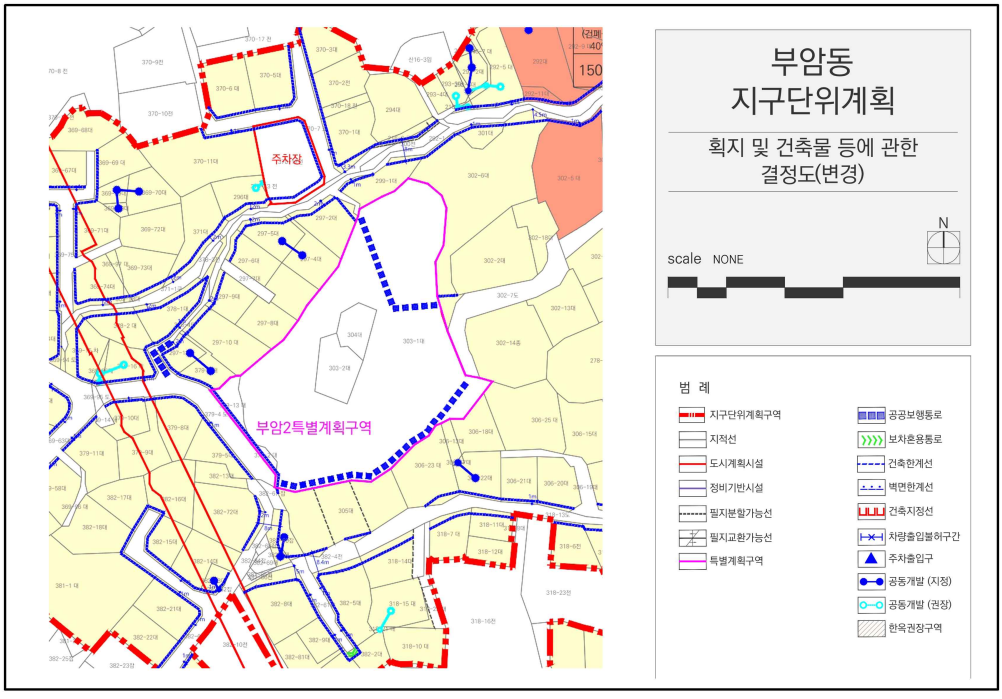

■ 부암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기정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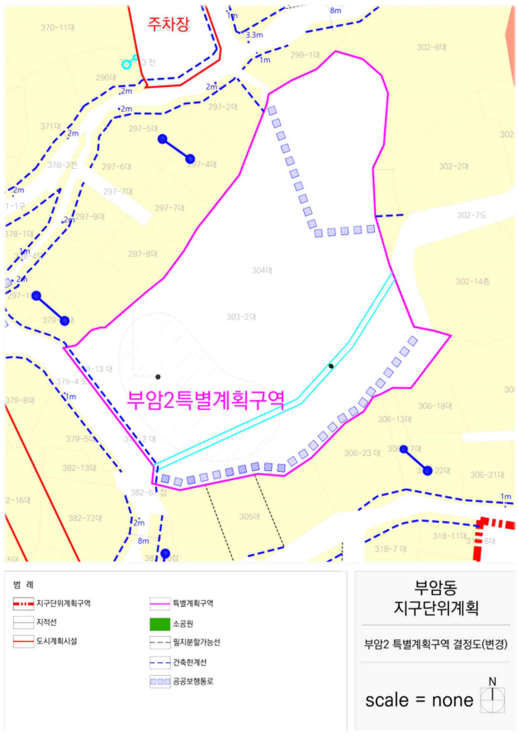

◈ 용산구고시 제2025-14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46호(1975. 9. 3.)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20-104호로 실시계획인가된 용산구 이촌동 302-198호 일대(이촌녹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을 시행하고자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163호(2025. 2. 6.)」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은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용산구청 공원녹지과(☎2199-76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2월 20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용산구 이촌동 302-198호 일대
나. 사업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2) 사업의 명칭 : 당초 - 이촌녹지 조성사업(2-2지역)
변경 - 이촌녹지 조성사업(3-1지역)
다. 사업내용(면적) : 토지보상 및 녹지조성(3,498㎡)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198호 등 2필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198호 등 2필지
면 적	3,498㎡	1,996㎡
내 용	토지보상 3,498㎡	토지보상 1,996㎡ 보상

라. 사업시행자 : 용산구청장(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년 6월 18일부터 2027년 6월 16일까지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공원녹지과 ☎2199-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996	1,996							
1	이촌동 302-198	대	112.6	112.6	대한예수교장로회OO교회 대표자 이○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000-00 00아파트 000				
	이촌동 302-218	대	1,883.4	1,883.4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위치도

▢ 계획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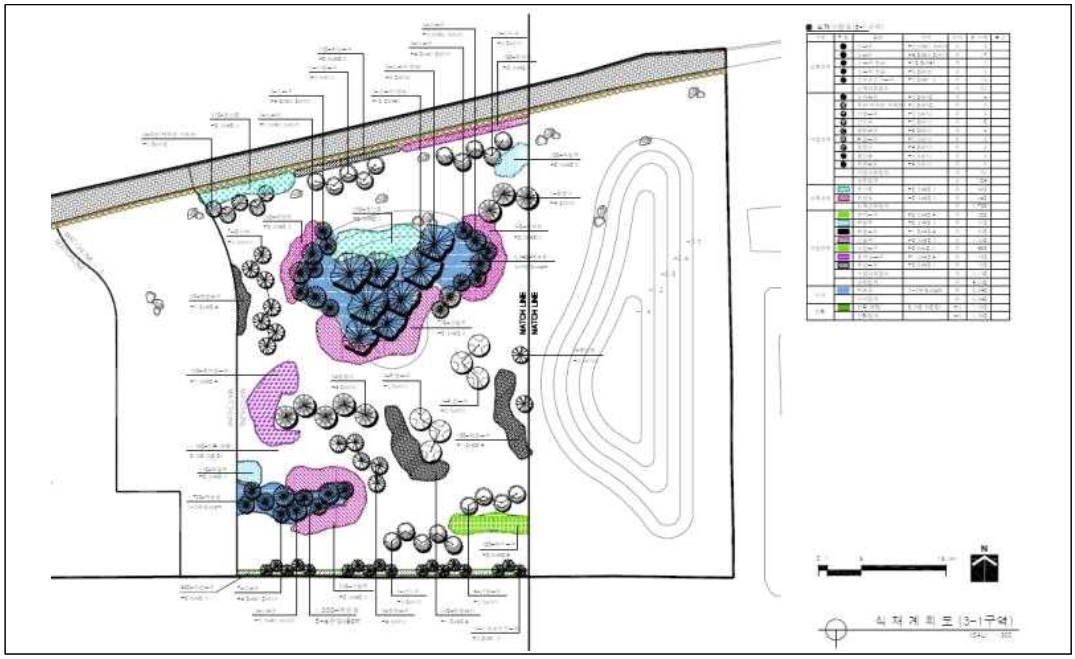

◈ 용산구고시 제2025-15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46호(1975. 9. 3.)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20-104호로 실시계획인가된 용산구 이촌동 302-198호 일대(이촌녹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을 시행하고자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164호(2025. 2. 3.)」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은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용산구청 공원녹지과(☎2199-76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2월 20일
용산구청장

가. 사업위치 : 용산구 이촌동 302-198호 일대
나. 사업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2) 사업의 명칭 : 당초 - 이촌녹지 조성사업(2-2지역)
변경 - 이촌녹지 조성사업(3-2지역)
다. 사업내용(면적) : 토지보상 및 녹지조성(3,498㎡)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198호 등 2필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87호
면 적	3,498㎡	1,502㎡
내 용	토지보상 3,498㎡	토지보상 1,502㎡

라. 사업시행자 : 용산구청장(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년 6월 18일부터 2027년 6월 16일까지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공원녹지과 ☎2199-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면적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502	1,502							
1	이촌동 302-87	대	1,502	1,502	대한예수교장로회OO교회 대표자 이○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000-00 OO아파트 000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위치도

▢ 계획평면도

◈ 서대문구고시 제2025-26호

도시계획시설(독립문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373호(2001.11.06.) 천연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5-116호(2015.9.24.)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9-173호(2019.11.20.) 도시계획시설 세분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206호(2020.11.18.)로 천연·충현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고시되어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독립문문화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독립문문화공원 조성(변경)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263번지 일대
- 면　　적 : 4,347㎡

다.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도면 : 붙임 참고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330-1396)

독립문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263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4,347.00	2,310.83	(3)	(298.12)	(298.12)	27	4,347.00	2,235.96	1(4)	33.00 (584.93)	33.00 (584.93)	18	감 74.87
기반시설	소계	2,047.60	2,047.60					1,942.43	1,942.43					감 105.17㎡
	광장	552.22	552.22					551.31	551.31					감 0.91㎡
	도로	1,495.38	1,495.38					1,391.12	1,391.12					감 104.26㎡
조경시설		4.67	4.67				6	7.11	7.11				4	증 2.44㎡
휴양시설		156.91	156.91				21	91.59	91.59				14	감 65.32㎡
유희시설		-	-					-	-					-
교양시설		-	-					-	-					-
편익시설		101.65	101.65					194.83	194.83	1	33.00	33.00		증 93.18㎡
관리시설		-	-					-	-					
녹지 · 기타		2,036.17	(298.12)	(3)	(298.12)	(298.12)	(3)	2,111.04	(584.93)	(4)	(584.93)	(584.93)	(4)	증 74.87㎡
시 설 률 (법정 제한없음)		(2,310.83/4,347.0) × 100 = 53.16 %						(2,235.96 /4,347.0) × 100 = 51.43 %						
건 폐 율 (법정 20%이하)		-						(33.00 / 4,347.0) x 100 = 0.75%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4,347.00	2,310.83			(298.12)	(298.12)	27			4,347.00	2,235.96		1	33.00 (584.93)	33.00 (584.93)	18	감 74.87㎡
기반시설	소 계			2,047.60	2,047.60								1,942.43	1,942.43						감 105.17㎡
	광 장	가		552.22	552.22						가		551.31	551.31						감 0.91㎡
	도 로		전지역	1,495.38	1,495.38							전지역	1,391.12	1,391.12						감 104.26㎡
조경시설	소 계			4.67	4.67					6			7.11	7.11					4	증 2.44㎡
	메모리얼가뼉	①	소로 3-2,3	0.53	0.53					4	①	소로 3-2,3	0.16	0.16					2	감 0.37㎡
	장식가벽	②	북측 출입구	1.20	1.20					1	②	북측 출입구	3.81	3.81					1	증 2.61㎡
	분수대	③	북측 출입구	2.94	2.94					1										폐지
	만초샘										③	북측 출입구	3.14	3.14					1	신설
휴양시설	소 계			156.91	156.91					21			91.59	91.59					14	감 65.32㎡
	파고라	④	서측 출입구	22.44	22.44					1	④	서측 출입구	24.50	24.50					1	증 2.0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모두의식탁	⑤	광장 좌측	19.87	19.87					1	⑤	광장 좌측	12.60	12.60					2	감 7.27㎡
	평상	⑥	광장 좌측	12.00	12.00					3	⑥	광장 좌측	4.50	4.50					2	감 7.5㎡
	야외테이블 셋트										⑦	영천시장 입구부, 광장 좌측	3.18	3.18					2	신설
	앉음벽	⑦	전지역	102.60	102.60					16	⑧	전지역	46.81	46.81					7	감 55.79㎡
편의시설	소계			101.65	101.65								194.83	194.83		1	33.00	33.00		증 93.18㎡
	주차장	1		101.65	101.65						1	광장 좌측	161.83	161.83						증 60.18㎡
	공중 화장실										2	광장 좌측	33.00	33.00	목구조 철구조	1	33.00	33.00		신설
녹지 및 기타	소 계			2,036.17	(298.12)			(298.12)	(298.12)	(3)			2,111.04	(584.93)			(584.93)	(584.93)	(4)	증 74.87㎡
	녹지		전지역	2,036.17	(298.12)			(298.12)	(298.12)	(3)		전지역	2,111.04	(584.93)			(584.93)	(584.93)	(4)	증 74.87㎡
	주차장 계단실-1	2	광장 좌측	(32.33)	(32.33)	철콘	1층	(32.33)	(32.33)	(1)	3	광장 우측	(63.70)	(63.70)	철골	1층	(63.70)	(63.70)	(1)	주차장 이용시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주차장 계단실-2	3	주차장램프 우측	(73.44)	(73.44)	철콘	1층	(73.44)	(73.44)	(1)	4	주차장램프 우측	(57.84)	(57.84)	철콘	1층	(57.84)	(57.84)	(1)	주차장 이용시설
주차장 램프	4	영천시장 입구부	(192.35)	(192.35)	철콘	1층	(192.35)	(192.35)	(1)	5	영천시장 입구부	(169.18)	(169.18)	철콘	1층	(169.18)	(169.18)	(1)	주차장 이용시설
교통센터										6	주차장 좌측	(294.21)	(294.21)	철콘	1층	(294.21)	(294.21)	(1)	신설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499.5	1,495.38				
변경					446.5	1,391.12				
당초	소로	소 계			499.5	1,495.38				
변경					446.5	1,391.12				
당초		3	1	5.5	77.5	387.44	진입로	시장입구	보도	
변경				4.0	79.0	321.72	진입로	시장입구	도로	
당초		3	2	3.0	51.5	110.56	진입로	지하주차장 우측	보도	
변경				2.0	44.0	89.52	진입로	지하주차장 우측	소로3-1	
당초		3	3	3.0	52.0	106.26	연결로	소로3-1	보도	
변경				2.0	18.0	36.43	연결로	소로3-1	소로3-18	
당초		3	4	2.0	8.0	14.11	연결로	소로3-2	보도	
변경				2.0	9.0	16.38	연결로	주차장램프	소로3-1	
당초		3	5	3.5	45.5	120.98	연결로	소로3-6	보도	
변경				1.5	56.5	150.65	연결로	소로3-6	도로	
당초		3	6	1.5	10.0	16.30	연결로	소로3-2	보도	
변경				3.5	20.5	73.09	연결로	소로3-2	보도	
당초		3	7	4.0	28.0	140.39	연결로	시장입구	소로3-9	
변경				9.0	11.0	123.66	연결로	소로3-1	보도	
당초		3	8	4.0	21.5	71.79	연결로	소로3-7	소로3-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2.5	23.0	64.40	연결로	소로3-7	소로3-9	
당초	소로	3	9	2.5	34.0	157.49	연결로	보도	소로3-10	
변경				2.5	18.0	39.98	연결로	소로3-7	보도	
당초		3	10	2.0	19.0	38.90	연결로	소로3-11	광장	
변경				2.0	24.0	89.90	연결로	보도	광장	
당초		3	11	2.0	28.0	74.05	연결로	소로3-12	보도	
변경				1.5	25.5	42.49	연결로	소로3-10	보도	
당초		3	12	2.0	59.5	149.33	연결로	소로3-9	보도	
변경				1.5	12.5	18.23	연결로	소로3-9	소로3-10	
당초		3	13	1.5	11.0	16.46	연결로	소로3-12	소로3-16	
변경				1.5	11.0	15.81	진입로	보도	소로3-16	
당초		3	14	1.2	9.0	11.07	연결로	소로3-12	소로3-16	
변경				1.5	9.0	55.34	진입로	보도	소로3-16	
당초		3	15	0.6	8.0	4.65	연결로	소로3-12	소로3-16	
변경				4.0	17.5	38.22	진입로	보도	도로	
당초		3	16	2.0	15.0	30.46	연결로	보도	소로3-17	
변경				3.2	29.0	56.34	연결로	소로3-15	소로3-17	
당초		3	17	2.0	22.00	45.14	연결로	보도	소로3-11	
변경				2.2	33.0	112.33	연결로	소로3-16	보도	
신설		2	1	8.1	6.0	46.63	진입로	시장입구	주차장램프	

조성계획도(당초)

독립문 문화공원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호	위 치	면 적(m2)	공작물	비 고
	합 계			4,347.00		
기반시설	소 계			2047.60		
	광장	가		552.22		
	도로		전지역	1495.38		
조경시설	소 계			4.67		
	메모리얼가벽	⑧	소로 3-2,3	0.53	4개	53.5m
	장식가벽	②	북측 출입구	1.20	1개	3.0m
	분수대	③	북측 출입구	2.94	1개	
휴양시설	소 계			156.91		
	파고라	④	서측 출입구	22.44	1개	
	모두의식탁	⑤	광장 좌측	19.87	1개	
	평상	⑥	광장 좌측	12.0	3개	
	앉음벽	⑦	전지역	102.60	16개	221.5m
편익시설	소 계			101.65		
	주차장	1		101.65		
녹지·기타	소 계			2036.17		
	주차장계단실-1	2	광장 좌측	(32.33)	1개	
	주차장계단실-2	3	주차장램프 우측	(73.44)	1개	
	주차장램프	4	영천시장 입구부	(192.35)	1개	
	녹지		전지역	2036.17		

1

조성계획도(변경)

독립문 문화공원

범 례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면 적(m2)	공작물	비 고
	합 계			4,347.00		
기반시설	소 계			1,942.43		
	광장	가		551.31		
	도로		전지역	1,391.12		
조경시설	소 계			7.11		
	메모리얼가벽	①	소로 3-23	0.16	2개	16.0m
	장식가벽	②	북측 출입구	3.81	1개	10.0m
	만초샘	③	북측 출입구	3.14	1개	
휴양시설	소 계			91.59		
	파고라	④	서측 출입구	24.50	1개	
	모두의식탁	⑤	광장 좌측	12.60	2개	
	평상	⑥	광장 좌측	4.50	2개	
	야외테이블셋트	⑦	영천시장 입구부	3.18	2개	
	앉음벽	⑧	전지역	46.81	7개	116.5m
편익시설	소 계			194.83		
	주차장	1	광장 좌측	161.83		
	공중화장실	2	광장 좌측	33.00		
녹지·기타	소 계			2,111.04		
	주차장계단실-1	3	광장 우측	(63.70)	1개	
	주차장계단실-2	4	주차장램프 우측	(57.84)	1개	
	주차장램프	5	영천시장 입구부	(169.18)	1개	
	교통센터	6	주차장 좌측	(294.21)	1개	
	녹지		전지역	2,111.04		

2

◈ 서대문구고시 제2025-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취소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4-73호(2024.05.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홍은2동 203-2 ~ 188-9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취소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사업내용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규 모	비 고 (결정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홍은2동 203-2 ~ 188-9간 도로개설	홍은동 203-2 ~ 188-9	- 폭 : 6m - 연장 : 572m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 (1969.01.18.)

다. 사업 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별첨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사.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 도로과(☎02-330-1764)

2. 취소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절차 이행 후 재고시

◈ 동작구고시 제2025-29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84호(2019.8.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54호(2020.5.21.), 제2020-127호(2020.9.10.), 제2021-293호(2021.12.9.), 제2023-149호(2023.12.21.), 제2024-168호(2024.12.19.)로 실시계획인가(변경) 된 용봉정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 명 칭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용봉정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72-27 등 2필지
- ○ 면 적 : 189.8㎡
- ○ 내 용 : 토지보상 189.8㎡,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경없음)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등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지분
			1,814	1,814		
1	흑석동 172-12	도로	433	433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2	흑석동 172-27	도로	1,381	1,381	서울특별시	단독지분

사. 관계서류는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고시 제2025-97호

도시관리계획(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0호(2006.8.10.)로 결정(변경)된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강 남 구 청 장

1. 결정취지

○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에 관한 사항(보차혼용통로)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하고자 하는 사항임

- 논현동 128-13, 128-14번지 공동개발(지정)
- 논현동 128-13번지 서측 보차혼용통로(1m) 신설

2. 도시관리계획(청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다. 획지(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D	⑧	논현동 128-7번지	1,043.3	·획지계획: 간선가로변 적정개발규모 ·공동개발권장 128-13 ·획지분할가능
		⑩	논현동 128-10번지	220.2	·획지계획: 이면부 적정개발규모 ·공동개발권장 128-14
		⑫	논현동 128-13번지	172.4	·획지계획: 이면부 적정개발규모 ·공동개발권장 128-7
		⑬	논현동 128-14번지	220.7	·획지계획: 이면부 적정개발규모 ·공동개발권장 128-10
변 경		⑧	논현동 128-7번지	1,043.3	·획지계획: 간선가로변 적정개발규모 ·획지분할가능

구 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⑩	논현동 128-10번지	220.2	·획지계획: 이면부 적정개발규모
		⑫	논현동 128-13번지	172.4	·획지계획: 간선가로변 적정개발규모 ·공동개발지정 128-14 ·보차혼용통로(1m) 지정
		⑬	논현동 128-14번지	220.7	·획지계획: 간선가로변 적정개발규모 ·공동개발지정 128-13

■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결정(변경) 내용	변경사유
논현동 128-13, 14	· 논현동 128-13, 14 공동개발(지정)	· 논현동 128-13, 14번지 획지 간 공동개발하고자 함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신설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구분	대지위치	계획내용	계획지침
보차 혼용통로	논현동 128-13	차도부속형(폭1m)	· 논현동 128-7번지와 단차없이 일체 조성 · 담장, 주차장 등 일체의 보차통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금지 ·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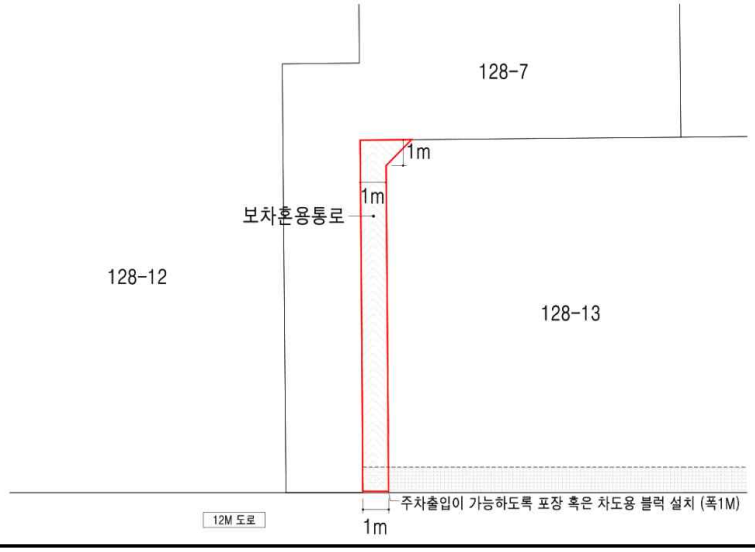

■ 신설 사유서

위 치	결정(변경) 내용	신설사유
논현동 128-13	보차혼용통로(1m) 지정	· 논현동 128-7번지의 주차 출입구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 지정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3.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방법

○ 강남구 도시계획과(☎3423-6112)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www.luris.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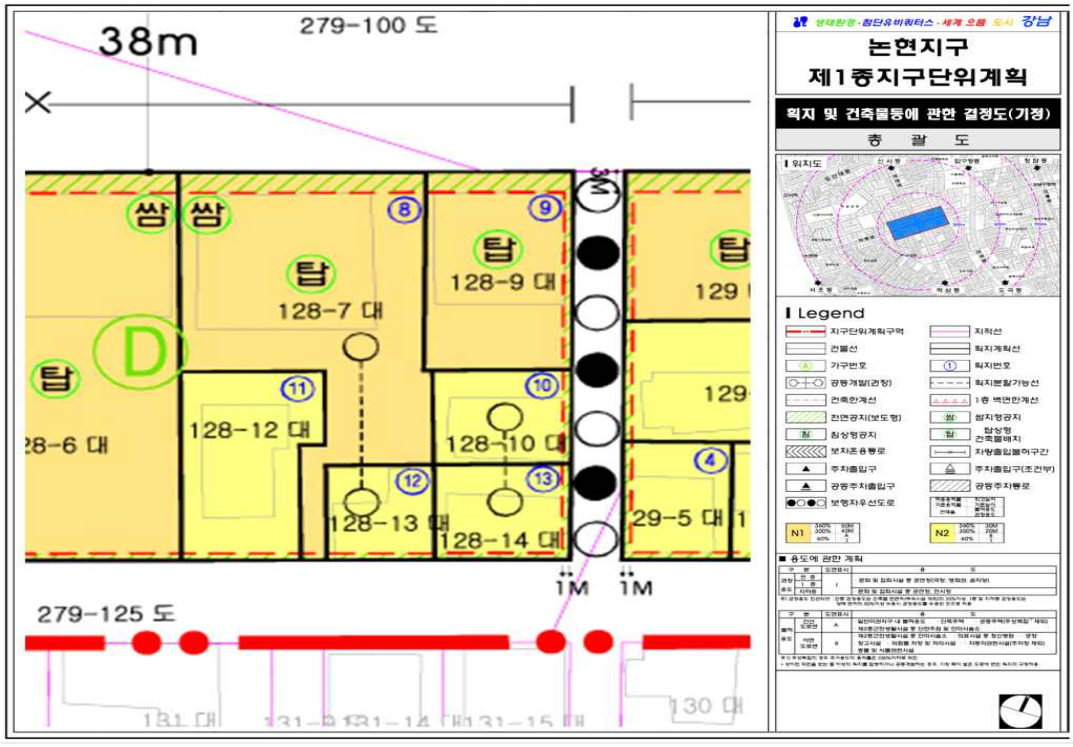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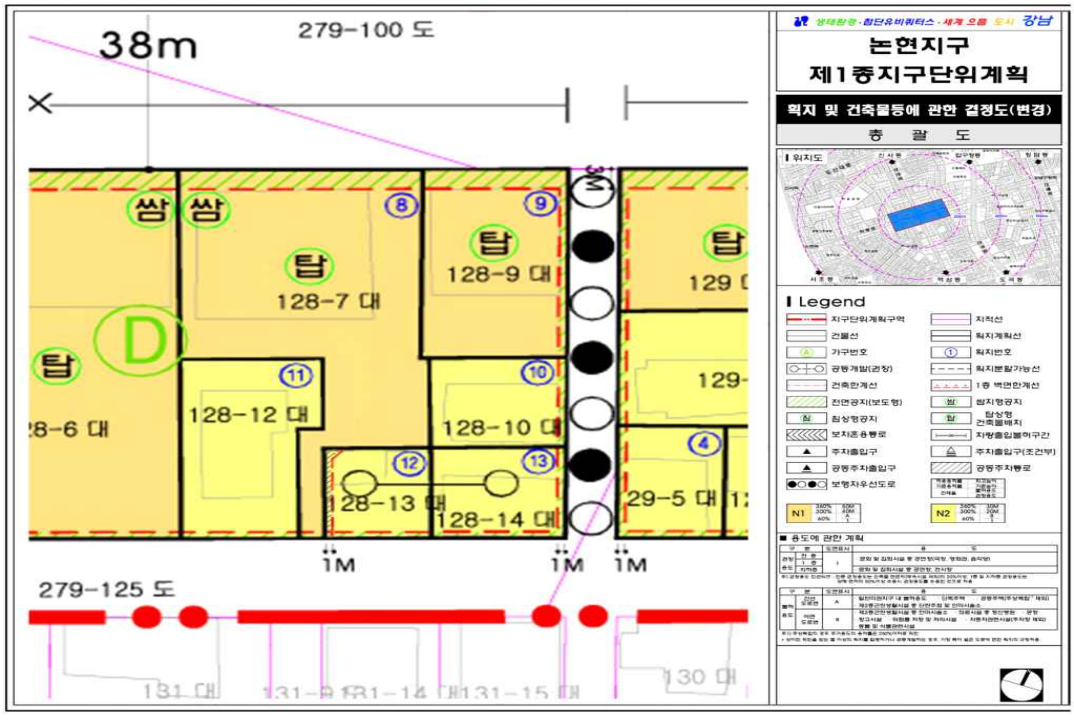

◈ 강동구고시 제2025-19호

도시계획시설(지하보행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일대를 대상지로 하는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24호(2020. 3. 26.)로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7호(2023. 1. 5.) 결정(변경)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3-120호(2023. 7. 27.)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지하보행로)사업에 대하여 고시한 내용의 변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5-161호(2025. 1. 22.)로 열람공고 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산18-4(천호대로 지하 일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지하보행로)사업
나. 명 칭: 성내5구역~천호역 공영주차장 간 지하보행로 설치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모				비 고
			폭(m)	연장(m)	해수면 기준높이(m)	면적(㎡)	
기정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보행로)	천호역 공영주차장~성내동 15번지 지하2층	11.5	2.2	11.2~14.6 (지하구조물 깊이 3.5m)	25.3	해수면기준높이 21.5m
변경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보행로)	천호역 공영주차장~성내동 15번지 지하2층	11.5	8.259 (8.181~8.416)	10.20~15.48 (지하구조물 깊이 5.28m)	95.2 (①69.4 /②95.2)	해수면기준높이 21.4m

※ 면적의 ( )은 천호역 공영주차장 및 광로2-5(천호대로)와 중복결정되는 면적이며, 시설규모는 외공을 기준으로 산정함
- ① : 주차장 중복결정 면적, ② : 광로2-5(천호대로) 중복결정 면적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결정된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보행로)은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일괄 공사시행하고 점용료(20년) 납부 및 유지관리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일: 2023. 5. 22.)
가. 성 명: 주식회사디에이치프라퍼티원 사내이사 이택서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39, 3층(상일동, 강동타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23. 7. 27.)
   나.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연번	토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성내동 산18-4	도	8,232	25.3	서울특별시	-	-	-	-	사용
	계		8,232	25.3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호(2023. 1. 5.)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지하보행로)에 대해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하보행로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됨
      ※ 지하보행로에 대하여 유지 · 관리 등의 의무는 설치협약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준공 이후 입주자)에게 있음

8. 관계도서: 게재 생략(강동구청(성내로 25) 제2청사 3층 도시계획과에 비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공 고

◈ 성동구공고 제2025-24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3-1546호(2023.11.02.)로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의 증축 및 용도변경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되고,
2. 성동구 고시 제2023-163호(2023.11.23.)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및 용도변경' 사업이 완료되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25-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2) 사업의 명칭: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및 용도변경

다.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비 고
부지면적		1,937.70㎡	1,937.70㎡	변경없음
건축물의 규모		지상 5층	지상 6층	6층(주차장) 증축
건축면적		1,295.10㎡	1,295.10㎡	변경없음
건축 연면적 (㎡)	소계	6,487.89㎡	7,417.36㎡	929.47㎡ 증가
	지하	-	-	
	지상	6,487.89㎡	7,441.86㎡	929.47㎡ 증가
건폐율		66.84%	66.84%	변경없음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비 고
용적률	334.82%	382.79%	법정 1,500% 이하
용도별 면적	주차장 4,631.67㎡ (71.39%) 주차장 외 면적 1,856.22㎡ (28.61%)	주차장 5,269.92㎡ (71.05%) 주차장 외 면적 2,147.44㎡ (28.95%)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30% 이하
주차대수	총 117대	총 117대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마. 시행기간: 2023. 11. ~ 2024.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계				1,937.7	1,937.7					
1	마장동	525-1	제방	262.7	262.7	국 (중소벤처기업부)				
2	마장동	525-2	제방	1,367.9	1,367.9	성동구	성동구 고산자로 270(행당동)			
3	마장동	525-3	제방	307.1	307.1	국 (중소벤처기업부)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아. 관련도서: 성동구청 건축과(02-2286-5643)에 비치

◈ 성북구공고 제2025-281호

도시계획시설(2020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9호(2018.6.7.)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성북구고시 제2020-108호(2020.6.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되고, 성북구고시 제2022-103호로 변경 고시된 성북구 장위동 산3-122번지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산3-122번지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2020 오동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
 ○ 사업의 규모 : 406㎡
 ○ 사업의 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기간 : 2020. 6. 25. ~ 2025. 6. 24.
사. 토지조서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내용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산3-122	임야	40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성북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2241-3665)

◈ 노원구공고 제2025-269호

도시계획시설(학교:태강삼육초등학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39번지 일대 태강삼육초등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5년 2월 20일
노 원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5. 2. 20. ~ 2025. 3. 6.(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찍리과(☏02-2116-3864)

다. 도시관리계획(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교	초등학교	노원구 공릉동 26-39 일대	11,014	-	11,014	서고시 제355호 (1983. 7. 15.)	태강삼육 초등학교

-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20 이하	28 이하	100 이하	5층 이하	- 자연녹지지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 제1항 제4호

-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	건폐율 변경 - 20%이하 → 28%이하(증8%)	〈급식실 및 체육관 신축〉 - 열악한 급식환경과 체육교육 환경 개선 〈기존건물 철거〉 - 창고건물 철거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열람장소) 또는 온라인 의견제출
※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주민의견제출) → 주민의견서작성

바. 기타사항
-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공고 제2025-347호

등마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강서구고시 제2020-111호(2020.7.23.)로 최종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54호(2002.7.20.)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등마루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본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강 서 구 청 장

1. 공원현황
   가. 공 원 명: 등마루근린공원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199-1 일대
   다. 면　　적: 74,299.0㎡(당초) → 27,090.0㎡(변경)
2. 변경개요
   가. 목　　적: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의 실효에 따른 실효 면적을 반영하고, 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안 수립
   나. 변경내용(※ 2024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견 반영)
   - 기반시설: 2,163.40㎡ → 4,037.08㎡(증 1,873.68㎡)
   - 조경시설: 556.50㎡ → 696.15㎡(증 139.65㎡)
   - 휴양시설: 1,036.40㎡ → 833.71㎡(감 202.69㎡)
   - 유희시설: 419.00㎡ → 488.78㎡(증 69.78㎡)
   - 운동시설: 1,361.90㎡ → 566.83㎡(감 795.07㎡)
   - 편익시설: 37.50㎡ → 51.66㎡(증 14.16㎡)
   - 관리시설: 72.26㎡ → 435.27㎡(증 363.01㎡)
   - 교양시설: 1,389.60㎡ → 0㎡(감 1,389.60㎡)
   - 녹지 및 기타: 67,262.44㎡ → 19,980.52㎡(감 47,281.92㎡)
3.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원녹지과(☎02-2600-4185)

◈ 구로구공고 제2025-285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65호(2005. 6. 2.)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1호(2008. 5. 29.)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5호(2022.12. 1.)로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된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구 로 구 청 장

○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구로구청 신관3층 도시계획과(☎02-860-2957)
○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온수동 50번지 일대	550,363	-	550,363	서울시고시 제2005-165호 (2005.6.2)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50,363.0	-	550,363.0	100.0	
주거지역	소 계	341,405.2	-	341,405.2	62.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04,304.0	감) 2,426.2	201,877.8	36.7	
	제2종일반주거지역	61,190.0	증) 2,426.2	63,616.2	11.5	
	제3종일반주거지역	47,642.0	-	47,642.0	8.7	
	준주거지역	28,269.2	-	28,269.2	5.1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9,148.8		29,148.8	5.3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79,809.0	-	179,809.0	32.7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426.2	·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비고
	기정	변경	
온수역 북측 일대	·A1, A2, A3, A4, A5, A6, A7	·A1, A2, A3, A4, A5 A6, A7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온수역 일대	·B1, B2, B3, B4	·B1, B2, B3, B4	·대흥·성원·동진빌라 특별계획구역
럭비구장부지 일대	·C1, C2	·C1, C2	·가든아파트 특별계획구역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신설)
교통안전공단 일대	·D1, D2	·D1, D2	·화창기공 특별계획구역
동부제강부지	·E1	·E1	·동부제강 특별계획구역

■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 공동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C1	129 (20,338)	-	오류동 89-5도	706	-	공동개발(권장)	-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인한 공동개발(권장/지정) 해제
	49 (1,709)	-	오류동 109-4도					
	268 (620)	-	오류동110-10전					
	1	-	오류동116-5전					
	24	-	오류동 326-3구					
	127 (236)	-	오류동 326-7도					
	108 (164)	-	오류동 326-11대					
	455 (795)	-	오류동 114답	1,211	-	공동개발(권장)	-	
	139 (250)	-	오류동 114-1답					
	14 (93)	-	오류동 114-2답					
	24 (221)	-	오류동 114-3답					
	579 (5,870)	-	오류동 326-1구					
	47 (3,248)	-	오류동 111-8답	1,069	-	공동개발(지정)	-	
	130 (910)	-	오류동 111-11답					
	477 (510)	-	오류동 115-7답					
	415	-	오류동 115-14답					
	343	-	오류동 115-3답	3,255	-	공동개발(지정)	-	
	15	-	오류동 115-5답					
	420	-	오류동 115-6답					
	517	-	오류동 115-11답					
	520	-	오류동 115-12답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569	-	오류동 115-13답					
	363	-	오류동 116-3대					
	267	-	오류동 326-16대					
	241	-	오류동 326-17대					
	2,052	2,052	오류동 115-1대					
	1,005	1,005	오류동 115-4대					
	117 (5,870)	117 (5,870)	오류동 326-1구	3,566	3,566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권장)	잔여필지
	106	106	오류동 326-5대					
	286	286	오류동 326-12대					

※ 면적의 ( )는 해당 필지 전체의 공부상 면적임
※ 각 필지의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사유
공동개발 해제	·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신설을 위한 공동개발(권장/지정) 해제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1) 건폐율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용적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

■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온수역 주변	단독주거용지	30m 이하	30m 이하	온수역 북측부
	상업업무시설	50m 이하	50m 이하	온수동길, 온수역전
경인로 변	상업업무시설	50m 이하	50m 이하	경인로 변
		50m 이하	90m 이하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산업업무시설	80m 이하	80m 이하	교통안전공단변, 재건축예정부지
		132m 이하	132m 이하	대흥·성원·동진빌라 특별계획구역
온수산업단지 변	공장용지	20m 이하	20m 이하	아파트형 공장에 한하여 30m 이하 적용
	주거용지	40m 이하	40m 이하	자동차면허시험장 부지

■ 높이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경인로 변	상업 업무시설	·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높이 변경 - 50m이하 → 90m이하	·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2종) 및 주변지역 개발현황을 고려한 높이계획 조정

다.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형태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계획

•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경인로 변 주차출입구 및 차량출입금지구역 변경

※ 지형도면(안) 참조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온수동 100-27 일원	104,872	-	104,872	
기정	②	대흥·성원·동진빌라 특별계획구역	온수동 45-31 일원	57,063	-	57,063	
기정	③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오류동 111-1 일원	66,704.7	-	66,704.7	
기정	④	가든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오류동 97-4 일원	27,914	-	27,914	
기정	⑤	화창기공특별계획구역	오류동 94-11 일원	10,535	-	10,535	
기정	⑥	동부제강 특별계획구역	오류동 123 일원	97,184	-	97,184	
신설	⑦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오류동 326-16 일원	-	증)6,241	6,241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 사유
신설	⑦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6,241.0	• 인접지역 대규모 개발 시행 등 주변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노후화 및 저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효율적 토지이용과 합리적 공간활용을 통해 온수역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한주물류센터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2) 대흥·성원·동진빌라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3)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4) 가든아파트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5) 화창기공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6) 동부제강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7)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신설

■ 구역개요

구 역 명	위 치	면적(㎡)	지 정 목 적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6,241.0	·인접지역 대규모 개발 시행 등 주변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노후화 및 저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효율적 토지이용과 합리적 공간활용을 통해 온수역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한주물류센터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저층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판매시설 중 상점 제1호
	불허용도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장례식장	
건축물밀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190% / 200% / 272% 이하	
	최고높이	·90m 이하	
공공기여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	
기타사항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 3m	·이면도로변 : 3m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 지정	

※ 공공기여항목은 세부개발계획시에 관련부서 및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기여시설은 조성 후 기부채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25. 1.)」 개발사업형 용적률 계획 준용

구분	계획내용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설정) -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α = 1이하	10%p 이내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지형도면 고시) - 기준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공간은 결정도면에 표기 (준공 후에도 유지)	5%p
공개공지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 · 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대지면적] X α ※α = 1이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시 /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5%p 이내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 : 놀이 · 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방재안전	• 화재 · 소방 · 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 기준: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5%p
기반시설 등 정비	• 사업구역 주변 환경 정비 (도로, 공원, 통학로 등 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 기준 : 기준용적률 X (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 X α ※α = 1이하 *정비비용/사업지 대지가액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5%p 이내
지역특화 인센티브	•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 기준 :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0%p 이내(합산)
합계	최대 20%p 이내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table>
<tr><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공공시설 등 제고</td><td>• 공공시설등을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인센티브 산정기준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따름
허용 or 기준용적률 X (1+1.3 X 가중치 X α토지 + 1.0 X α건축물 + 1.0 X α현금)
* 건축물 계수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종류, 위치, 층수, 규모, 용도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1.0 ~ 1.2 범위 내에서 적용
- α토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건축물: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td></tr>
<tr><td>친환경 항목 적용</td><td>①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② 적용산식 : 용적률 X (1 + 완화기준)
-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7호, 2025. 1. 2.)준용)

③ 완화기준 : 가~다목을 합산하여 최대 15%까지 적용한다.
- 가.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table>
<tr><th>완화조건</th><th>최대완화비율</th></tr>
<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
<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
</table>
- 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비율
<table>
<tr><th>완화조건</th><th>최대완화비율</th></tr>
<tr><td>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td><td>15%</td></tr>
<tr><td>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td><td>14%</td></tr>
<tr><td>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td><td>13%</td></tr>
<tr><td>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td><td>12%</td></tr>
<tr><td>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td><td>11%</td></tr>
<tr><td>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td><td>6%</td></tr>
<tr><td>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td><td>3%</td></tr>
</table>
- 다.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table>
<tr><th>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h><th>최대완화비율</th></tr>
<tr><td>25% 이상 사용하는 경우</td><td>15%</td></tr>
<tr><td>20% 이상 사용하는 경우</td><td>10%</td></tr>
<tr><td>15% 이상 사용하는 경우</td><td>5%</td></tr>
</table></td></tr>
</table>

4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⑦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	증) 6,241.0	6,241.0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 사유
신설	⑦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6,241.0	·인접지역 대규모 개발 시행 등 주변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노후화 및 저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효율적 토지이용과 합리적 공간활용을 통해 온수역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한주물류센터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241.0	-	6,241.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426.2	감) 2,426.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3,814.8	증) 2,426.2	6,241.0	100.0	-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⑦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426.2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구역명	지번	면 적	비 고
변경	C1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오류동 326-16일원	6,241.0㎡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용도	권장	저층부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 제1호	좌동
	불허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장례식장		좌동

2) 건축물의 밀도계획

(1) 건폐율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건폐율	60% 이하	좌동

(2) 용적률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190% 이하	좌동
	허용용적률	200% 이하	좌동
	상한용적률	272% 이하	좌동

■ 허용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25. 1.)」 개발사업형 용적률 계획 준용

구 분	기준		세부개발계획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지형도면 고시) - 기준: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공간은 결정도면에 표기 (준공 후에도 유지)	5%p	· 인센티브: 9.5% 〉 5% = 190x5% = 9.5% = 5% 적용
공개공지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 · 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대지면적] X α ※α = 1이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시 /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5%p 이내	· 면적: 230㎡ · 인센티브: 7.00% 〉 5% = 190x(230㎡/6,241.0) = 5% 적용

※ 건축계획에 의한 변경

■ 상한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

구 분	기준
공공시설 등 제공	허용 or 기준용적률 X (1+1.3 X 가중치 X α토지 + 1.0 X α건축물 + 1.0 X α현금) = 200 X {1+(1.3 X 1 X 459.29 ÷ 5,781.71 + 1.0 X 925.80 ÷ 5,781.71)} = 200 x {1+(1.3 X 1 X 0.0794 + 1.0 X 0.1601)} = 252.68% ≥ 250.00% • 체육시설 연면적 : 2,290㎡ 이상 (전용 1,200.91㎡)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 4,352,000원㎡ (부가세 포함) • 시설별 건축비(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 1,009,000원㎡ (부가세 포함)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5. 01.)
친환경 항목 적용	①적용산식 : 용적률 X (1 + 완화기준) = 200 X (1 + 11%) = 22% -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7호, 2025.01.02.)준용) ② 완화기준 -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1%

(3) 높이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90m 이하	좌동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경인로 변	경인로 변	50m 이하	50m 이하	상업업무시설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50m 이하	90m 이하	

※ 건축물 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 높이 범위내에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및 중심지 위계에 따른 높이 반영

3)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3m • 이면도로변: 3m	• 간선도로변: 3m • 이면도로변: 3m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공개공지	• 공개공지 1개소 위치 지정	• 좌동

5.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비고
공공기여 (다목적체육시설)	•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	• 공공시설(체육시설)기부채납 - 구역면적의 22.2%(토지환산 시 1,385.09㎡) ※ 토지지분 459.29㎡, 환산부지면적 925.80㎡ ※ 특별계획구역 사업 추진 시 조성 후 기부채납

※ 향후, 구로구 협의, 세부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및 감정평가 등에 따라 연면적 및 환산부지 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

6.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물 용도	권장	저층부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 제1호	• 좌동	
	불허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장례식장		• 좌동	
건폐율		60% 이하		• 좌동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 190% / 200% 이하 / 272% 이하		• 좌동	
최고높이	90m 이하		• 좌동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3m	• 이면도로변: 3m	• 좌동	
공공기여	•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		• 체육시설 - 다목적체육시설	• 연면적 2,290㎡ 이상 • 지하1층
기타사항	• 공개공지 1개소 위치 지정		• 좌동	• 230㎡

◯ 지형도면(안) : 붙임참조

◯ 관련도서 : 게재생략(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view/new/main.html)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형도면(안)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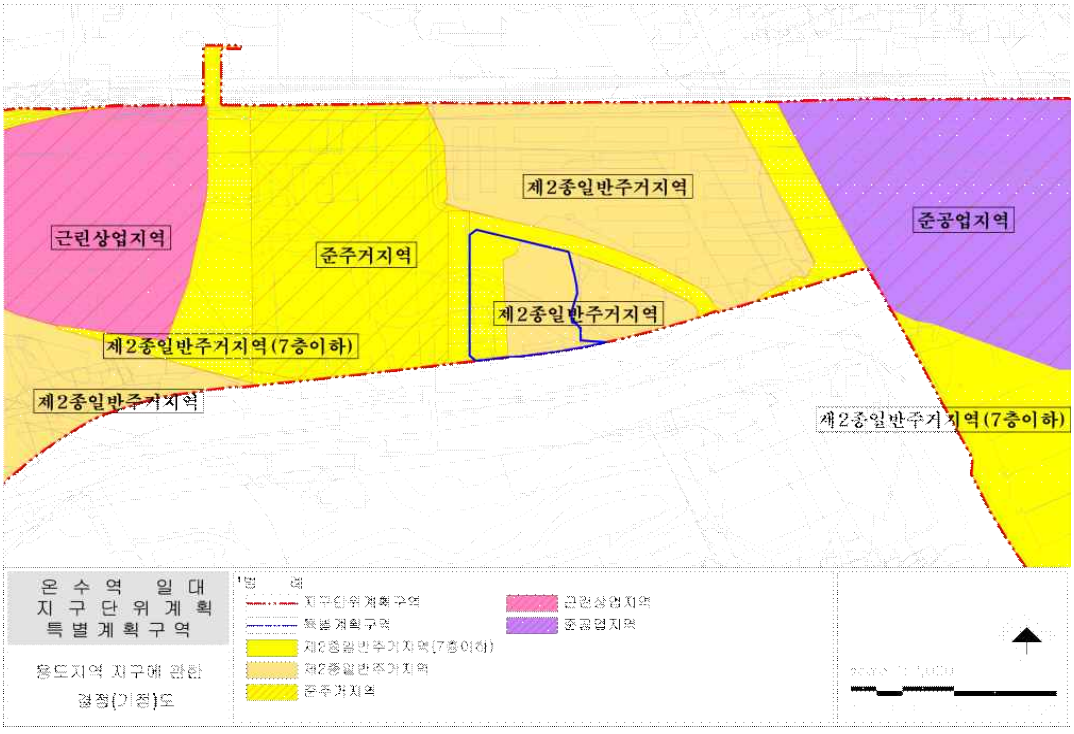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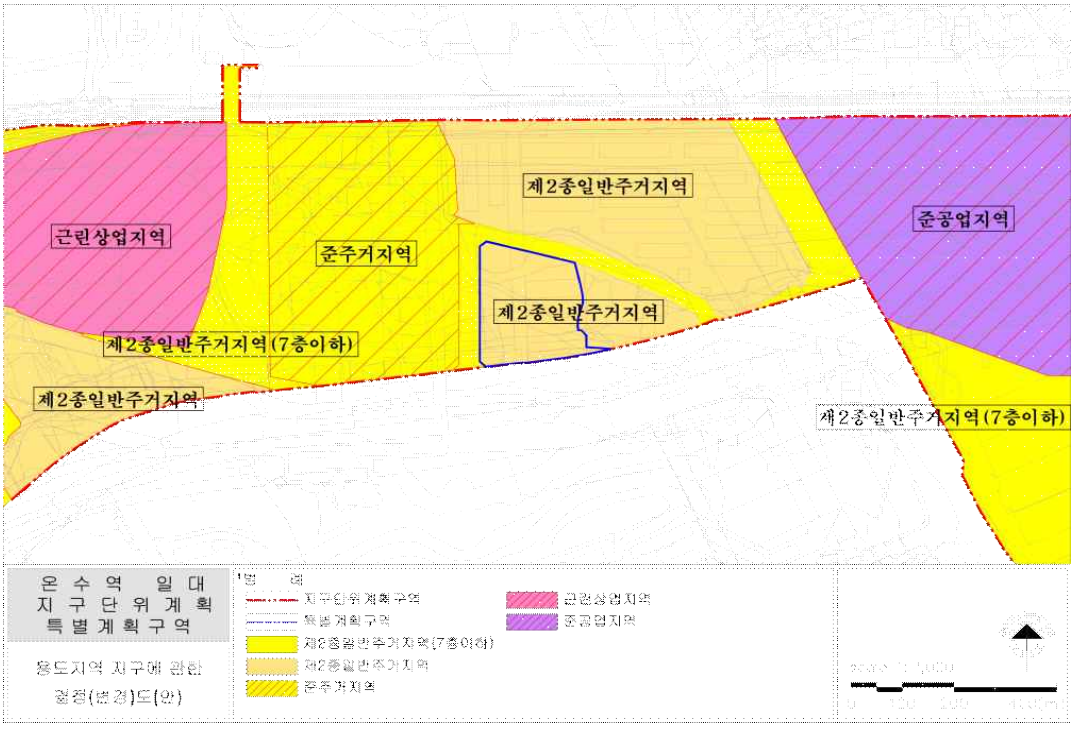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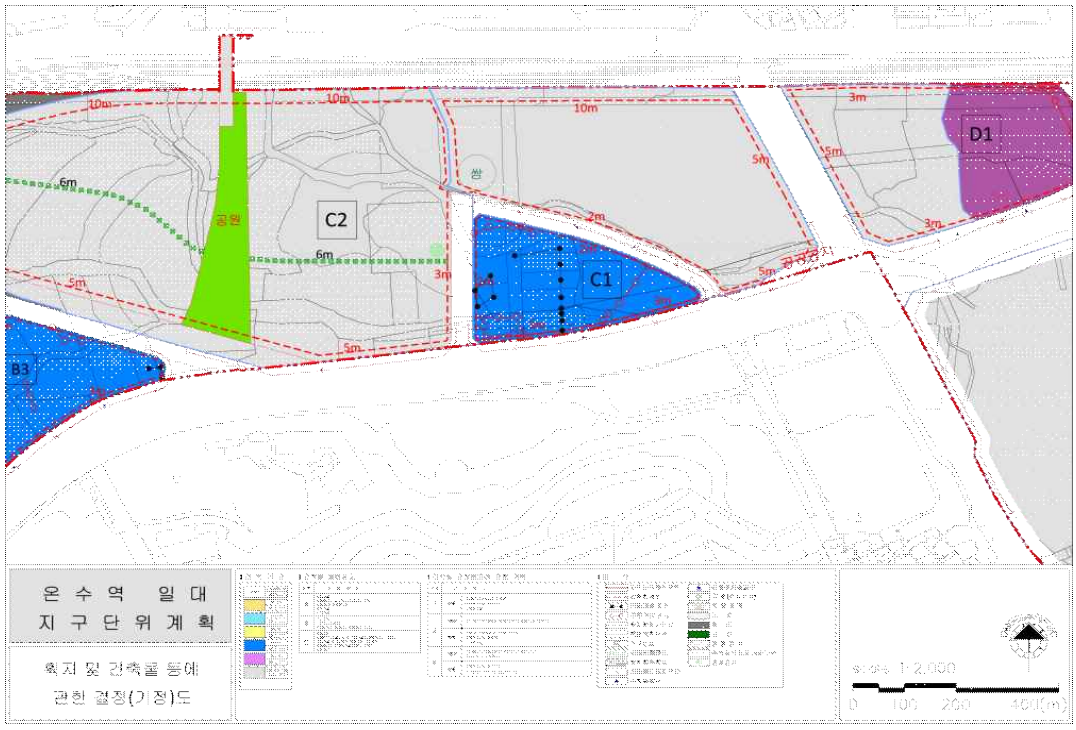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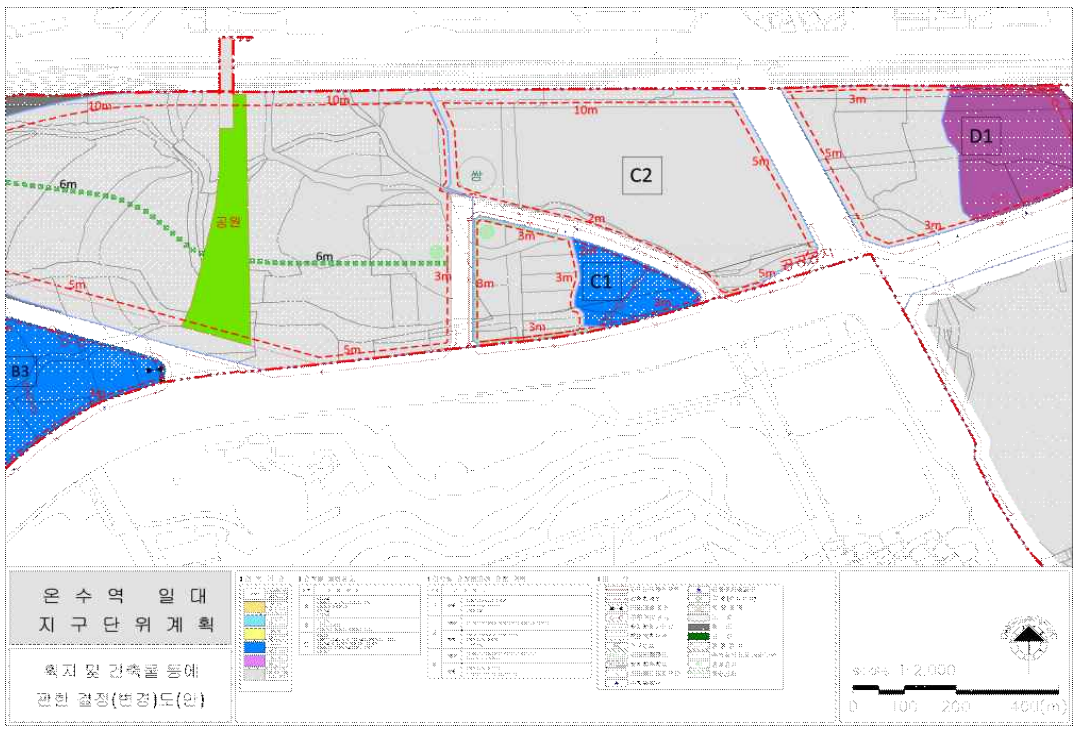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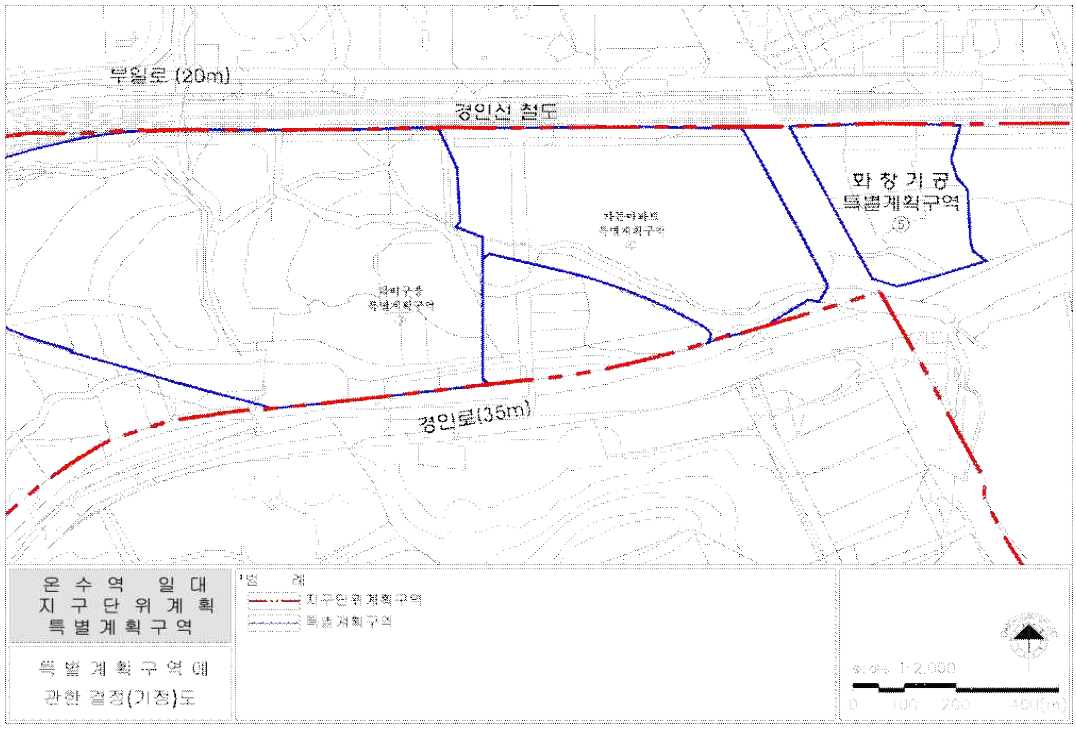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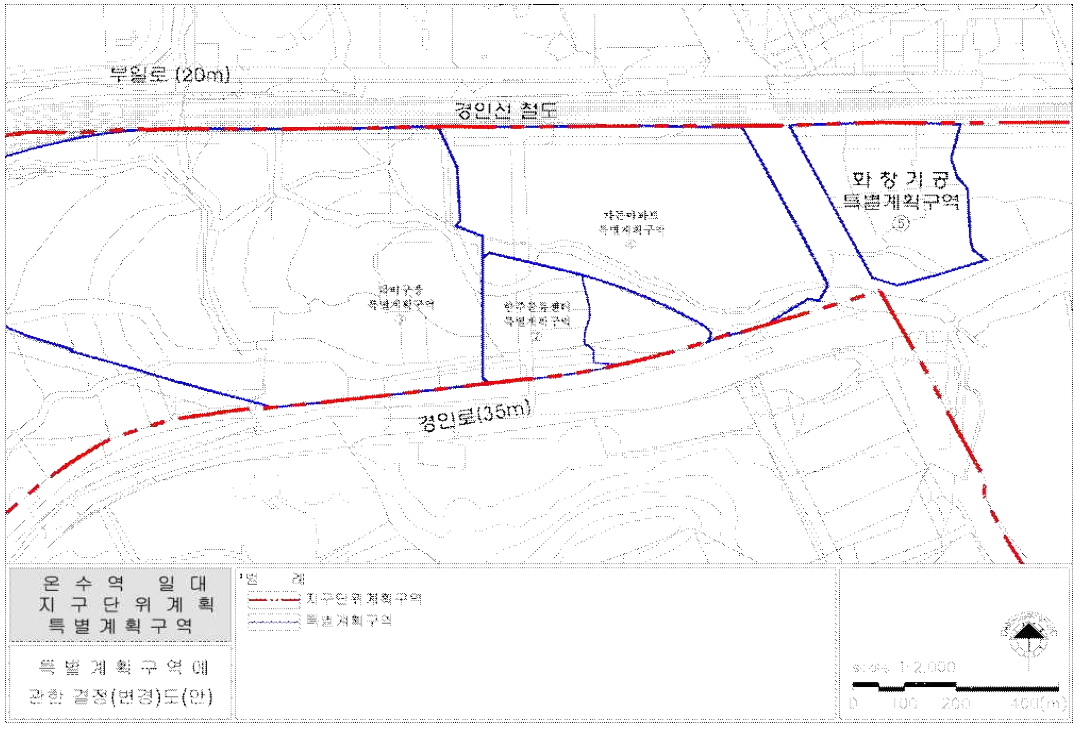

[세부개발계획 종합지침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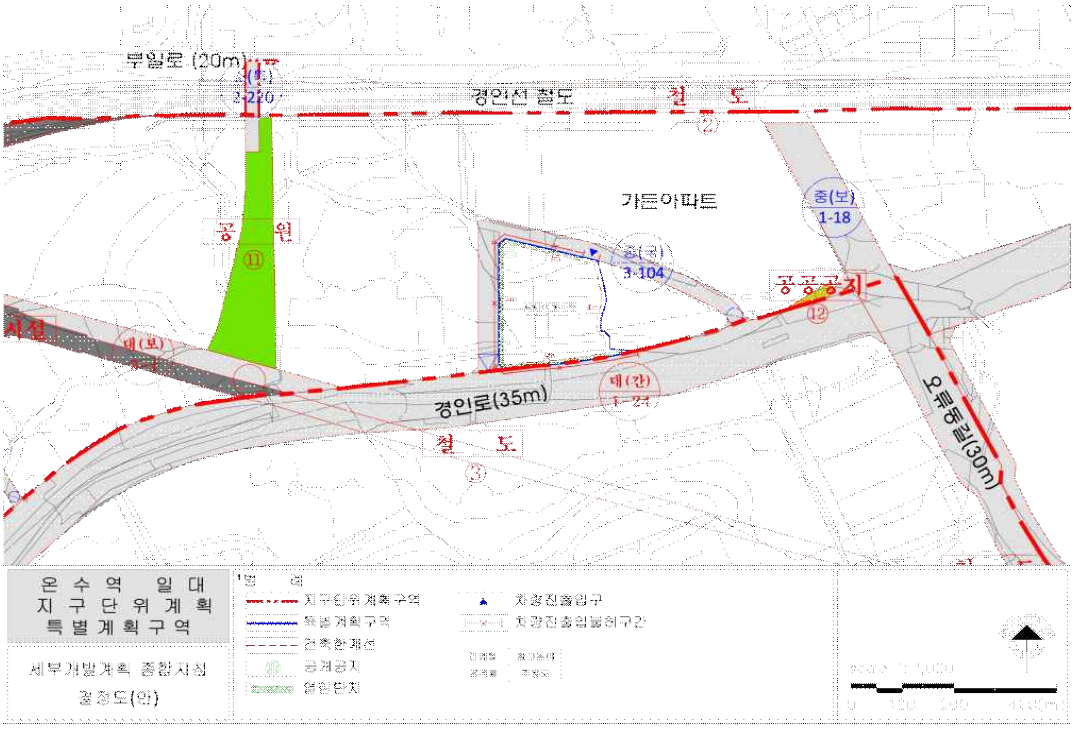

◈ 구로구공고 제2025-3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시 고시 제1969-3호(1969.0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구로구 고시 제2006-78호(2006.11.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1-171호(2011.06.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된 「개봉동 68-18~73-5간 도로개설」 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3.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 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3128)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68-18~73-5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개봉동 68-18~73-5간 도로개설
다. 사업 규모 : 총 도로개설 폭 10m, 연장 210m
 · 금회시행 : 폭 10m, 연장 1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개봉동 68-18~73-5번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개봉동 68-28	대	158	158	김○○, 홍○○, 양○○	서울특별시 ○동 ○-○				

※ 상기 지번 및 면적은 측량 및 토지분할 이후 변경 될 수 있음.

◈ 관악구공고 제2025-347호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상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정책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관 악 구 청 장

가. 계약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105-57
나. 계약면적 : 2,232㎡
다. 계약목적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라. 계약내용 : 부지사용계약서(안) 참조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
바.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원녹지정책과(☎02-879-6521)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1. 4. 6.>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제14조 관련)

토지소유자 ○○○을 “토지소유자”라 정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악구청장을 “공원관리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105-57	임야	2,232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 (무상사용인 경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제5조(부지사용료 지급방법) 무상사용

제6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8년 3월 9까지로 한다(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

제7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8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9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10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1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부지사용료를 유상으로 하는 경우 본조 삭제).

1.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2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14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5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7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관악구청장 (인)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삼성물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 7층	서울시계내 한강 (마곡대교~양화대교)	(선박2척) 589㎡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교각 면보수를 위한 선박운행	'25. 02. 15. ~ '25. 04. 14.	'25. 02. 1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해양소년단 서울연맹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5, 6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35 (양화한강공원 내)	- 선박 4척 47.4㎡	일반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 및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2025. 03. 01. ~ 2025. 12. 31.	2025. 02. 1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골든블루 마리나 (대표 김재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반포동)	행주대교 ~ 잠실대교	사업종료에 따른 단순 계류	동력선 5대 (리무진1,2 / 신데렐라 / 블루웨일 1,2	2025.3.01. ~ 2025.3.31.
			수상레저사업	동력선 2척 (리무진3, 휄라)	2025.3.01. ~ 2025.11.30.
			마리나사업	동력선 5척 (프린세스, 씨레이, 로셀라, 러셀라, 페어라인)	2025.3.01. ~ 2025.11.30.

사업소공고

◈ 강남소방서공고 제2025-6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강 남 소 방 서 장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	제서울(강남)2025-0001호 (2025-2-11)	㈜아는소방씨엔씨 (702-**-02739)	심*연 (1983-08-25)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280, 1841호(수서동, 로즈데일빌딩)	02-469-333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6981-75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58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광명무역센터 C동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9, 4-9
 - 면 적 : 123㎡(일시 17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신안산선 복선전철 여의도정거장 지하수 유출관로 설치
 - 내 역 : 압송관로 설치

5. 점용기간 : 2024.10.24. ~ 2029.10.23.

6. 공사기간 : (당초) 2024.10.24.~ 2024.12.31. (변경) 2024.10.24.~ 2025.4.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5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9번지 등
 - 면 적: 4,336.7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5. 점용기간: 영구

6. 공사기간: (당초) 2022.6.16. ~ 2025.2.27. (변경) 2022.6.16. ~ 2027.1.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신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방부 근무지원단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3-6
 - 면 적 : 1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헬기장 관제사 대기실
 - 내 역 : 이동식 컨테이너 1식

5. 점용기간 : 2025.02.14. ~ 2030.02.13.

6. 공사기간 : 2025.02.14. ~ 2025.06.30.

정 정

◈ 강서구고시 제2025-10호

도시관리계획(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38호(1996.6.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39호(2024.12.26.)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강 서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종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39호(2024.12.26.) 도시관리계획(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상 도로의 분류 오기 및 결정도 상 공개공지의 위치 오기를 정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 변경없음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7	3,875	52,315	2	112	513	4	1,440	35,295	21	2,323	16,507
대로	2	1,150	33,221	-	-	-	2	1,150	33,221	-	-	-
중로	2	232	2,585	-	-	-	-	-	-	2	232	2,585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소로	23	2,493	16,509	2	112	513	2	290	2,074	19	2,091	13,922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8	30	주간선 도로	7,250 (750)	가양동 158-4 (화곡동 404-6)	고척동 (화곡동 1031)	일반도로	-	건고제198호 (71.4.7.)	강서로
기정	대로	2	39	30	주간선 도로	3,770 (400)	등촌동 628 (화곡동 1063-8)	외발산동 대로3-83 (화곡동 1074)	일반도로	-	건고제198호 (71.4.7.)	화곡로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47	화곡동 402-1	화곡동 402-4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85	화곡동 105-367	화곡동 1076-1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43	화곡동 1032-16	화곡동 1032-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322	화곡동 1051-25	화곡동 103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44	화곡동 1051-26	화곡동 1050-3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57	화곡동 1065-1	화곡동 106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167	화곡동 1074-30	화곡동 1074-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206	화곡동 402-4	화곡동 107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58	화곡동 1075-53	화곡동 1075-49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40	화곡동 1031-25	화곡동 1031-2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332	화곡동 1063-13	화곡동 1031-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40	화곡동 1052-11	화곡동 1052-9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105	화곡동 1062-12	화곡동 1062-2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48	화곡동 1060-36	화곡동 1060-39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115	화곡동 105-398	화곡동 143-3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5	4	국지도로	72	화곡동 105-357	화곡동 143-1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6	4	국지도로	75	화곡동 105-72	화곡동 114-1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7	4	국지도로	50	화곡동 1074-20	화곡동 1074-1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8	8	국지도로	50	화곡동 1074-2	화곡동 1074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2	18	8	국지도로	50	화곡동 1074-2	화곡동 107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9	4	국지도로	35	화곡동 401-22	화곡동 401-1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62	화곡동 1031-3	화곡동 103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21	9	국지도로	240	화곡동 404-8	화곡동 105-37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2	4	국지도로	125	화곡동 105-261	화곡동 105-13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57	화곡동 404-27	화곡동 404-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24	10	국지도로	50	화곡동 1032	화곡동 1051-27	일반도로	-	-	-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 없음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8	소로 2-18	도로 분류 오기 정정 (소로3-18 ⇒ 소로2-18)	• 도로의 분류 오기 정정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대지내 공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대지내 공지 결정조서(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변경	공개공지(지정)	사거리변 가각부		• 4개소[주1]	위치지정
	공개공지(권장)	광역버스 환승 구간		• 2개소	위치권장
	전면공지	구역전체		• 건축선에 의한 보도형 전면공지	-
	쌈지형공지	구역전체		• 자발적 쌈지형 공지 조성	-
	통로	공공 보행통로	사거리 북측 블록	• 폭원 4m 1개소	-
		보차 혼용통로	사거리 남측 블록	• 폭원 4m 1개소	-
			까치산길 전이부	• 폭원 6~8.4m 1개소	-

주1)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상 공개공지(지정) 위치 오기 정정 「붙임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참고」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02-2600-684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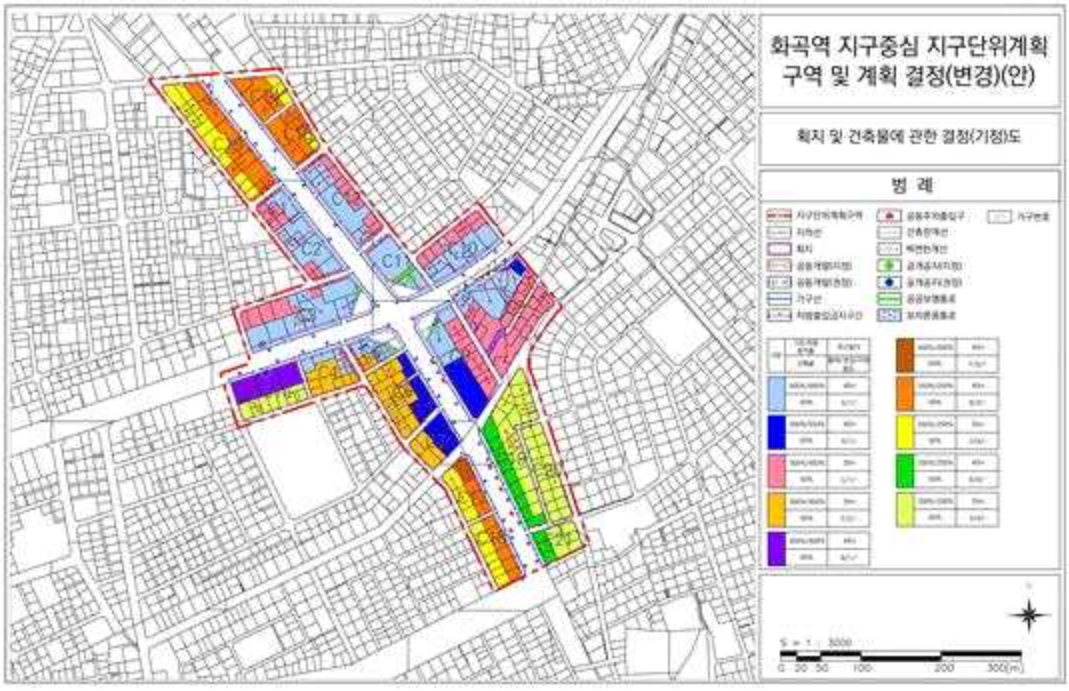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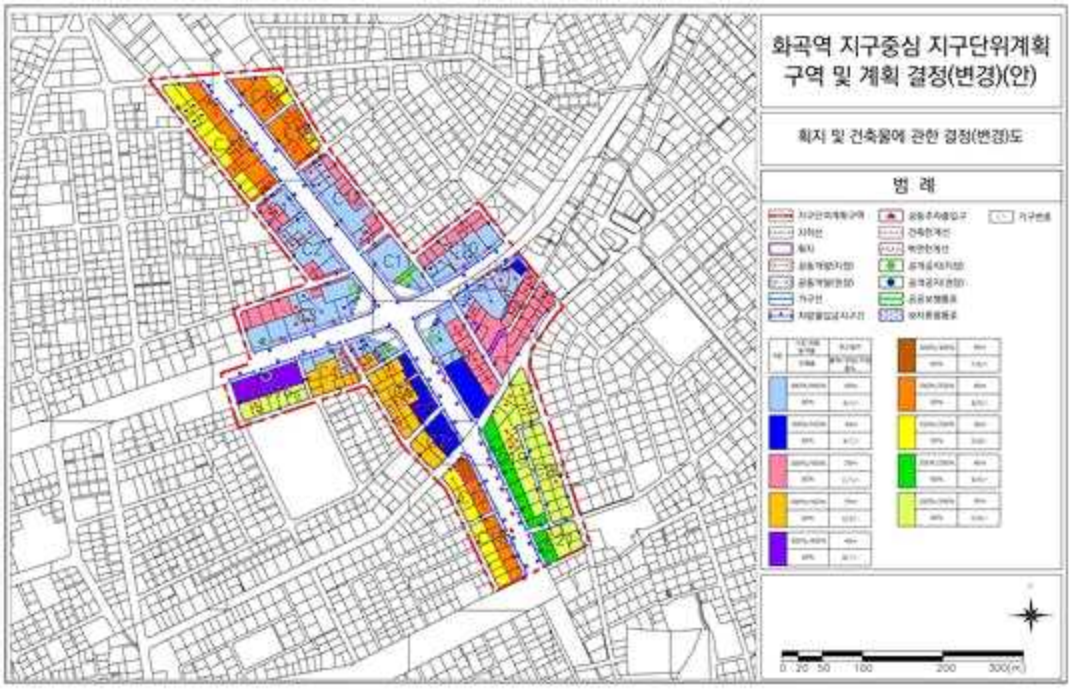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상세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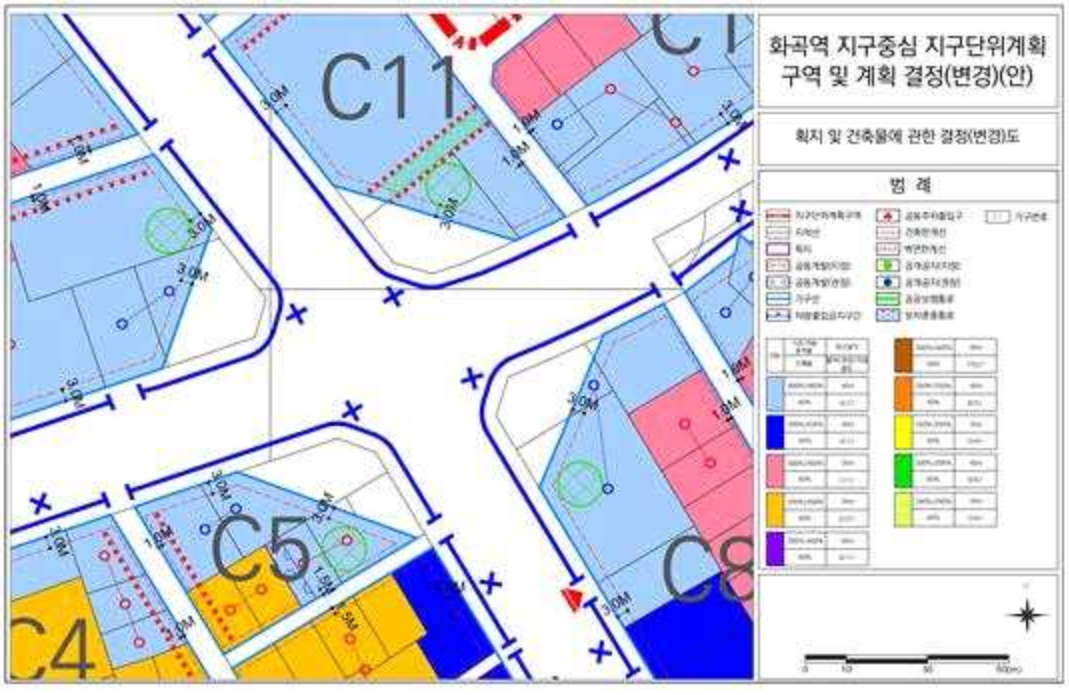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